

# 주요 국가의 기능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 주요 국가의 기능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 연구진

홍 근 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전 성 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1. 연구배경 및 목적

### □ 국고보조사업 증가 추세

- 2019년 기준으로 1,932개 국고보조사업(내역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지방재정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증가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재정 운영을 어렵고 하고 지방재정을 경직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2019년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82조 원이며, 이 중 지방비 부담액은 26.7조 원 수준임
  -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는 2008년 12.1조 원에서 2019년 26.7조 원으로 증가함(연평균 증가율 7.5%)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급격한 증가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 □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정비 필요

- 문재인정부는 2021년부터 지역 자율성 제고와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근본적 지방재정제도 혁신을 포함하는 제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할 예정임
-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를 통해 중앙-광역-기초 간 재정관계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 주요 국가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필요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광역-기초 간 경비부담 및 역할분담에 대한 기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의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 연구의 주요 내용

### □ 미국의 국고보조사업 사례

- 첫째, 미국은 연방헌법에서 중앙-지방 간 역할 및 사무배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정부 중심의 정부 간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됨
- 둘째, 2002년에 Grants.cov를 설치하고, 연방보조금 관련 윈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셋째, 연방정부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범주별 보조금, 포괄보조금, 세입공유 등으로 분류됨
  - 2017년 기준 연방정부 보조금은 총 1,319개이며, 이 중 1,299개(98.5%)가 범주별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음
  - 레이건 정부의 보조금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의 연방정부 보조금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이후 연방정부 보조금은 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음
  - 포괄보조금은 1968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2012년 26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20개의 포괄보조금이 운영되고 있음
  - 세입공유는 1975년 도입된 이후 1984년까지 운영되었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넷째, 보건후생부 소관 연방보조금이 5,275억 달러로 전체 연방보조금의 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의료보장제도인 의료지원 프로그램이 3,935억 달러로 보건후생부 보조금의 74.6%를 차지함

#### □ 영국의 국고보조사업 사례

- 첫째,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관련 부처가 정책 및 자원마련을 담당함
- 둘째, 중앙정부 보조금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3-2014 회계연도의 58%에서 2017-2018 회계연도 48%로 10%p 감소함
- 셋째, 전체 보조금 중 특정-특별보조금이 50.3%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일반보조금으로 전환되는 추세임
- 넷째, 총 의존재원 내 특정-특별보조금은 2019-20년 회계기준 408.3억 파운드이며, Dedicated School Grant가 284억 파운드로 6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독일의 국고보조사업 사례

- 첫째, 독일은 연방헌법에서 정부 간 관계를 상대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둘째, 연방헌법에서 연방정부 전속사무, 연방-주정부 경합사무, 공동사무 등 규정, 사무 처리를 위한 비용분담 기준을 규정함
- 셋째,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위임한 사회복지정책은 연방교육교부금, 주거교부금, 부모교부금, 아동생계교부금,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 노령·기본생계보장교부금 등 6개이며,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

#### □ 일본의 국고보조사업 사례

- 첫째, 일본은 「지방자치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의 역할 및 사무 배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둘째, 일본의 사회보장 관리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 공유함
- 셋째, 삼위일체개혁 이후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
- 넷째, 일본의 국고지출사업은 「보조금등에 관한 예산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관리됨
- 다섯째, 국고지출금 중 도도부현은 의무교육비, 건설사업비, 사회자본 정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정촌은 생활보호비, 아동수당, 장애인 자립지원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CONTENT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6
1. 연구범위 .....	6
2. 연구방법 .....	6
<b>제2장 미국의 국고보조사업 현황</b> .....	<b>7</b>
제1절 정부 간 관계 .....	9
1. 기본구조 .....	9
2. 지방재정 규모 .....	19
3. 사회보장 관리체계 .....	23
제2절 보조금 제도 및 유형 .....	24
1. 보조금 제도 .....	24
2. 유형 .....	29
제3절 보조금 재원분담 현황 .....	33
1. 보조금 현황 .....	33
2. 분야별 현황 .....	41
3. 포괄보조금 사례 :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 .....	56
4. 지방정부 사례 .....	62
<b>제3장 영국의 국고보조사업 현황</b> .....	<b>73</b>
제1절 정부 간 관계 .....	75



# CONTENTS

---

1. 기본구조 .....	75
2. 지방재정 규모 .....	77
3. 사회보장 관리체계 .....	82
제2절 보조금 제도 및 유형 .....	84
1. 보조금 제도 .....	84
2. 유형 .....	87
제3절 보조금 재원분담 현황 .....	92
1. 보조금 현황 .....	92
2. 분야별 현황 .....	96
3. 특정·특별보조금 현황 .....	122
4. 지방정부 사례 .....	126
<b>제4장 독일의 국고보조사업 현황 .....</b>	<b>131</b>
제1절 정부 간 관계 .....	133
1. 기본구조 .....	133
2. 사무배분 원칙 .....	135
3. 사회보장 관리체계 .....	138
제2절 보조금 제도 및 유형 .....	140
1. 보조금 제도 .....	140
2. 유형 .....	141
3. 정부 간 재원분담 원칙 .....	152
제3절 보조금 재원분담 현황 .....	158
1.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재원분담 현황 .....	158
2.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현황 .....	166

<b>제5장 일본의 국고보조사업 현황</b> .....	<b>171</b>
제1절 정부 간 관계 .....	173
1. 기본구조 .....	173
2. 지방재정 규모 .....	176
3. 사회보장 관리체계 .....	181
제2절 보조금 제도 및 유형 .....	182
1. 보조금 제도 .....	182
2. 유형 .....	187
제3절 보조금 재원분담 현황 .....	188
1. 보조금 현황 .....	188
2. 분야별 현황 .....	191
<b>제6장 요약 및 시사점</b> .....	<b>219</b>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221
1. 미국 .....	221
2. 영국 .....	223
3. 독일 .....	224
4. 일본 .....	225
제2절 시사점 .....	227
1. 헌법 차원의 재원분담 규정 .....	227
2. 광역정부 중심의 보조금 제도 .....	228
3. 지방정부의 조세수입 권한 .....	231
<b>참고문헌</b> .....	<b>233</b>

# CONTENTS

---

<b>표목차</b>	〈표 2-1〉 미국 수정헌법의 주요 내용 ..... 9
	〈표 2-2〉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 배분 ..... 11
	〈표 2-3〉 2017년 기준 미국의 지방정부 종류와 수 ..... 12
	〈표 2-4〉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사무 구분 ..... 13
	〈표 2-5〉 정부계층별 수입 구조 ..... 16
	〈표 2-6〉 정부계층별 지출 구조 ..... 18
	〈표 2-7〉 미국 지방재정의 규모 ..... 19
	〈표 2-8〉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기능별 직접 지출액(2017년 기준) ... 20
	〈표 2-9〉 지방정부의 유형 및 기능별 지출액(2012년 기준) ..... 21
	〈표 2-10〉 주정부 및 지방정부 부문별 수입(2017년 기준) ..... 22
	〈표 2-11〉 지방정부의 유형 및 부문별 수입(2012년 기준) ..... 22
	〈표 2-12〉 미국 연방보조금 정책수립 과정 ..... 25
	〈표 2-13〉 미국 연방보조금 관련 법률 및 행정명령 ..... 26
	〈표 2-14〉 보조금 유형 분류 ..... 32
	〈표 2-15〉 연방정부 보조금 추이 ..... 33
	〈표 2-16〉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비중 추이 ... 34
	〈표 2-17〉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수 추이 ... 35
	〈표 2-18〉 보건후생부 산하 기관의 보조금 집행 순위(FY2019) ... 38
	〈표 2-19〉 교통부 산하 기관의 보조금 집행 순위(FY2019) ..... 38
	〈표 2-20〉 농무부 산하 기관의 보조금 집행 순위(FY2019) ..... 39
	〈표 2-21〉 주택도시개발부 산하 기관의 보조금 집행 순위(FY2019) ... 39
	〈표 2-22〉 의료지원 프로그램의 주정부 재원부담 비율 공식 ..... 42
	〈표 2-23〉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조금 부담률 변화(2014-2018) ... 42
	〈표 2-24〉 특수교육을 위한 보조금 계산 공식 ..... 52
	〈표 2-25〉 학교 급식 프로그램 보조금 집행내역(2017회계연도 기준) ... 55

〈표 2-26〉 주정부별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 보조금 수령액(2017년 10월 기준) .....	58
〈표 2-27〉 주정부별 MOE 펀드 비율(2017년 10월 기준) .....	60
〈표 2-28〉 플로리다주 피넬러스 카운티의 보조금 내역(2018) .....	64
〈표 2-29〉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 시의 보조금 내역(2018) .....	70
〈표 3-1〉 영국 지방정부 유형 .....	76
〈표 3-2〉 영국 지방세입의 유형별 구분 .....	77
〈표 3-3〉 판매료·수수료·부담금 서비스 내역 .....	79
〈표 3-4〉 영국 지방정부 서비스별 경상지출 .....	80
〈표 3-5〉 영국 지방정부 준비금 보유 현황 .....	82
〈표 3-6〉 영국의 중앙정부 보조금 추이 .....	92
〈표 3-7〉 지방정부 총 세입 대비 중앙정부 보조금 비중 추이 .....	93
〈표 3-8〉 지방정부의 분야별 1인당 지출액(2018-2019 회계연도 기준) .....	93
〈표 3-9〉 지역별·분야별 지출 비중 .....	94
〈표 3-10〉 지방정부 보건복지 분야 관련 보조금 추이 .....	97
〈표 3-11〉 지방정부별 보건복지 분야 관련 보조금 추이 .....	97
〈표 3-12〉 지방정부별 코로나19 관련 보조금 현황 .....	99
〈표 3-13〉 지방정부별 교통 관련 보조금 추이 .....	102
〈표 3-14〉 지방정부별 학교 보조금 현황(2019-20 회계연도 기준) .....	105
〈표 3-15〉 학생 프리미엄 보조금의 분야별 예산(FY2020-2021 기준) .....	111
〈표 3-16〉 지역별 노숙인 지원금과 노숙인 감축 보조금 현황 .....	114
〈표 3-17〉 잉글랜드의 특정·특별보조금 .....	123
〈표 3-18〉 잉글랜드의 특정·특별보조금 세출예산 현황 .....	124
〈표 3-19〉 런던시의 정부서비스별 보조금 수입 .....	127
〈표 3-20〉 리버풀 시의 정부서비스별 보조금 수입 .....	128
〈표 3-21〉 캔터버리시의 정부서비스별 보조금 수입 .....	129

# CONTENTS

---

〈표 4-1〉 독일 지방자치단체 현황(2017년 기준) .....	133
〈표 4-2〉 연방헌법 제73조 규정에 따른 사무배분(연방정부 전속사무) ..	136
〈표 4-3〉 연방헌법 제74조 규정에 따른 사무배분 (연방정부·주정부 경합사무) .....	137
〈표 4-4〉 독일 연방헌법 상 연방보조금 유형 .....	141
〈표 4-5〉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 급여수준 결정기준 .....	148
〈표 4-6〉 공동사무·사업에서 연방헌법상 연방·주정부 재원분담 원칙 ..	153
〈표 4-7〉 위임사무 연방교부금에 대한 연방·주정부 간 재정부담 현황 ..	154
〈표 4-8〉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의 2018년 연방정부 부담금 비율(%) .....	155
〈표 4-9〉 연방지원금 운영에서 연방·주·자치단체 간의 재정부담의 원칙현황 .....	157
〈표 4-10〉 공동사무에서 연방·주정부의 실재 재원분담 현황 사례 ..	159
〈표 4-11〉 공동사무·사업에서 연방부담금 운영현황 .....	160
〈표 4-12〉 연방위임사무(사회복지 연방교부금)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부담 추이 .....	161
〈표 4-13〉 복지도시 건설사업 연방지원금 운영현황(2018년) .....	162
〈표 4-14〉 도시재건 건설사업 연방지원금 운영현황(2018년) .....	162
〈표 4-15〉 도시건축문화제 건설사업 연방지원금 운영현황(2018년) ..	163
〈표 4-16〉 역동적 도시중심 건설사업 연방지원금 운영현황(2018년) ..	164
〈표 4-17〉 소규모도시 건설사업 연방지원금 운영현황(2018년) ..	164
〈표 4-18〉 미래 도시녹지 건설사업 연방지원금 운영현황(2018년) ..	165
〈표 4-19〉 일반·특별보충교부금의 회계연도별 재원규모 .....	166
〈표 4-20〉 독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재정수입 .....	167
〈표 4-21〉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속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	168
〈표 4-22〉 콘스탄츠(Konstanz)시 세입 중 지방세와 주정부 교부금 현황 .....	169

〈표 4-23〉	콘스탄츠(Konstanz)시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 현황	170
〈표 5-1〉	중앙정부가 지방공공단체에 관여할 때의 기본원칙	175
〈표 5-2〉	일본의 정부계층별 세출 현황(2017년 순계 결산액 기준)	178
〈표 5-3〉	일본의 정부계층별 세입 현황(2017년 순계 결산액 기준)	180
〈표 5-4〉	일본의 중앙-지방간 기능분담	182
〈표 5-5〉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의 구분	183
〈표 5-6〉	삼위일체개혁을 통한 국고지출금 개혁	184
〈표 5-7〉	국고지출금 개혁의 경과 및 주요 내용	185
〈표 5-8〉	국고지출금 현황(2017년 기준)	188
〈표 5-9〉	도도부현 지출금현황	190
〈표 5-10〉	야마나시현 분야별 국고지출금 사업 수 및 비중	192
〈표 5-11〉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일반 공공행정	193
〈표 5-12〉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공공질서 및 안전	193
〈표 5-13〉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교육	195
〈표 5-14〉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문화	196
〈표 5-15〉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환경보호	196
〈표 5-16〉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사회복지	197
〈표 5-17〉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보건	199
〈표 5-18〉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농림해양수산	200
〈표 5-19〉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산업중소기업	200
〈표 5-20〉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수송 및 교통	201

# CONTENTS

---

〈표 5-21〉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국토 및 지역개발 .....	202
〈표 5-22〉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과학기술 .....	202
〈표 5-23〉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기타 ...	203
〈표 5-24〉 사이타마현 분야별 국고지출금 사업 수, 예산 및 비중 (2019년 1-4월) .....	204
〈표 5-25〉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공공질서 및 안전 .....	205
〈표 5-26〉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과학기술 ..	206
〈표 5-27〉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교육 ..	207
〈표 5-28〉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국토 및 지역개발 .....	208
〈표 5-29〉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농림해양수산 .....	210
〈표 5-30〉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문화 및 관광 .....	211
〈표 5-31〉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보건 ..	212
〈표 5-32〉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사회복지 ..	213
〈표 5-33〉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산업중소기업 .....	214
〈표 5-34〉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수송 및 교통 .....	215
〈표 5-35〉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일반공공행정 .....	216
〈표 5-36〉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환경보호 ..	217
〈표 5-37〉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기타 ...	218

〈표 6-1〉 독일 연방보조금과 주정부의 자체자원 부담 비율 (2018년 기준) .....	227
〈표 6-2〉 미국의 보조금 지급 방식 .....	229
〈표 6-3〉 독일 연방보조금 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자체자원 매칭 여부 (2018년 기준) .....	231



# CONTENTS

---

<b>그림목차</b>	
〈그림 2-1〉 미국 정부계층별 GDP 대비 수입 비중 추이 (1960-2018년) .....	14
〈그림 2-2〉 미국 정부계층별 GDP 대비 지출 비중 추이 (1960-2018년) .....	17
〈그림 2-3〉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기능별 직접 지출액 비교 (2017년 기준) .....	20
〈그림 2-4〉 지역별 연방보조금 규모(FY2019) .....	37
〈그림 2-5〉 부처별 연방보조금 지출 규모(FY2019) .....	37
〈그림 2-6〉 프로그램별 연방보조금 지출 규모(FY2019) .....	40
〈그림 2-7〉 주정부별 FMAP 부담률(FY2019) .....	44
〈그림 2-8〉 주정부별 E-FMAP 비율(FY2018) .....	45
〈그림 2-9〉 주정부별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 프로그램 보조금 규모 (FY2018 상반기) .....	46
〈그림 2-10〉 주정부별 고속도로 계획 및 건설 프로그램 보조금 수령액 비교(2018년) .....	48
〈그림 2-11〉 초중등학교 교육기회 균등화를 위한 보조금 예산의 추이(2001-2018년) .....	51
〈그림 2-12〉 특수교육을 위한 보조금 지급액 추이(1977-2017) ·	53
〈그림 2-13〉 연방, 주, 지방정부 간 학교 급식 프로그램 제공 과정 ·	54
〈그림 2-14〉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 지출 내역(FY2018) ·	58
〈그림 3-2〉 지방정부 유형별 세입 구조(2019-2020 회계연도 기준) ·	96
〈그림 3-1〉 지역별 세입 구조(2019-2020 회계연도 기준) .....	95
〈그림 5-1〉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주요 역할분담 .....	174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제1장

## 서론

KRILA

## 제1절

##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가. 국고보조사업 증가 추세

- 2019년 기준으로 1,932개 국고보조사업(내역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 확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증가를 야기함(홍근석·김성주, 2018)
  - 「지방재정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증가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재정 운영을 어렵고 하고 지방재정을 경직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홍근석·김성주, 2018)
- 2019년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82조 원이며, 이 중 지방비 부담액은 26.7조 원 수준임
  -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는 2008년 12.1조 원에서 2019년 26.7조 원으로 증가함(연평균 증가율 7.5%)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급격한 증가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홍근석·김성주, 2018)

#### 나.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정비

- 문재인정부는 2021년부터 지역 자율성 제고와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근본적 지방재정제도 혁신을 포함하는 제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할 예정임
  - 제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특히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편할 계획임
-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를 통해 중앙-광역-기초 간 재정관계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제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국세 및 기능 이양과의 연계를 통해 국고보조사업 정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의 중앙-광역-기초 간 경비부담 기준은 장기간 미개정되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의 경비부담 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으나 장기간 미개정되어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 그리고 현재의 기준은 일부 국고보조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홍근석·김성주, 2018)
  -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의 [별표1]에 규정된 121개 사업과의 연계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 다. 주요 국가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필요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광역-기초 간 경비부담 및 역할분담에 대한 기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의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 연구목적

- 주요 국가의 국고보조사업 관련 현황 및 주요 제도를 조사함
  - 기능별, 사업별, 정부계층별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검토함
  - 국고보조사업의 중앙-광역-기초 간 경비부담 기준 및 현황을 검토함
  - 기준보조율 결정방식 등 주요 제도 및 사례를 검토함
- 특히 기능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및 재원분담 현황을 조사함
  - 사회복지, 교통, 환경 등 기능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및 국비-지방비 분담 현황을 조사함
  - 특히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은 1단계(2019-2020년)와 2단계(2021-2022년)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음
  - 제1단계 재정분권 결과 2020년에 약 3.5조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였으며, 지방소비세율 인상(11%→21%)과 연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였음(홍근석·김봉균, 2019)
  - 제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를 통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주요 국가의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국고보조사업 정비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는 2020년도를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최근 5년(2016-2020)에 대한 주요 국가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현황 및 주요 사례를 검토하고자 함
- 공간적 범위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4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 운영 현황 및 주요 사례를 검토하고자 함
- 내용적 범위는 주요 국가의 기능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및 재원분담 현황을 조사하고자 함

### 2. 연구방법

- 국고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주요 제도를 검토함
- 국고보조사업 관련 중앙-지방 간 재원분담 현황을 분석함
- 주요 국가들의 사회복지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제도 및 국고보조사업 특성을 분석함



## 제2장

# 미국의 국고보조사업 현황

---

제1절 정부 간 관계

제2절 보조금 제도 및 유형

제3절 보조금 자원분담 현황



## 제2장

## 미국의 국고보조사업 현황

KRILA

## 제1절 정부 간 관계

## 1. 기본구조

## 가. 사무 및 권한배분

- 미국의 기능별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연방제도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권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왜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국고보조금을 제공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함

〈표 2-1〉 미국 수정헌법의 주요 내용

조문	내용
제1조 제8절 제1항	연방 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연방정부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합중국 전역에 걸쳐서 획일적이어야 한다.
제1조 제10절 제1항	모든 주는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 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서 채무 지불의 법정 수단으로 삼거나, 사권 박탈법, 소급처치법 또는 계약상의 채무에 해를 주는 법률 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
제1조 제10절 제2항	모든 주는 연방 의회의 동의 없이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또,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수입은 연방정부의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연방 의회는 이것과 관련된 모든 주 정부 법률을 통제할 수 있다.
제1조 제10절 제3항	모든 주는 연방 의회의 동의 없이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또,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수입은 연방정부의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연방 의회는 이것과 관련된 모든 주 정부 법률을 통제할 수 있다.

조문	내용
제6조 제2절	본 헌법에 준거하여 제정하는 연방 법률, 그리고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체결했거나 체결하는 모든 조약은 이 국가의 최고법이며, 따라서 모든 주정부의 법관은 설령 어떤 주의 헌법이나 법률 가운데 이것들과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 최고법의 구속을 받는다.

자료: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n.d.) 미국 연방헌법(1787).

-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주정부 하부단위인 지방정부의 3개 층으로 구성된 정부계층을 가짐
  - 미국의 수정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789, rev. 1992) 제6조 2절은 연방헌법의 최고성 원칙을 명시하며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제정하는 법률 및 조약이 연방헌법에 구속된다고 규정함
  - 하지만 이 조항이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에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제8절과 제10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및 권한을 규정함
  - 제8절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설명하며, 제10절은 주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주정부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들 외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독립된 주권을 영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2-2〉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 배분

구분	연방정부	공유된 권한	주정부
헌법에 의해 인정된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li> <li>▪ 외교</li> <li>▪ 주간 통상 규제</li> <li>▪ 선전포고</li> <li>▪ 군대양성 및 지원</li> <li>▪ 우체국 설치 운영</li> <li>▪ 하급 법원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부과 및 징수</li> <li>▪ 채무부담</li> <li>▪ 법률제정 및 집행</li> <li>▪ 법원 설치</li> <li>▪ 일반 사회복지 제공</li> <li>▪ 은행 및 회사의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내 통상 규제</li> <li>▪ 선거관리</li> <li>▪ 공중보건, 안전, 도덕증진</li> <li>▪ 지방자치단체 설립</li> <li>▪ 헌법수정 비준</li> <li>▪ 주 방위군 설치</li> </ul>
헌법에 의해 금지된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간거래에 대한 규제</li> <li>▪ 권리장전 침해</li> <li>▪ 주 경계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위나 귀족칭호 부여</li> <li>▪ 노예제도 도입</li> <li>▪ 투표권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약 동맹 연합의 체결</li> <li>▪ 포획면허 승인</li> <li>▪ 화폐 주소</li> <li>▪ 신용증권 발행</li> <li>▪ 금화·은화 등 화폐 이외에 의한 채무 변제</li> <li>▪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li> <li>▪ 소급처벌법</li> <li>▪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를 해치는 법률 제정</li> <li>▪ 귀족칭호 수여</li> </ul>
목시적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과 법인체의 설립</li> <li>▪ 육해공군 사관학교 설립과 운영권리</li> </ul>		
고유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추방</li> <li>▪ 탐사를 통한 영토취득</li> </ul>		

자료: 윤인숙(2018).

- 위의 수정헌법 조항들로 인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각의 고유권한과 함께 공유된 권한을 가진
- 연방정부는 조례, 외교, 주간 통상 규제, 선전포고, 군대양성 및 지원, 우체국 설치 운영, 하급 법원 설치의 권한을 가진
  - 주정부는 주내 통상 규제, 선거관리, 공중보건, 안전, 도덕증진, 지방자치단체 설립, 헌법수정 비준, 주 방위군 설치의 권한을 가진
  - 조세 부과 및 징수, 채무부담, 법률제정 및 집행, 법원 설치, 일반 사회복지 제공, 은행 및 회사의 설립은 헌법상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유하는 권한임

(고경훈, 2014)

- 수정헌법은 지방자치와 지방정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주 정부는 각자가 가진 권한을 바탕으로 행정의 보조단위 및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의 자격으로 지방정부를 설립함
  - 지방정부의 종류는 주별로 다르지만 크게 일반목적 지방정부(general purpose government)와 특별목적 지방정부(special purpose government)로 나뉨
  - 일반목적 지방정부는 크게 카운티(county)와 카운티의 하위단위(sub-county)로 구분될 수 있는 뮤니시펄리티(municipality), 타운 및 타운십(town & township)으로 구분됨
  - 특별목적 지방정부는 크게 교육구(school district)와 특별구(special district)로 구분됨
- US Census Bureau가 2017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지방정부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음
  - 특별목적 지방정부가 51,296개로 일반목적 지방정부(38,779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 2017년 기준 미국의 지방정부 종류와 수

대분류	소분류		수
일반목적 지방정부	카운티		3,031
	하위 단체	뮤니시펄리티	19,495
		타운 및 타운십	16,253
		소계	35,748
	합계		38,779
특별목적 지방정부	교육구		38,542
	특별구		12,754
	합계		51,296
총 계			90,075

출처: U.S. Census Bureau (2017) Census of Governments - Local Governments by Type and State

- 각 지방정부의 사무 배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
- 주정부는 경찰권을 가지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정부를 지도·지원·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함
  - 지방정부는 주 헌법 및 자치헌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나, 그 종류별로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함

〈표 2-4〉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사무 구분

구분	주요 사무	
주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권: 공공의 안전, 공중위생, 공공의 풍기, 공공의 편의, 일반복지 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인신 상, 재산상의 권리 제한</li> <li>■ 공공서비스 : 교육(고등교육은 주정부, 공립학교는 주정부 감독 하에 지방정부 담당), 사회안보(주방위군, 주경찰, 민간방위조직 등), ■ 공중위생서비스(보건, 복지, 자연보호, 환경보호 등)</li> <li>■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 주정부는 권고, 보고, 검사, 보조금, 법률의 제·개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도·지원·감독</li> </ul>	
지방정부	주헌법 및 자치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징수, 도시계획, 주택 및 도심재개발, 고속도로 및 기타 도로관리, 대중교통, 상하수도,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범죄인 기소 및 치안 등 경찰서비스, 도로 관리, 초·중등 교육 등</li> </ul>
	카운티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사법기관, 사회복지 서비스, 도로, 농업원조,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공원, 레저시설 관리, 도서관 서비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능이양 사무 계획 등</li> <li>※ 단, 주정부 별로 카운티에 이양하는 사무 상이</li> </ul>
	뮤니시펄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수도, 보건 위생, 도로, 경찰, 소방, 교육, 복지, 도시계획, 휴양, 시립기업, 교통 등</li> </ul>
	타운 & 타운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 경찰, 교육, 위생,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공항관리, 주차장, 도서관 서비스, 매립쓰레기처리, 상수원 공급서비스 등</li> <li>※ 단, 주정부 별로 기초자치정부에 이양하는 사무 상이</li> </ul>
	특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 공급, 경찰서비스, 하수처리와 위생서비스, 도시가스공급, 소방, 주택, 공원, 대중교통서비스 등</li> </ul>
	교육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립학교 관련 사무</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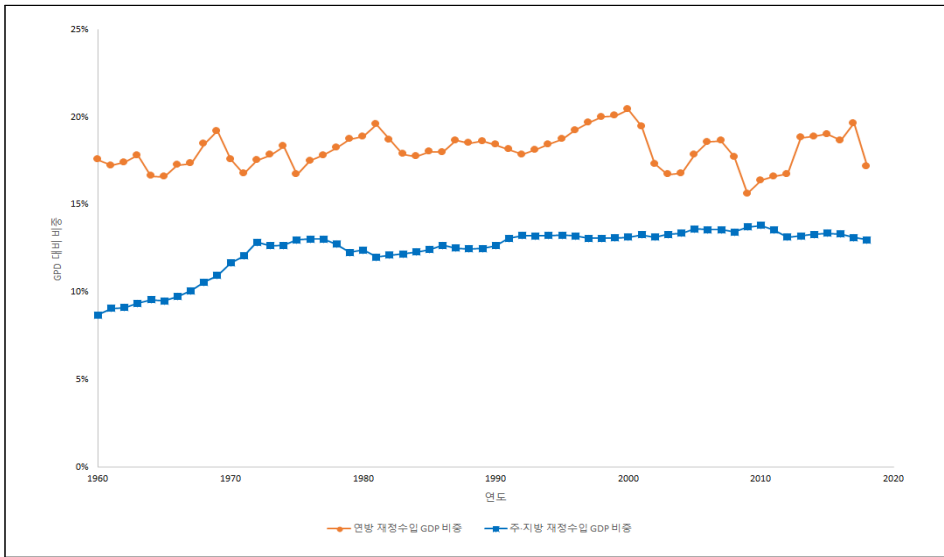
자료: 이현우(2017).

나. 자원배분1)

1) 세입 측면

- GDP대비 연방정부 총 수입비중은 1960년 약 17%에서 2000년 약 20%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에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GDP대비 총 수입비중은 1960년 약 9%에서 2018년 약 13%까지 증가하였음

〈그림 2-1〉 미국 정부계층별 GDP 대비 수입 비중 추이(1960-2018년)



- 연방정부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es)와 사회보험세(Contributions for government social insurance)로 두 항목이 전체 수입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1) 미국의 정부별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한 추세와 다음의 절에 나타나있는 재정수입과 지출의 구조에 대한 내용은 Laubach(2005)을 인용·수정·보완한 것이다.



- 개인소득세는 2004-05년과 2009-10년 사이에 41%에서 38%로 감소하였으나, 2015-16년에 45%로 크게 증가하였음
  - 반면 사회보험세는 2004-05년과 2009-10년 사이에 37%에서 40%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5-16년에는 5% 감소하여 전체 수입 중 35%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법인세의 경우 2004-05년의 14%의 비중을 차지한 이후 9%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음
- 주정부 수입의 주요 항목은 연방정부로부터의 보조금(Intergovernmental revenue), 판매세(Sales and gross receipts), 보험신탁 수입(Insurance trust revenue) 등임
- 특히 연방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 주정부 수입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는 달리 판매세가 수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보조금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보험신탁 수입은 약 2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16년에는 10%로 감소하였음
-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상위정부(주로 주 정부)로부터의 보조금과 재산세(Property taxes)임
- 주정부와는 달리 판매세가 지방정부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은 반면, 유틸리티(Utility)로부터 얻는 수입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정부로부터의 보조금과 재산세가 지방정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표 2-5〉 정부계층별 수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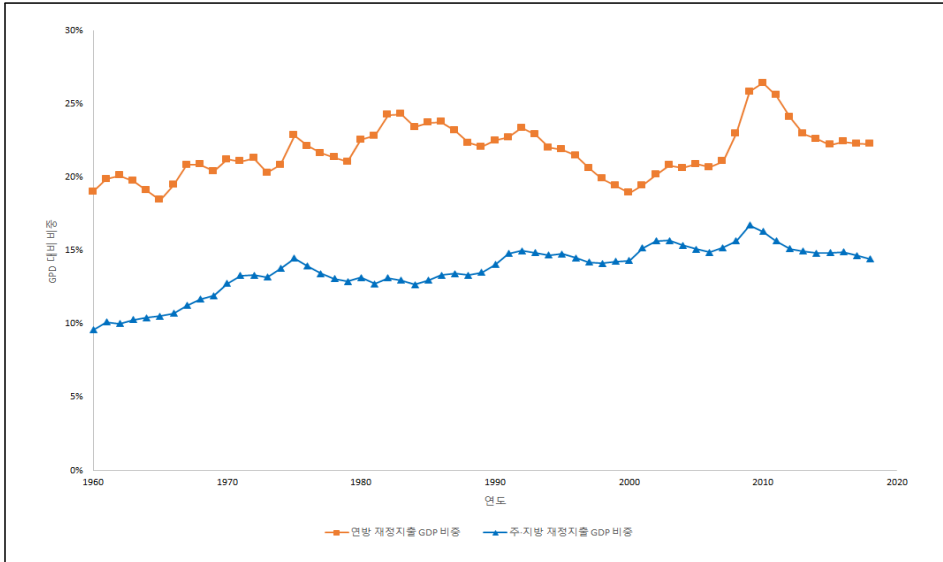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수입 항목	2004-2005년	2009-2010년	2015-2016년
연방 정부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es)	937.2(41%)	943.2(38%)	1,545.7(45%)
	사회보험세(Contributions for government social insurance)	853.4(37%)	970.9(40%)	1,225.0(35%)
	법인세(Taxes on corporate income)	319.5(14%)	219.4(9%)	327.1(9%)
	특별소비세 및 관세(Excise taxes and customs duties)	98.0(4%)	95.8(4%)	136.5(4%)
	기타수입(Other federal revenues)	96.3(4%)	214.7(9%)	241.2(7%)
주 정부	보조금(Intergovernmental revenue)	407.8(25%)	575.4(28%)	637.2(30%)
	보험신탁수입(Insurance trust revenue)	335.8(20%)	451.1(22%)	205.2(10%)
	판매세(Sales and gross receipts)	312.6(19%)	344.5(17%)	441.1(21%)
	개인 및 법인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es)	260.3(16%)	275.0(13%)	389.8(18%)
	사용료 및 기타 일반수입(Charges and miscellaneous general revenue)	228.5(14%)	285.9(14%)	349.3(16%)
	재산세(Property taxes)	11.3(1%)	14.5(1%)	15.9(1%)
	기타 조세(Other taxes)	66.4(4%)	72.0(4%)	76.0(3%)
	기타 수입(Utility revenue, Liquor store revenue)	19.7(1%)	21.6(1%)	21.9(1%)
지방 정부	보조금(Intergovernmental revenues)	452.1(35%)	544.0(34%)	593.5(33%)
	재산세(Property taxes)	324.4(25%)	429.5(27%)	487.3(27%)
	사용료 및 기타 일반수입(Charges and miscellaneous general revenue)	260.5(20%)	322.3(20%)	369.2(20%)
	유틸리티 수입(Utility revenue)	99.0(7%)	131.9(8%)	150.3(8%)
	판매세(Sales and gross receipts)	71.7(5%)	91.0(6%)	117.7(7%)
	개인 및 법인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es)	25.2(2%)	7.7(0%)	40.7(2%)
	기타 조세(Other taxes)	26.5(2%)	21.7(1%)	30.9(2%)
기타 수입(Insurance trust revenue, Liquor store revenue)	48.0(4%)	64.5(4%)	16.0(1%)	

## 2) 세출 측면

- GDP 대비 연방정부 지출 비중은 1960년 약 19%에서 1980년도 초반까지 약 24%수준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 이후 약 19%으로 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 약 22%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GDP 대비 지출 비중은 1960년 약 10%에서 2018년 약 14%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2-2〉 미국 정부계층별 GDP 대비 지출 비중 추이(1960-2018년)



- 연방정부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회보장(Social benefits)으로 주로 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지출로 이루어져 있음
  - 국방(Defense)에 대한 지출과 하위정부에 대한 보조금(Grants-in-aid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도 연방정부의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연방정부 지출 중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방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정부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회서비스 및 소득보전(Social services and income maintenance)과 지방정부로의 보조금(intergovernmental revenue)임
  - 두 항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전체 주정부 지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2009-10년과 2015-16년 사이 사회서비스 및 소득보전에 대한 지출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는 교육(Education)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으며, 유틸리티(utility)와 치안(public safety)도 지방정부의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6〉 정부계층별 지출 구조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수입 항목	2004-2005년	2009-2010년	2015-2016년
연방 정부	사회보장(Social benefits)	1,096.0(42%)	1,774.0(47%)	2,045.0(49%)
	국방(Defense)	478.8(19%)	653.0(17%)	589.5(14%)
	이자지급(Interest payment)	344.4(13%)	381.5(10%)	455.0(11%)
	보조금(Grants-in-aid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343.5(13%)	505.2(14%)	557.1(14%)
	기타지출(Other expenditures)	347.6(13%)	455.4(12%)	494.0(12%)
주 정부	보조금(Intergovernmental revenue)	405.9(28%)	485.6(25%)	532.7(24%)
	사회서비스 및 소득보전(Social services and income maintenance)	395.2(27%)	508.2(26%)	710.4(32%)
	교육(Education)	190.7(13%)	253.8(13%)	304.3(14%)
	보험신탁지출(Insurance trust expenditure)	168.2(11%)	320.7(17%)	285.5(13%)
	치안(Public safety)	56.3(4%)	67.4(3%)	73.1(3%)
	교통(Transportation)	80.9(5%)	96.1(5%)	108.8(5%)
지방 정부	기타지출(Other expenses)	175.3(12%)	211.8(11%)	210.3(9%)
	교육(Education)	497.6(38%)	606.4(36%)	668.6(36%)
	사회서비스 및 소득보전(Social services and income maintenance)	141.2(11%)	181.2(11%)	212.3(12%)
	유틸리티(Utility)	133.8(10%)	183.7(11%)	197.0(11%)
	치안(Public safety)	120.4(9%)	157.0(9%)	176.7(10%)
	교통(Transportation)	68.7(5%)	91.0(6%)	98.1(5%)
	보조금(Intergovernmental revenue)	13.7(1%)	13.9(1%)	16.3(1%)
기타지출(Other expenses)	335.4(26%)	433.6(26%)	469.6(25%)	

## 2. 지방재정 규모

- 2017년 기준 미국 연방정부 수입은 3조 4천 622억 달러, 지출은 3조 9천 816억 달러를 기록함
  - 주정부 수입은 약 2조 5천 311억 달러, 지출은 2조 3천 169억 달러를 기록함
  - 지방정부 수입은 약 1조 9천 384억 달러, 지출은 약 1조 9천 133억 달러를 기록함

〈표 2-7〉 미국 지방재정의 규모

(단위 : \$ in thousands)

구분	전체 수입 (Revenue)	전체 지출 (Expenditure)
연방정부	\$ 3,462,200,000	\$ 3,981,600,000
주정부	\$ 2,531,103,057	\$ 2,316,928,769
지방정부	\$ 1,938,485,304	\$ 1,913,387,693

자료: 연방정부 데이터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n.d.) Budget and Economic Data; 주정부 및 지방정부 데이터 - US Census Bureau (2017) Census of Government.

- 2017년 기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별 직접 지출액은 다음과 같음
  - 주정부는 ①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조, ② 교육, ③ 교통 순으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
  - 지방정부는 ① 교육, ②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조, ③ 공공서비스의 순으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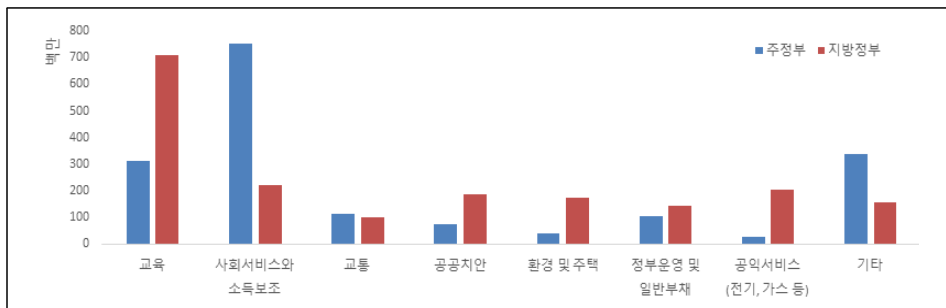
〈표 2-8〉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기능별 직접 지출액(2017년 기준)

(단위 : \$ in thousands)

구분	주정부	지방정부
총 직접지출	\$1,763,577,712	\$1,896,505,465
교육	\$313,726,816	\$708,994,472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조	\$752,601,491	\$221,301,069
교통	\$114,325,430	\$102,132,280
공공치안	\$72,865,423	\$185,101,100
환경 및 주택	\$38,265,396	\$172,918,809
정부운영 및 일반부채	\$105,004,374	\$145,563,977
공익서비스 (전기, 가스 등)	\$28,350,395	\$203,477,294
기타	\$338,438,387	\$157,016,464

자료: US Census Bureau (2017) Census of Government

〈그림 2-3〉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기능별 직접 지출액 비교(2017년 기준)



자료 : US Census Bureau (2017) Census of Government

- 2012년 기준 지방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① 뮤니시펄리티, ② 교육구, ③ 카운티 순임
  - 교육구는 교육을 전담하고, 카운티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뮤니시펄리티는 공익서비스, 공공치안, 환경 및 주택 관련 기능을 주로 수행함
  - 특별구는 주로 공익서비스에 집중하며, 타운십은 규모가 작아 총지출 규모도 작은 편임

〈표 2-9〉 지방정부의 유형 및 기능별 지출액(2012년 기준)

(단위 : \$ in thousands)

구분	카운티	뮤니시펄리티	타운십	특별구	교육구
총 지출	\$385,018,563	\$544,600,872	\$50,953,852	\$207,721,026	\$499,576,834
총 직접지출	\$369,970,025	\$530,080,763	\$48,561,916	\$204,241,960	\$497,843,699
교육	\$56,209,652	\$54,255,445	\$13,425,947	\$5,003,720	\$479,479,026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조	\$105,960,859	\$37,489,023	\$823,321	\$41,717,469	0
교통	\$26,073,469	\$42,963,298	\$5,858,778	\$12,459,420	0
공공치안	\$56,399,253	\$87,487,600	\$7,149,493	\$6,889,488	0
환경 및 주택	\$27,412,324	\$83,736,066	\$5,871,232	\$42,401,618	\$435
정부운영 및 일반부채	\$51,207,145	\$53,518,289	\$4,846,201	\$8,988,739	\$16,780,182
공익서비스(전기/가스)	\$9,823,070	\$97,697,450	\$2,374,726	\$74,200,737	0
기타	\$36,884,253	\$72,933,592	\$8,212,218	\$12,580,769	\$1,584,056

자료: US Census Bureau (2012) Census of Government<sup>2)</sup>

- 2017년 기준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50% 이상의 자체재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정부는 연방헌법과 주 헌법이 규정하는 한에서 세목을 도입할 권한을 가지며, 개인과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일반소비세를 포함하여 다양한 세금을 부과함
  - 지방정부는 재산세를 위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나 주별로 지방세율과 세목이 다름
- 주정부 수입 중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6.0%이고, 지방정부 수입 중 이전재원 비율은 약 31.1%임
  - 지방정부 이전재원 수입 중 연방정부에서 직접 받은 수입은 약 683억 달러로 전체 이전재원 수입 중 약 11.4%임
  - 지방정부 이전재원 중 주정부에서 받은 수입은 약 5천 336억 달러로 88.6%임

2) 2017년 자료는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

〈표 2-10〉 주정부 및 지방정부 부문별 수입(2017년 기준)

(단위 : \$ in thousands)

구분	주정부	지방정부
전체 수입	\$2,531,103,057	\$1,938,485,304
자체재원	\$1,317,220,453	\$1,091,389,907
세금	\$946,076,690	\$706,752,529
요금	\$371,143,763	\$384,637,378
이전재원	\$658,791,527	\$602,029,796
연방정부	\$641,714,983	\$68,360,753
주정부	\$0	\$533,669,043
지방정부	\$17,076,544	\$0
기타수입	\$555,091,077	\$245,065,601

자료: US Census Bureau (2017) Census of Government

- 지방정부 중 카운티, 유니티펠리티, 타운십, 특별구의 자체재원은 약 65% 이상인 반면, 교육구는 재정의 50% 이상을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있음
  - 카운티, 유니티펠리티, 타운십은 주로 세금과 주정부 이전재원에 크게 의존함
  - 특별구는 자체재원 중 세금이 아닌 요금의 비중이 더 높으며, 이전재원의 경우 연방정부 재원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
  - 교육구는 주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

〈표 2-11〉 지방정부의 유형 및 부문별 수입(2012년 기준)

(\$ in thousands)

구분	카운티	유니티펠리티	타운십	특별구	교육구
전체 수입 (100%)	\$367,799,494	\$426,694,483	\$48,035,593	\$158,219,337	\$494,271,081
자체재원 (비율)	\$237,130,787 (64.5%)	\$315,130,281 (73.9%)	\$38,036,354 (79.2%)	\$104,701,836 (66.2%)	\$220,540,271 (44.6%)
세금	\$144,373,268	\$197,224,094	\$31,316,974	\$28,573,069	\$187,979,341
요금	\$92,757,519	\$117,906,187	\$6,719,380	\$76,128,767	\$32,560,930
이전재원 (비율)	\$130,668,707 (35.5%)	\$111,564,202 (26.1%)	\$9,999,239 (20.8%)	\$53,517,501 (33.8%)	\$273,730,810 (55.4%)
연방정부	\$14,327,973	\$23,756,360	\$657,387	\$26,342,531	\$5,445,971
주정부	\$107,674,931	\$77,756,202	\$8,125,477	\$13,179,191	\$260,988,233
지방정부	\$8,665,803	\$10,051,640	\$1,216,375	\$13,995,779	\$7,296,606

출처: US Census Bureau (2012) Census of Government



### 3. 사회보장 관리체계

- 미국의 사회보장 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가 재원과 운영지침을 제공함
  - 사회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별로 사회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체계 및 프로그램 제공이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분담은 연방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념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음(정기혜, 2012a)
  - 즉,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권한이 대부분 주정부로 이양되는 반면, 연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추구하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경향을 보였음
- 사회보장을 크게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할 경우, 이들 영역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관리체계는 이원화되어 있음
  - 먼저 대인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과 빈곤가족 한시 지원제도, 메디케이드, 일반부조 등의 공공부조 관련 제도는 연방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함
  - 그 외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과 보충적 소득부조 관련 업무는 사회보장청이 담당하고 있음
- 미국 사회보험 관리의 또 다른 특징은 재무부, 국세청, 사회보장청이 업무를 분담하면서 연계하고 있다는 것임
  - 재무부는 기금의 관리 및 현금급여의 집행을 담당하며, 국세청은 보험료의 징수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관리를 담당함(정기혜, 2012a)
  - 사회보장청은 피보험근로자의 관리 및 급여의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제2절 보조금 제도 및 유형

### 1. 보조금 제도

#### 가. 연혁

- 연방정부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것은 187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보조금<sup>3)</sup>이 공동의 복지 증진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뉴딜시대부터임(박세경, 2009)
  - 1930년대 미국을 덮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뉴딜정책을 실시하였음
  -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는 협력적 연방주의(Cooperative Federalism)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남
  - 이후 존슨 대통령이 선언한 빈곤과의 전쟁 및 위대한 사회 건설은 1960년대 말까지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240억 달러로 크게 증가시킴
  - 1960년대 초 70억 달러 규모에서 3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며, 이 과정에서 100개 이상의 보조금을 신설하였음
- 연방보조금 정책이 지금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임
  - 「연방보조금 및 협력적 합의법(The Federal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Act)」이 1977년 제정되면서 연방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 계약(contracts), 협력적 합의(cooperative agreements)와 보조금(grants) 등의 방식을 규정함
  - 계약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계약을 통해 서로 무언가를 얻는 관계를 의미하지만, 보조금이나 협력적 합의는 연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정부를

3) 미국의 보조금은 법이 정하는 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타 기관(non-federal entity)으로 이전되는 자원(anything of value)을 의미한다(Grants.gov, 2017).

-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이 법의 집행을 위해 예산관리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연방보조금이 지원에 기반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만 쓰이도록 하는 지침을 1978년에 마련하였음
  - 1970년대 이후 연방보조금의 준비와 집행은 정책형성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
    - 먼저 의회가 보조금과 관련한 법과 규제를 정하면, 예산관리처가 속해있는 대통령실(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은 행정명령과 지침을 통해서 보조금 관련법의 집행을 위한 행정규칙을 마련함
    - 마지막으로 정부부처는 예산관리처의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지출을 준비함

〈표 2-12〉 미국 연방보조금 정책수립 과정

단계	주요 역할(Key Roles)	법체계(Legal Hierarchy)	예시(Example)
1	의회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기금을 책정하여 연방정부 부처에 제공한 뒤 보조금과 관련한 법을 수립	법조항 (Statues) 규제조항 (Regulations)	의회는 정보법(DATA Act)을 수립하고 모든 연방지출 데이터가 한 웹사이트에서 접속가능하도록 할 것을 명령함
2	대통령실은 법안 집행을 위한 지침을 수립함	행정명령 (Executive Orders) 각서 (Memoranda) 회람(circulars)	대통령실은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보법을 어떻게 집행할지 결정함
3	보조금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는 지침에 근거하여 행정 정책을 마련	행정정책 및 과정 (Administrative Policies & Procedures)	각 정부부처는 대통령이 제시하는 지침에 맞춰 내적/외적 정책과 과정을 조정함

자료: <https://www.grants.gov>

- 현재 연방보조금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2002년에 설치된 Grants.gov의 프로그램 관리실(Program Management Office)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음

- Grants.gov는 1,000개가 넘는 연방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해마다 5,0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윈스톱 서비스 웹사이트임
- 이 웹사이트는 보조금 관리와 함께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개별 보조금의 운영방식을 통일하여 지원 및 배부 과정을 단순화하고 효율화하고자 하였으며,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여 보조금 접수 처리 및 집행과정을 빠르게 하였음

#### 나. 관련 법령 및 제도

- 현재의 연방보조금 정책이 마련되기까지 다양한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예산관리처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제도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Grants.gov, n.d.)
- 이러한 법률과 행정명령(지침)은 연방정부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표 2-13〉** 미국 연방보조금 관련 법률 및 행정명령

구분	연도	법률 및 행정명령
법률	1977	Federal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Act
	1995	Lobbying Disclosure Act
	1996	Single Audit Act Amendments of 1996
	1999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2006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2009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14	DATA Act
행정명령 (지침)	2011	Executive Order 13576
	2014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Uniform Guidance

- 먼저 1999년의 「연방 재정지원관리 개선법」을 통해 시작된 연방보조금 개혁은 2006년까지 연방보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음
  - 이 법률은 연방보조금을 운영하는 정부부처 간의 조정과정을 개선하여 보조금 제도의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가지고 있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한승희, 2017).
  -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해 연방보조금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조금 정책 위원회(Grants Policy Committee, GPC)가 설치되었음
  - 2002년에는 연방정부 고위관리자로 구성된 보조금 집행 위원회(Grant Executive Board, GEB)가 설치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2002년에 신설된 Grants.gov 홈페이지의 기획과 감독 등을 담당하였음
-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연방기금 책임성 및 투명성법(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의 제정을 통해 연방 보조금 제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이 추진되었음
  - 이 법률에서 연방기금에 대한 사용 정보가 웹페이지를 통해 개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USAspending.gov이라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음
  - 2007년 이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009년에 「미국 경기부양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 제정되었음
  - 이 법률은 기존의 보조금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특별 보조금처럼 주어진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Federal Stimulus Package)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 웹사이트인 Recovery.gov와 FederalReporting.gov 라는 웹페이지를 운영하게 하였음
  - 그리고 경기부양법과 관련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복 책임성 및 투명성 위원회(Recover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Board)를 설치하였음

- 2011년에는 전체 연방정부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책임성 및 투명성 위원회(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Board, GATB)를 설치하였음
- 10월에는 예산관리처가 정책메모(M-17-26)를 통해 보조금 정책 위원회(GPC)와 보조금 집행 위원회(GEB)를 하나로 통합하여 연방지원 개혁 위원회(the Council on Financial Assistance Reform, COFAR)를 설치하였음
- 2014년에 「디지털 책임성 및 투명성법(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DATA Act)」이 제정되었음
  - 이 법률은 예산관리처 지침(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Uniform Guidance)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연방보조금 제도를 설계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음
  - 이 법률의 주요 목적은 연방보조금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임
  - 의회는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와 예산관리처(OMB)로 하여금 연방보조금 지출 데이터와 관련한 범정부 보고기준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음
  - 이 법률의 시행은 2014년에 예산관리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시작하여, 2017년에 시범사업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되었음
  - 2014년 12월에 예산관리처가 연방보조금을 위한 공통 행정요건, 비용 원칙, 회계감사 요건을 발표하였음
  - 이를 통해 기존 지침의 오류를 수정하고 관련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예산 낭비 및 사기 등에 초점을 맞춘 회계감사요건을 제시하였음
  - 또한 연방정부의 부처들이 보조금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수령인들에게 비용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 2015년 5월에 보건후생성(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을 파트너로 하는 초기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음

- 보조금 데이터를 저장할 공통 온라인 라이브러리(Common Data Element Repository, CDER)를 설치하고, Grant.gov 웹사이트 내에 보조금 학습 센터(Grants Learning Center) 페이지를 설치하였음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집된 운영 결과와 사용자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의회는 「보조금 관리 및 효율성법(Grants Oversight and New Efficiency Act, GONE Act)」을 제정하였음
  - 이 법률은 연방정부에게 집행되지 않고 개별 부처가 가지고 있는 연방보조금 재원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지급기간이 종료된 보조금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였음
- 예산관리처는(OMB)는 연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계속 새로운 정책메모를 발표하고 있음
- M-17-26 연방정부부처의 부담경감을 위한 예산관리처 정책메모 수정 및 폐지 방안은 연방정부의 보조금 업무를 복잡하게 하는 연방규제를 찾아내어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M-18-18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소액결제 및 단순구매제한 제도 변화 실시는 소액결제의 규모를 \$10,000로 단순구매 규모를 \$25,000로 증가시켜 보조금 업무의 행정처리 부담을 경감시켰음
  - M-18-24 보조금 수령인의 행정보고 부담 경감 전략은 DATA ACT 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사항 및 우수 사례를 문서화하였음

## 2. 유형

### 가. 재정지원 유형

- 1977년에 수립된 「연방보조금 및 협력적 합의법(The Federal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Act)」은 연방기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약(contracts), 협력협약(cooperative agreements), 보조금(grants) 방식을 규정함(grants.gov, n.d.)

- 계약은 미국 연방정부가 구매나 조달을 통해서 연방정부기관 외의 조직으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을 의미함
  - 수혜의 대상이 연방정부가 된다는 점에서 협력협약 및 보조금과는 궁극적으로 다른 형태의 지출방식임
- 보조금은 미국 연방정부가 연방정부기관 외의 조직에게 물자(anything of value)를 제공하여 법이 정하는 공익목표달성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는 지출방식임
  -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목표는 공공서비스 제공, 경제 활성화, 일반 시민에 대한 지원 등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들도 혁신적인 연구 지원, 재난이나 경제위기로부터의 극복, 기반시설 건설 등으로 다양함
  - 연방보조금 관련 사업은 연방정부의 국내 지원 사업 목록(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 CFDA)<sup>4)</sup>을 통해서 제공됨
- 협력협약은 미국 연방정부가 연방정부기관 외의 조직에게 물자(anything of value)를 제공하여 법이 정하는 공익목표달성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는 지출방식이라는 점에서 보조금과 같음
  - 하지만 업무수행을 물자를 제공받는 단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물자를 제공하는 연방정부기관이나 그 기금을 관리하는 중계기관(pass-through entity)도 함께 업무수행에 참여하여 서로 협력하게 함
  - 보조금 제도는 연방정부로 하여금 감시의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 나. 보조금 유형

- 연방정부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범주별 보조금(Categorical grants), 포괄보조금(Block grants), 세입공

4) [www.cfda.gov](http://www.cfda.gov)를 통해서 제공되었으나, 현재 [beta.sam.gov](http://beta.sam.gov)로의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다 (접속일: 2020년 4월 29일).



유(General revenue sharing) 등으로 분류됨(홍근석·김봉균, 2019)

- 범주별 보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정의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좁게 정의된 사업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음
  - 범주별 보조금은 프로젝트 범주별 보조금 (Project categorical grants), 공식 범주별 보조금 (Formula categorical grants), 공식-프로젝트 범주별 보조금 (Formula-project categorical grants), 개방형 환급 범주별 보조금 (Open-end reimbursement categorical grants)으로 구분됨
  - 프로젝트 범주별 보조금은 연방정부가 보조금에 대하여 정한 절차에 신청한 하위정부들 간의 경쟁을 통해 부여되는 보조금을 의미함
  - 공식 범주별 보조금은 인구나 일인당 소득과 같이 법률시행이나 행정규정에 명시된 요소에 따라 하위정부에게 할당되는 보조금을 의미함
  - 공식-프로젝트 범주별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법률시행이나 행정규정에 명시된 요소에 따라 주정부에게 보조금을 할당한 후, 각 주정부가 정한 절차에 신청한 지방정부나 신청자격을 가진 다른 기관들 간의 경쟁을 통해 부여되는 보조금을 의미함
  - 개방형 환급 범주별 보조금은 하위정부 간의 경쟁이나 보조금 산정에 따른 공식 없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하위정부가 지출한 금액의 일정부분에 대한 환급금을 제공하는 보조금을 의미함(홍근석·김봉균, 2019)
- 포괄보조금은 범주별 보조금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 활동의 정의가 범주별 보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보조금을 의미함(홍근석·김봉균, 2019)
  - 포괄적이라는 의미는 다른 보조금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개념이며, 지방정부의 재원확충을 목적으로 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식에 의하여 배분됨
  - 목표가 포괄적으로 정의되는 만큼 보조금 수령기관이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갖게 됨

- 대표적으로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지역사회 개발 포괄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프로그램이 있음
- 세입공유는 연방법이나 주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금지되어있는 활동을 제외한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사업 활동의 범위에 있어서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홍근석·김봉균, 2019)
- 일반세입공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음(유태현 외, 2017)

〈표 2-14〉 보조금 유형 분류

구분	낮음	중간	높음
보조금 제공에 대한 연방정부 재량권	공식 범주별 보조금	포괄보조금	프로젝트 범주별 보조금
	개방형 환급 범주별 보조금	공식-프로젝트 범주별 보조금	
	세입공유		
보조금 사용에 대한 하위정부 재량권	프로젝트 범주별 보조금	포괄보조금	세입공유
	공식-프로젝트 범주별 보조금		
	공식 범주별 보조금		
	개방형 환급 범주별 보조금		
보조금에 대한 성과조건 정도	세입공유	포괄보조금	프로젝트 범주별 보조금
			공식 범주별 보조금
			공식-프로젝트 범주별 보조금
			개방형 환급 범주별 보조금

자료: 홍근석·김봉균(2019).

### 제3절 보조금 자원분담 현황

#### 1. 보조금 현황

##### 가. 개요

- 연방정부로부터 하위정부에 제공되는 보조금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연방정부 보조금은 6,747억 달러 수준임
- 특히 2009년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로 인하여 2008년과 2010년 사이의 보조금이 다른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음(홍근석·김봉균, 2019)

〈표 2-15〉 연방정부 보조금 추이

구분	총금액	보건	소득보전	교통	기타
2018 (추정)	727,986	433,436	111,321	64,356	118,873
2017	674,700	406,946	107,400	64,783	95,571
2016	660,818	396,666	104,769	63,861	95,522
2015	624,354	368,026	101,08	60,831	94,415
2014	576,965	320,022	100,869	62,152	93,922
2013	546,171	283,036	102,190	60,518	100,427
2012	544,569	268,277	102,574	60,749	112,969
2011	606,766	292,847	113,625	60,986	139,308
2010	608,390	290,168	115,156	60,981	142,085
2009	537,991	268,320	103,169	55,438	111,064
2008	461,317	218,025	93,102	51,216	98,974
2007	443,797	208,311	90,971	47,945	96,570
2006	434,099	197,347	89,816	46,683	100,253
2005	428,018	197,848	90,885	43,370	95,915
...	...	...	...	...	...
2000	285,874	124,843	68,653	32,222	60,156
1990	135,325	43,890	36,768	19,174	35,493
1980	91,385	15,758	18,495	13,022	44,110
1970	24,065	3,849	5,795	4,599	9,822

주: 명목금액.

자료: Dilger(2018).

- 2017년 기준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은 4,069억 달러로 전체 연방보조금의 60.3% 수준임
  - 보건복지 분야 연방보조금은 2010년 47.7%에서 2017년 60.3%로 증가하였음
- <표 2-16>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을 연방정부의 총 지출액과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내고 있음
  - 정부운영과 자본개선에 대한 지출(예: 고속도로 건설, 경제개발)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개인에 대한 지출(예: 건강보험혜택, 주거보조)을 구분하여 개인에 대한 보조금 비중을 따로 표시하고 있음
  - 연방정부 보조금 중 개인에 대한 지출의 비중은 1970년 37.7%에서 2018년 73.9%로 크게 증가하였음

<표 2-16>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비중 추이

구분	총금액	연방정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개인에 대한 지출 비중
2018(추정)	727,986	17.4%	3.6%	73.9%
2017	674,700	16.9%	3.5%	75.3%
2016	660,818	17.2%	3.6%	75.0%
2015	624,354	16.9%	3.5%	74.2%
2014	576,965	16.5%	3.3%	71.5%
2013	546,171	15.8%	3.3%	69.4%
2012	544,569	15.4%	3.4%	66.9%
2011	606,766	16.8%	3.9%	64.7%
2010	608,390	17.6%	4.1%	64.3%
2005	428,018	17.3%	3.3%	65.1%
2000	285,874	16.0%	2.8%	65.2%
1995	224,991	14.8%	3.0%	64.7%
1990	135,325	10.8%	2.3%	57.2%
1985	105,852	11.2%	2.5%	47.9%

구분	총금액	연방정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개인에 대한 지출 비중
1980	91,385	15.5%	3.3%	36.2%
1975	49,791	15.0%	3.1%	34.4%
1970	24,065	12.3%	2.3%	37.7%

주: 명목금액.  
자료: Dilger(2018).

- 2017년 기준 연방정부 보조금은 총 1,319개이며, 이 중 1,299개(98.5%)가 범주별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음
  - 레이건 정부의 보조금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의 연방정부 보조금 수는 완만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음(홍근석·김봉균, 2019)
- 포괄보조금은 1968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2012년 26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20개의 포괄보조금이 운영되고 있음
- 세입공유는 1975년 도입된 이후 1984년까지 운영되었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7〉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수 추이

구분	총 보조금 수	범주별 보조금	포괄보조금	세입공유
2017	1,319	1,299	20	0
2016	1,216	1,196	20	0
2015	1,188	1,168	20	0
2014	1,099	1,078	21	0
2013	1,052	1,030	22	0
2012	996	970	26	0
2009	953	929	24	0
1998	664	640	24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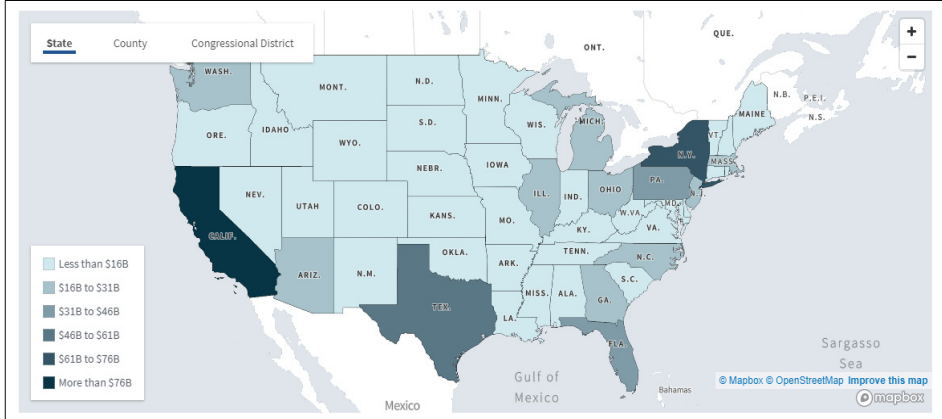
구분	총 보조금 수	범주별 보조금	포괄보조금	세입공유
1995	633	618	15	0
1993	593	578	15	0
1991	557	534	14	0
1989	492	487	14	0
1987	435	422	13	0
1984	405	392	12	1
1981	541	534	6	1
1978	498	492	5	1
1975	448	442	5	1
1968	387	385	2	0
1965	327	327	0	0
1960	132	132	0	0
1950	68	68	0	0

주: 보조금을 총계하는 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에 나타난 보조금 수는 임시적인 통계를 나타내고 있음.

자료: Dilger(2018).

- 지역별 연방보조금 규모를 살펴보면, 각 주정부 인구나 연방보조금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9년 기준 캘리포니아 주의 인구는 3천 9백만 명이며, 연방보조금은 877억 달러로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하였음
  - 그 다음으로 뉴욕 주(711.7억 달러, 1천 900만 명), 텍사스 주(507.8억 달러, 2천 9백만 명), 펜실베이니아 주(332.7억 달러, 1천 3백만 명), 플로리다 주(314.5억 달러, 2천 1백만 명)의 순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수령하였음

〈그림 2-4〉 지역별 연방보조금 규모(FY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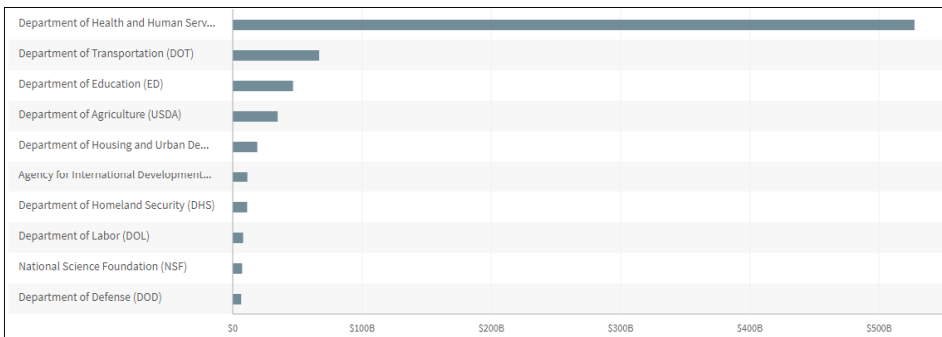


자료: usaspending.gov 홈페이지.

나. 부처별 현황

- 2019년 기준 부처별 연방보조금 규모는 의료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건후생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 보건후생부는 5,27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부(669억 달러)와 교육부(466억 달러)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그림 2-5〉 부처별 연방보조금 지출 규모(FY2019)



자료: usaspending.gov 홈페이지.

- 보건후생부 산하기관 중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4,12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출하여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번째로 많은 보조금을 지출한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보다 6배 이상 큰 규모임

〈표 2-18〉 보건후생부 산하 기관의 보조금 집행 순위(FY2019)

구분	연방보조금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 412,515,524,624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 61,280,210,310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 28,925,609,627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 9,937,180,272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5,613,691,088

자료 : usaspending.gov 홈페이지.

- 교통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출하는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도 보건후생부의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지출하는 보조금의 약 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9〉 교통부 산하 기관의 보조금 집행 순위(FY2019)

구분	연방보조금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 45,509,632,726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 15,355,395,929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 3,420,675,475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 1,136,436,544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 790,725,426

자료: usaspending.gov 홈페이지.



- 농무부 산하 기관 중 Food and Nutrition Service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매우 적은 규모의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음

〈표 2-20〉 농무부 산하 기관의 보조금 집행 순위(FY2019)

구분	연방보조금
Food and Nutrition Service	\$ 32,222,478,112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 799,924,641
Rural Utilities Service	\$ 688,324,448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 398,029,078
Forest Service	\$ 291,770,176

자료: usaspending.gov 홈페이지.

- 주택도시개발부 산하 기관 중 Assistant Secretary for Community Planning and Development(984억 달러)와 Assistant Secretary for Public and Indian Housing(846억 달러)의 보조금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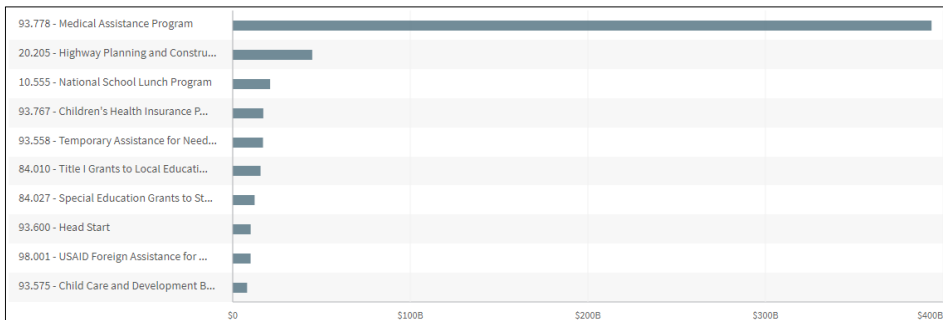
〈표 2-21〉 주택도시개발부 산하 기관의 보조금 집행 순위(FY2019)

구분	연방보조금
Assistant Secretary for Community Planning and Development	\$ 9,843,880,368
Assistant Secretary for Public and Indian Housing	\$ 8,464,549,764
Office of Lead Hazard Control and Healthy Homes	\$ 448,952,185
Assistant secretary for Housing – Federal Housing Commissioner	\$ 187,966,035
Assistant Secretary for Fair Housing and Equal Opportunity	\$ 66,182,446

자료: usaspending.gov 홈페이지.

- 2019년 기준 국내 지원 사업 목록(CFDA)에 수록된 프로그램별 연방보조금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의료지원 프로그램(Medical Assistance Program, 사업번호 93.778)은 의료 보장제도 (Medicaid)를 의미하며, 보조금 규모는 3,935.6억 달러로 보건후생부가 지출하는 총 보조금의 74.6%를 차지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교통부의 고속도로 계획 및 건설 프로그램(Highway Planning and Construction, 사업번호 20.205)이 448.0억 달러(교통부 보조금의 67.0%)로 나타났음
  - 그리고 농무부의 스쿨런치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사업번호 10.555)이 210.8억 달러(농무부 보조금의 45.2%)로 나타났음
  - 보건후생부의 보조금 프로그램 중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사업번호 93.767)과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 정책(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사업번호 93.558)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6〉 프로그램별 연방보조금 지출 규모(FY2019)



자료: [usaspending.gov](https://usaspending.gov) 홈페이지.

## 2. 분야별 현황

### 가. 보건복지

#### 1) 의료지원 프로그램(Medical Assistance Program)

- 보건후생부는 프로그램별 보조금 랭킹 10위 안에 총 3개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의료지원 프로그램<sup>5)</sup>은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에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모두에게 계산식에 의해 차등 지급됨
  - 현금성 지원의 수혜자, 어린이, 임산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노인, 그리고 프로그램이 정하는 다른 수혜 계층을 대상으로 주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의료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정을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역할을 함
- 의료지원 프로그램 보조금은 2018년 4,414억 달러에서 2020년 4,613억 달러로 약 4.5% 증가함
  - 주정부는 회계연도 기준 분기별로 (10월 1일,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4회에 걸쳐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수령함
  - 프로그램 수혜자인 각 개인은 주정부를 통해서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을 받음
  - 주정부의 보조금 신청은 최장 60일 내에 결정됨
  -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수혜자들은 즉각적으로 의료지원을 받으며, 조건이 유지되는 한 제한 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의료지원 프로그램 관련 지출에 대한 연방정부의 부담률(Medicaid's Federal Medical Assistance Percentage<sup>6)</sup>, FMAP)은 각 주의 평균소득과 미국 전체의 평균소득을 이용해서 계산함
  - 평균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형태이며, FMAP의 최대값은 83%이고 최소값은 50%로 법률<sup>7)</sup>로 규정되어 있음

5) <https://beta.sam.gov/fal/69e4a37958b94a409b3a4fc4ef24b141/view>

6) Mitchell, Alison. (2018). Medicaid's Federal Medical Assistance Percentage (FMA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부담률 계산 공식의 마지막에 0.45를 곱하는 이유는 주정부 평균소득이 미국 평균소득과 같은 주정부가 전체 비용의 45%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주정부 평균소득에 제곱을 취한 이유는 평균소득이 낮은 주정부들도 더 높은 FMAP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표 2-22〉 의료지원 프로그램의 주정부 재원부담 비율 공식

$$FMAP_{state} = 1 - ((\text{주정부 평균소득})^2 / (\text{국가 전체 평균소득})^2 * 0.45)$$

〈표 2-23〉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조금 부담률 변화(2014-2018)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율 (18-19)
Alabama	68.12	68.99	69.87	70.16	71.44	71.88	0.44
Alaska	50	50	50	50	50	50	0
Arizona	67.23	68.46	68.92	69.24	69.89	69.81	-0.08
Arkansas	70.1	70.88	70	69.69	70.87	70.51	-0.36
California	50	50	50	50	50	50	0
Colorado	50	51.01	50.72	50.02	50	50	0
Connecticut	50	50	50	50	50	50	0
Delaware	55.31	53.63	54.83	54.2	56.43	57.55	1.12
District of Columbia	70	70	70	70	70	70	0
Florida	58.79	59.72	60.67	61.1	61.79	60.87	-0.92
Georgia	65.93	66.94	67.55	67.89	68.5	67.62	-0.88
Hawaii	51.85	52.23	53.98	54.93	54.78	53.92	-0.86
Idaho	71.64	71.75	71.24	71.51	71.17	71.13	-0.04
Illinois	50	50.76	50.89	51.3	50.74	50.31	-0.43
Indiana	66.92	66.52	66.6	66.74	65.59	65.96	0.37
Iowa	57.93	55.54	54.91	56.74	58.48	59.93	1.45
Kansas	56.91	56.63	55.96	56.21	54.74	57.1	2.36
Kentucky	69.83	69.94	70.32	70.46	71.17	71.67	0.5
Louisiana	62.11	62.05	62.21	62.28	63.69	65	1.31
Maine	61.55	61.88	62.67	64.38	64.34	64.52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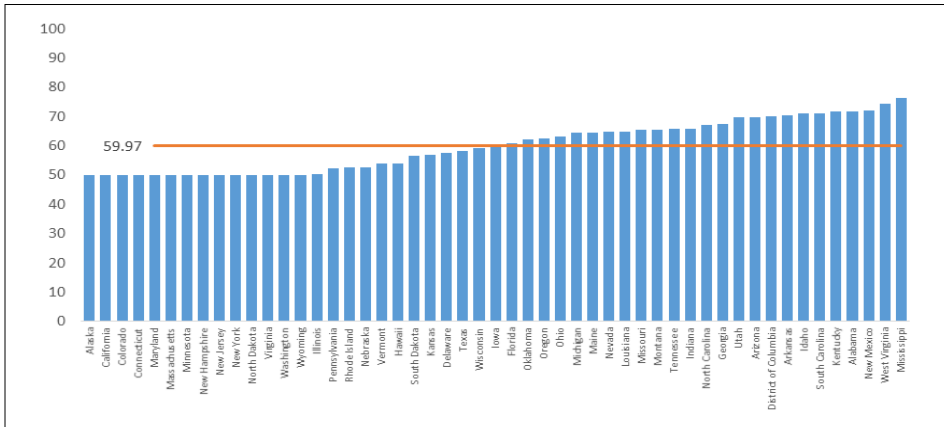
7) Social Security Act §1905.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율 (18-19)
Maryland	50	50	50	50	50	50	0
Massachusetts	50	50	50	50	50	50	0
Michigan	66.32	65.54	65.6	65.15	64.78	64.45	-0.33
Minnesota	50	50	50	50	50	50	0
Mississippi	73.05	73.58	74.17	74.63	75.65	76.39	0.74
Missouri	62.03	63.45	63.28	63.21	64.61	65.4	0.79
Montana	66.33	65.9	65.24	65.56	65.38	65.54	0.16
Nebraska	54.74	53.27	51.16	51.85	52.55	52.58	0.03
Nevada	63.1	64.36	64.93	64.67	65.75	64.87	-0.88
New Hampshire	50	50	50	50	50	50	0
New Jersey	50	50	50	50	50	50	0
New Mexico	69.2	69.65	70.37	71.13	72.16	72.26	0.1
New York	50	50	50	50	50	50	0
North Carolina	65.78	65.88	66.24	66.88	67.61	67.16	-0.45
North Dakota	50	50	50	50	50	50	0
Ohio	63.02	62.64	62.47	62.32	62.78	63.09	0.31
Oklahoma	64.02	62.3	60.99	59.94	58.57	62.38	3.81
Oregon	63.14	64.06	64.38	64.47	63.62	62.56	-1.06
Pennsylvania	53.52	51.82	52.01	51.78	51.82	52.25	0.43
Rhode Island	50.11	50	50.42	51.02	51.45	52.57	1.12
South Carolina	70.57	70.64	71.08	71.3	71.58	71.22	-0.36
South Dakota	53.54	51.64	51.61	54.94	55.34	56.71	1.37
Tennessee	65.29	64.99	65.05	64.96	65.82	65.87	0.05
Texas	58.69	58.05	57.13	56.18	56.88	58.19	1.31
Utah	70.34	70.56	70.24	69.9	70.26	69.71	-0.55
Vermont	55.11	54.01	53.9	54.46	53.47	53.89	0.42
Virginia	50	50	50	50	50	50	0
Washington	50	50.03	50	50	50	50	0
West Virginia	71.09	71.35	71.42	71.8	73.24	74.34	1.1
Wisconsin	59.06	58.27	58.23	58.51	58.77	59.37	0.6
Wyoming	50	50	50	50	50	50	0
전년 대비 FMAP 비율이 증가한 주	14	21	22	25	25	23	
전년 대비 FMAP 비율이 변화없는 주	14	12	12	13	13	14	
전년 대비 FMAP 비율이 감소한 주	22	17	16	12	12	13	

자료: Mitchell(2018).

- 2019년 기준 주정부별 FMAP 부담률의 평균은 59.97이며, 최대값과 최소값은 76.97(미시시피주)와 50.00(알래스카주 외 13개 주정부)임

〈그림 2-7〉 주정부별 FMAP 부담률(FY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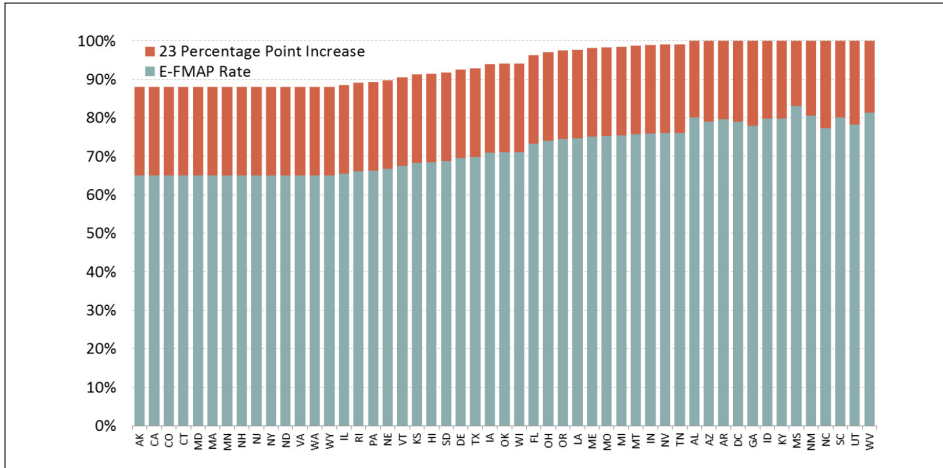


자료: Mitchell(2018).

## 2)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은 CFDA 프로그램들 중 4번째로 많은 보조금을 지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제공되는 보조금
  - 이 보조금의 목표는 저소득층의 보험 미가입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지원을 유지·확장하는 것임
  - 주정부에 따라 저소득 임신부나 합법적 이민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도 함
  - 각 주정부는 상황에 따라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가지 방법(기존 의료지원 프로그램에 추가, 독립적인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음
  -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 프로그램의 보조금 총액은 2018년 173.1억 달러에서 2020년(추정) 183.7억 달러로 약 6.1% 증가하였음

〈그림 2-8〉 주정부별 E-FMAP 비율(FY2018)



자료: Mitchell(2018).

- 50개 주정부 및 워싱턴 D.C.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은 FMAP에 기반한 Enhanced federal medical assistance percentage<sup>8)</sup>(E-FMAP)에 의해서 각 주별로 다르게 적용됨
  - 기본적으로 FMAP 기준 주정부의 부담률을 30%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sup>9)</sup> 하며, E-FMAP는 65%에서 85% 사이에서 결정됨
  - 그러나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 프로그램 재인증법(th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Reauthorization Act)」 등에 의해 매년 다른 금액의 예산과 예외 규정 적용이 이루어져 모두에게 적용될 계산식을 도출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건강보험개혁법(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L. 111-148, as amended)」의 경우 2006년부터 2019년 사

8) Mitchell, Alison(2018). Federal Financing for the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y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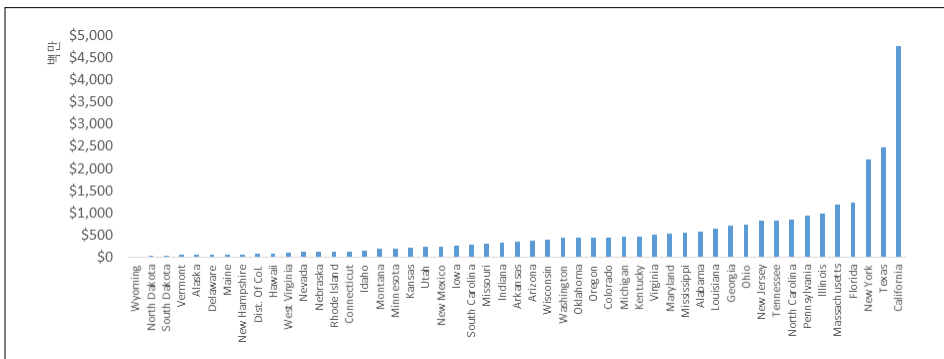
9) FMAP가 60%인 주의 경우, 연방정부는 주의 부담 40%중 30%, 즉 12%, 더한 72%를 E-FMAP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E-FMAP을 연방 보조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일괄적으로 23%p 상향 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2019년까지 1년 연장하기도 했지만, 2020년에는 11.5%포인트로 바꾸는 등 잦은 변화가 일어났음

- 또한 이러한 인상분은 특정 서비스(통역, 행정지원 등)에는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음
- 23%p 상향 조정 규정은 법률로 정해진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보조비율을 88%에서 100%로 높였음
- 위의 그림에서 하늘색은 E-FMAP의 기준율이고, 주황색은 23%p 증가분을 나타냄

○ 2018년 상반기 기준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 프로그램의 보조금 중 최소는 와이오밍주가 받은 \$2,254,713이고, 최대는 캘리포니아주가 받은 \$475,776,383임

〈그림 2-9〉 주정부별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 프로그램 보조금 규모(FY2018 상반기)



자료: Medicaid.gov. (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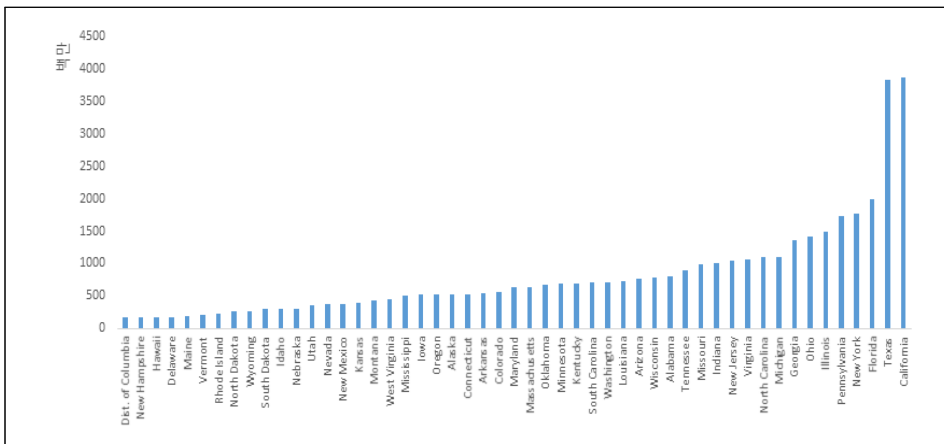


## 나. 교통

- 교통부의 고속도로 계획 및 건설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교통부의 연방고속도로국을 통해 각 주 정부로 제공되는 보조금 프로그램이며, 대표적으로 4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지원함
  - 첫째, 연방후원 고속도로 프로그램(Federal-aid Highway Program)은 주정부로 하여금 국가 고속도로 시스템을 포함한 연방정부지원 도로를 건설, 보전, 개선하는 활동을 지원함
  - 둘째, 연방소유지 고속도로 프로그램(The Federal Lands Highway Program)은 연방소유지관리청(Federal Land Management Agencies)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연방소유 토지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및 교량의 계획, 디자인, 건설, 재건을 위한 교통공학 서비스 및 재원을 지원함
  - 셋째, 미국 지상교통개선법(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에 근거한 운수 개선 관련 프로그램들로 국가 고속도로 운수 프로그램(National Highway Freight Program)과 국가 고속도로 운수 네트워크 프로그램(National Highway Freight Network)을 지원함
  - 넷째, 경쟁력 있는 교량 프로그램(Competitive Bridge Program)과 국가 중요연방토지 및 부족 관련 프로그램(Nationally Significant Federal Lands and Tribal Projects Program)을 지원함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속도로 계획 및 건설 프로그램은 430억 달러 수준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후생부의 보조금 프로그램과는 달리 정해진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보조금 프로그램이기 때문임(임금과 사업비를 포함)
  - 보조금은 고속도로 관련 규정(23 CFR, "Highways") 및 교통 관련 규정(49 CFR, "Transportation")을 바탕으로 집행됨
  - 주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주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받을지 결정함

- 보조금 관리를 맡은 연방고속도로국(FHWA)를 통해서 주 정부의 사업을 인증하고 사업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시작하도록 함
  - Kirk(2019)에 의하면 현재 주정부가 부담하는 1달러에 대해 연방정부는 최소 95센트를 제공하는 95% 규칙을 따르고 있음
  -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주정부의 경우 다른 주정부들이 받을 보조금을 비율에 맞게 감소시킴으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배정받음
  - 2019년 기준 95%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주는 텍사스가 유일함
- 2018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워싱턴 DC가 1억 6천 8백만 달러로 가장 적은 수준이며, 캘리포니아주가 38억 6천 3백만 달러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음
- 보조금의 재원분담 비율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100:95로 비슷하지만, 개별 주정부가 받는 보조금은 큰 차이가 있음
  - Kirk(2019)는 각 주정부가 받는 금액이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인구, 면적, 도로 길이, 자동차 운행량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요소들은 보조금 금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0〉 주정부별 고속도로 계획 및 건설 프로그램 보조금 수령액 비교(2018년)



자료: <https://www.usaspending.gov/#/search/aeae8197a06bf742be17555f98fac772>.

## 다.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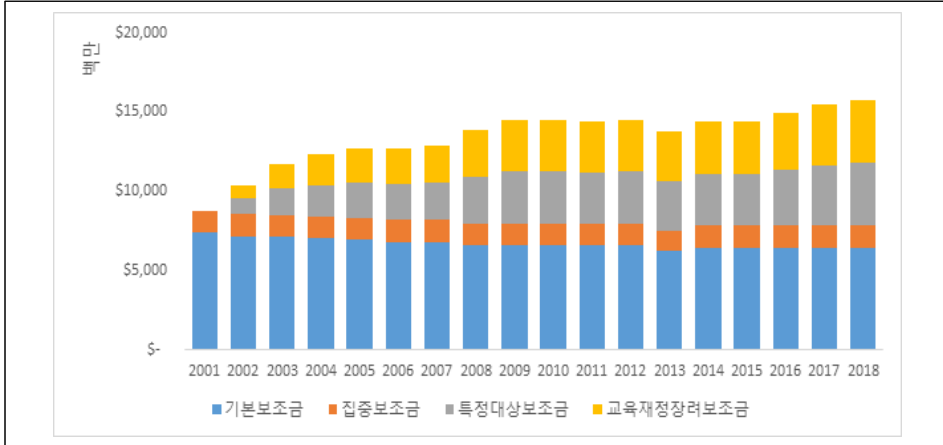
### 1) 초중등학교 교육기회 균등화를 위한 보조금(Title I Grants to Local Educational Agencies)

- 교육부의 전국 초중등학교 교육기회 균등화를 위한 보조금<sup>10)</sup>은 사업별 보조금 중 6위 수준임
  - 지역 교육기관들로 하여금 극빈 지역의 학교들,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은 곳들의 교육과 학습 수준을 개선하여 국가 학업성취기준(State academic standards)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 초중등교육법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 as amended, Title I, Part A, 20 US Code 6301 et seq.)에 근거해서 지급됨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초중등학교 교육기회 균등화를 위한 보조금은 158억 달러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보조금은 최소 100만 달러에서 최대 19억 8천 8백만 달러의 범위에서 지급되었으며, 평균 지급액은 2억 7천 6백만 달러임
- Skinner and Rosenstiel(2018)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육기회 균등화를 위한 보조금은 기본보조금(Basic Grants), 집중보조금(Concentrate Grants), 특정대상보조금(Targeted Grants), 교육재정장려보조금(Education Finance Incentive Grants)의 4가지 계산식에 의해서 지급됨
  - 계산식은 매년 세출예산에 따라 결정됨
  - 2018 회계연도에는 약 41%의 보조금이 기본보조금으로 제공되었고, 9%가 집중보조금, 그리고 나머지 25%가 특정대상보조금과 교육재정장려보조금으로 지급됨
- 현재의 보조금 지급 계산식 시스템은 기본보조금에서 시작해서 점차 확대된 것임

10) <https://beta.sam.gov/fal/8af4e000a37549268cec99d6f53e4230/view>.

- 집중보조금은 1970년대에 보조금 지급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됨
  - 1990년대에는 기존의 보조금 계산식을 폐기하고 특정대상보조금과 교육 재정장려보조금으로 대체하려고 하였음
  - 결국 4가지 계산식을 모두 도입해서 보조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짐
  - 계산식이 고려하는 요소들은 지원대상학생수(Formular child count), 지원대상학생의 지원가능기준(Formular child eligibility threshold for LEAs), 지원대상학생수 계산 가산점(Weighting of formular child count), 지출요소(expenditure factor) 등이 있음
  - 이와 함께 주정부별 최소 보조금(minimum state grant), 지역교육기관의 면책 여부(LEA hold harmless), 보조금 지급단계(Stages in the grant calculation process), 보조금 지급 계기(funding trigger)등에서 4가지 보조금 계산식은 차이를 보임
- 현재가치로 환산된 초중등학교 교육기회 균등화를 위한 보조금 예산 책정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2년부터 특정대상보조금과 교육재정장려보조금이 추가되면서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증가하였음
  - 전체 보조금 대비 기본보조금 비율은 2002년 69.30%에서 2007년 53.03%, 그리고 2018년에는 40.99%로 약 30%p 정도 감소하였음
  - 반면 특정대상보조금의 비율은 2002년 9.84%에서 2018년 25.18%로 약 15%p 증가하였고, 교육재정장려보조금은 2002년 7.67%에서 2018년 25.15%로 약 18%p 증가함
  - 집중보조금은 2002년 13.19%에서 2018년 8.64%로 소폭 감소함

〈그림 2-11〉 초중등학교 교육기회 균등화를 위한 보조금 예산의 추이(2001-2018년)



## 2) 특수교육을 위한 보조금 (Special Education Grants to States)

- 교육부의 특수교육을 위한 보조금은 주정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방정부에서 주 정부에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두에게 지급되나, 계산식에 의해 차등 지급됨
  - 보조금의 기준은 장애인 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의해서 규정됨
  - 회계연도 2018년에는 약 120억 달러가 집행되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그보다 조금 더 늘어난 123억 6천만 달러 규모로 집행됨
  - 각 주정부에 최소 1천 8백 9십만 달러에서 최대 12억 달러의 범위로 배분되었으며, 평균 보조금 수령액은 2억 2천 800만 달러임
- 1975년의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은 처음으로 보조금 계산식을 제시하였으며, 장애를 가진 아동의 숫자와 각 학생에게 주어지는 정부지원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됨

- 1997년에는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과대계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각 주정부로 하여금 최소한 기준년도 보조금 수령액보다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보조금 계산 공식을 수정하였음
- 새로운 보조금 계산 공식은 기준년도(1999년) 보조금 수령액에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과 3세부터 21세 인구 비율을 고려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작은 주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조금을 규정하였음
- 2014년에는 「장애인 교육법」을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계산 공식을 수정하였음
- 1997년에 수정된 보조금 계산 공식과 기본적으로는 같은 계산 공식을 사용하나 최소 수령액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였음
- 주정부별 보조금 최소 수령액은 3가지 계산 공식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주정부별 최대 보조금 수령액은 전년도 보조금 수령액과 증가율을 기준으로 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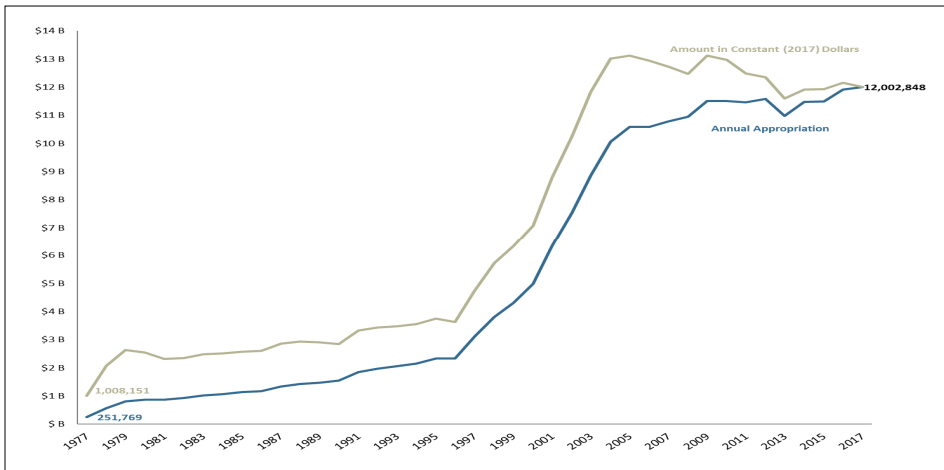
〈표 2-24〉 특수교육을 위한 보조금 계산 공식

구분	보조금 공식
1975년	주정부 보조금 = 장애를 가진 학생 수 * 국가가 k-12교육에 사용하는 각 학생별 지출 평균액의 40%
1997년	주정부 보조금 = 기준년도 보조금 수령액(1999년) + 기준년도 보조금을 배분하고 남은 예산 * 0.85 * 각 주의 학령인구(3-21세) 비율 + 기준년도 보조금을 배분하고 남은 예산 * 0.15 * 각 주의 저소득층 학생 인구 비율
2014년	최소 공식 1 = 기준년도 보조금 수령액(1999년) + (주의 전년도 수령액 - 기준년도 보조금 수령액) * 0.01 * 1/3
	최소 공식 2 = 전년도 보조금 수령액 + 전년도 보조금 수령액 * (전체 IDEA 펀딩 증가율 - 1.5%)
	최소 공식 3 = 전년도 보조금 수령액 + 전년도 보조금 수령액 * 0.9 * 특수교육보조금 수령액 증가율
	최대 공식 = 전년도 보조금 수령액 + 전년도 보조금 수령액 * (전년대비 보조금 수령액 증가율 + 의회가 결정한 IDEA 보조금 증가율)

자료: Dragoo(2019).

- 특수교육을 위한 보조금은 계산 공식이 수정된 199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그림 2-12〉 특수교육을 위한 보조금 지급액 추이(1977-2017)



자료 : Dragoo (2019,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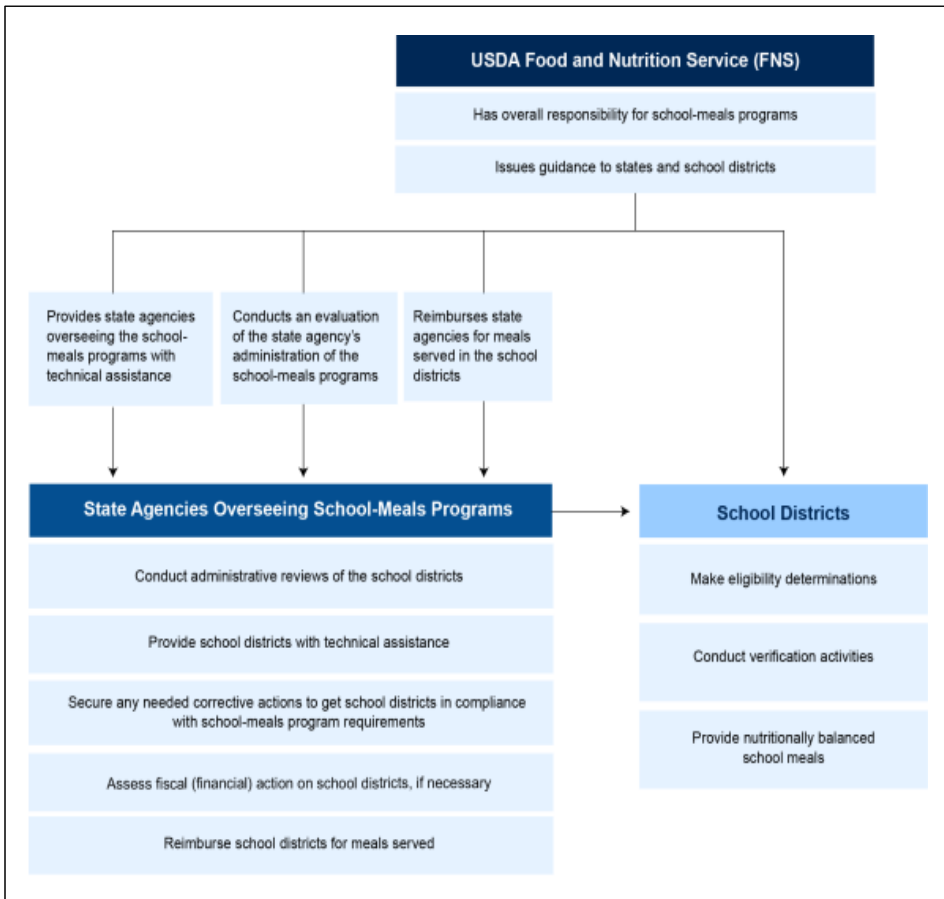
## 라. 농업

- 농무부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은 210.8억 달러(농무부 보조금의 45.2%)를 보조금으로 지출함
  - 연방정부에서 주 정부에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Richard B. Russell National School Lunch Act에 의해서 제공함
  -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식사 프로그램으로 공립학교와 비영리 사립학교, 그리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저비용의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두에게 지급되나 계산식에 의해서 차등 지급되며, 현금 보조금과 음식 기부를 동시에 제공함

- 교육구(school district)와 각 학교들은 현금 보조금과 함께 농무부에서 제공하는 식품들을 받음

○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제공 과정은 다음과 같음

〈그림 2-13〉 연방, 주, 지방정부 간 학교 급식 프로그램 제공 과정



자료: Billings and Aussenberg(2019).



-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2018년 131.3억 달러에서 2020년 127.2억 달러로 다소 감소하였음
  - 가구소득이 빈곤선의 130% 미만이면 무료 점심, 130%에서 185%는 할인된 점심을 제공받음
  - 매해 7월 1일마다 기준선이 정해짐
  - 2017년 기준 약 2천만 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2백만 명의 학생들이 저비용 급식을 제공받음
  - 그리고 810만 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이용하였으며, 2천 1백 7십만 명의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않음
- 보조금의 규모는 연방정부가 정하는 각 식사유형별 비용과 학생수를 곱하여 계산됨
  - 2018-19학년도에는 무료 점심은 \$3.37, 저비용 점심은 \$2.97, 그리고 일반 점심에는 \$0.37의 보조금을 제공함
  - 이 외에도 학생의 60% 이상이 무료 또는 저비용 점심 수혜대상자인 경우에 대한 추가지원 및 성과를 바탕으로 한 보조금 등이 추가 제공됨

〈표 2-25〉 학교 급식 프로그램 보조금 집행내역(2017회계연도 기준)

구분	보조금
전체 학교 급식 프로그램 보조금 집행내역	\$ 136.4억
무료 급식 비용 환급	\$ 96.2억
저비용 급식 비용 환급	\$ 7.8억
일반 급식 비용 환급	\$ 14.8억
무료 및 저비용 급식 대상이 60%를 넘는 학교에 대한 추가 보조금	\$ 7천 4백만
성과 기준 비용 환급	\$ 2억 9천 3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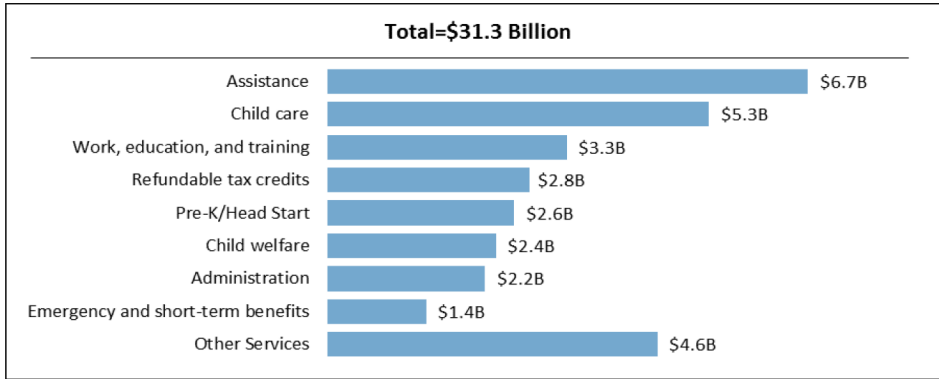
자료: Billings and Aussenberg(2019).

### 3. 포괄보조금 사례 :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

-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은 기본적으로 주정부로 하여금 부양 자녀가 있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임
  - 1935년부터 실시된 현금지원 프로그램인 부양아동가족보조제도가(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수급자 규모 증가와 현금 급여의 부작용 대한 우려를 불러오면서, 이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조금이 등장하였음
  - 1996년 「복지개혁법(the 1996 welfare reform law, P.L. 104-193)」에 근거하여 실시되었음
  -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은 수급자격이 있는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현금을 지원한 부양아동가족보조제도(AFDC)와 달리 주정부로 하여금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하고 자동 수급권을 보장하지 않았음
-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401조의 (a)항은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첫째, 빈곤가정에 있는 부양 아동들이 자신의 가정이나 친척의 가정에서 보호·양육 받을 수 있도록 함
  - 둘째, 직업준비, 근로, 결혼을 장려함으로써 궁핍한 부모들이 정부 복지혜택에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함
  - 셋째, 혼외 출산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함
  - 넷째, 양부모 가정의 구성과 유지를 장려함
- 그 결과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으로의 전환을 통해 보조금제도에는 새로운 특징이 나타남
  - 첫째, 더 엄격해진 노동요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복지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함
  - 둘째, 80% 이상의 현금보조가 50%로 하향 조정됨

- 셋째, 복지사례수가 감소되며, 적법하게 이민한 자에 대한 지원이 감소함
  - 넷째, 가족형성이라는 정책목적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함
-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은 기본 포괄보조금, 경제위기와 연관된 임시 기금, 경쟁을 통해 지급되는 결혼장려 및 책임감 있는 부성 보조금이라는 3가지 유형의 연방보조금으로 구성됨
- 2018년 기준 기본 포괄보조금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약 165억 달러 규모임
- 주정부가 노력의 유지의무(a maintenance-of-effort requirement)를 바탕으로 출원하는 기금을 더해서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을 추진함
  - 각 주정부가 받는 보조금 금액은 1996년 이전에 받은 부양가족보조제도(AFDC)에 근거하여 지급됨
  - 제도가 처음 시행된 때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매칭 비율이 1대 1이었으나 주정부의 부담률이 점차 감소하였음
  - 2018년 기준 주정부 부담액은 약 103억 달러로 연방정부 부담액의 약 63.8% 수준이며, 2017 회계연도부터는 연구 활동에 전체 기금의 0.33%를 배정하도록 하였음(Falk and Landers, 2019)
- 2018년 기준 313억 달러 중 빈곤 가정을 위한 지원에 67억 달러(21%)를 사용하였으며, 양육보조(child care funding)에 53억 달러(17%)를 사용하였음
- 이는 양육보조 사업에 사용되거나 양육보조와 개발을 위한 포괄보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기금으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사용됨
  -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의 수혜를 받는 가정을 위한 취업 지원(교육 및 훈련)은 33억 달러(11%)로 3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그림 2-14〉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 지출 내역(FY2018)



자료: Falk and Landers (2019).

- 2017년 10월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은 37억 2,149만 달러를 수령함
  - 그 다음으로 뉴욕주가 24억 3,486만 달러를 수령한 반면, 가장 적은 금액을 수령한 주정부는 와이오밍주로 2,171만 달러를 수령함

〈표 2-26〉 주정부별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 보조금 수령액(2017년 10월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합계	부족정부 대상 보조금	주정부 대상 보조금
Alabama	93.007	0.000	93.007
Alaska	63.399	19.002	44.397
Arizona	221.686	22.279	199.407
Arkansas	56.546	0.000	56.546
California	3,721.496	82.801	3,638.695
Colorado	135.608	0.000	135.608
Connecticut	265.908	0.000	265.908
Delaware	32.184	0.000	32.184
District Of Columbia	92.304	0.000	92.304
Florida	560.484	0.000	560.484
Georgia	329.650	0.000	329.650
Guam	3.454	0.000	3.454

구분	합계	부족정부 대상 보조금	주정부 대상 보조금
Hawaii	98.578	0.000	98.578
Idaho	31.833	1.525	30.307
Illinois	583.126	0.000	583.126
Indiana	206.117	0.000	206.117
Iowa	131.091	0.533	130.558
Kansas	101.595	0.117	101.478
Kentucky	180.689	0.000	180.689
Louisiana	163.431	0.000	163.431
Maine	77.863	0.000	77.863
Maryland	228.342	0.000	228.342
Massachusetts	457.855	0.000	457.855
Michigan	772.794	0.000	772.794
Minnesota	267.101	6.503	260.597
Mississippi	86.481	0.000	86.481
Missouri	216.335	0.000	216.335
Montana	45.384	7.495	37.889
Nebraska	57.837	1.195	56.642
Nevada	43.832	0.069	43.762
New Hampshire	38.394	0.000	38.394
New Jersey	402.702	0.000	402.702
New Mexico	125.687	15.767	109.920
New York	2,434.869	0.000	2,434.869
North Carolina	301.242	0.805	300.438
North Dakota	26.313	0.000	26.313
Ohio	725.566	0.000	725.566
Oklahoma	147.525	2.732	144.793
Oregon	167.370	1.126	166.244
Pennsylvania	717.125	0.000	717.125
Puerto Rico	71.326	0.000	71.326
Rhode Island	94.708	0.000	94.708
South Carolina	99.638	0.000	99.638
South Dakota	21.821	0.614	21.207
Tennessee	190.892	0.000	190.892
Texas	484.652	0.000	484.652
Utah	76.576	1.220	75.356

구분	합계	부족정부 대상 보조금	주정부 대상 보조금
Vermont	47.197	0.000	47.197
Virgin Islands	2.837	0.000	2.837
Virginia	157.763	0.000	157.763
Washington	402.997	23.932	379.065
West Virginia	109.813	0.000	109.813
Wisconsin	317.138	4.292	312.846
Wyoming	21.710	3.281	18.429

자료: Falk(2017).

- 주정부가 노력의 유지의무(a maintenance-of-effort (MOE) requirement)를 근거로 해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전체 보조금의 75% 정도임
  -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의 근로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정부의 경우는 규제위반에 대한 벌칙의 개념으로 80%를 부담하게 하며, 부족정부는 노력의 유지의무를 갖고 있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조금 대비 MOE 펀드는 61.1%에 그치고 있음
  - 가장 많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캘리포니아 주는 수령한 보조금의 57.7%, 뉴욕 주는 58.6%만을 부담하고 있음
  - MOE 펀드의 규모와는 별개로 보조금 대비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주정부는 미시시피주로 79.9%를 부담하고 있음

〈표 2-27〉 주정부별 MOE 펀드 비율(2017년 10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보조금	평균 지출액의 75%	평균 지출액의 80%	보조금 대비 주정부 MOE 비율 (75% 기준)
Alabama	\$93.007	\$39.214	\$41.828	70.3%
Alaska	44.397	34.274	36.559	56.4
Arizona	199.407	85.478	91.176	70.0
Arkansas	56.546	20.839	22.228	73.1
California	3,638.695	2,666.220	2,843.968	57.7
Colorado	135.608	82.871	88.396	62.1

구분	보조금	평균 지출액의 75%	평균 지출액의 80%	보조금 대비 주정부 MOE 비율 (75% 기준)
Connecticut	265.908	183.421	195.649	59.2
Delaware	32.184	21.771	23.222	59.6
District Of Columbia	92.304	70.449	75.146	56.7
Florida	560.484	368.363	392.921	60.3
Georgia	329.650	173.369	184.926	65.5
Guam	3.454	0.888	0.947	79.5
Hawaii	98.578	71.150	75.893	58.1
Idaho	30.307	13.023	13.891	69.9
Illinois	583.126	430.088	458.761	57.6
Indiana	206.117	113.526	121.094	64.5
Iowa	130.558	61.711	65.825	67.9
Kansas	101.478	61.678	65.790	62.2
Kentucky	180.689	67.418	71.913	72.8
Louisiana	163.431	55.415	59.109	74.7
Maine	77.863	37.524	40.026	67.5
Maryland	228.342	176.965	188.763	56.3
Massachusetts	457.855	358.948	382.877	56.1
Michigan	772.794	468.518	499.753	62.3
Minnesota	260.597	175.369	187.060	59.8
Mississippi	86.481	21.724	23.173	79.9
Missouri	216.335	120.121	128.129	64.3
Montana	37.889	13.121	13.995	74.3
Nebraska	56.642	28.038	29.907	66.9
Nevada	43.762	25.449	27.145	63.2
New Hampshire	38.394	32.115	34.256	54.5
New Jersey	402.702	300.160	320.171	57.3
New Mexico	109.920	32.661	34.839	77.1
New York	2,434.869	1,718.578	1,833.150	58.6
North Carolina	300.438	153.764	164.015	66.1
North Dakota	26.313	9.069	9.674	74.4
Ohio	725.566	390.831	416.887	65.0
Oklahoma	144.793	60.116	64.124	70.7
Oregon	166.244	91.634	97.743	64.5
Pennsylvania	717.125	407.126	434.267	63.8
Puerto Rico	71.326	21.185	22.598	77.1

구분	보조금	평균 지출액의 75%	평균 지출액의 80%	보조금 대비 주정부 MOE 비율 (75% 기준)
Rhode Island	94.708	60.367	64.392	61.1
South Carolina	99.638	35.927	38.322	73.5
South Dakota	21.207	8.527	9.096	71.3
Tennessee	190.892	82.810	88.331	69.7
Texas	484.652	235.726	251.441	67.3
Utah	75.356	24.888	26.547	75.2
Vermont	47.197	25.550	27.253	64.9
Virgin Islands	2.837	0.589	0.628	82.8
Virginia	157.763	128.173	136.718	55.2
Washington	379.065	255.904	272.964	59.7
West Virginia	109.813	32.294	34.446	77.3
Wisconsin	312.846	166.938	178.067	65.2
Wyoming	18.429	9.054	9.657	67.1
Total	16,316.584	10,330.929	11,019.658	61.2

자료: Falk(2017).

#### 4. 지방정부 사례

##### 가. 플로리다주 피넬러스 카운티(Pinellas County, Florida)

- 플로리다주 피넬러스 카운티(Pinellas County, Florida)가 2018년 연방 정부와 주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총 규모는 \$61,335,774임
  - 이 중 58.08%인 \$35,628,86는 연방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며, 41.92%인 \$25,706,905는 주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임
- 연방정부의 경우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총 \$16,213,465를 교부하여 전체 연방정부 보조금의 45.51%를 차지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8,225,919를 교부하였음



- 반면에 중소기업부(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는 \$153,672를 교부하여 보조금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연방정부 보조금에서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의 보조사업은 주택도시개발부의 지역개발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s)으로 \$7,633,492가 투입되었음
-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재난기금(Disaster grants- public assistance)과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공항개선프로그램(Airport improvement program)도 각각 \$3,167,704와 \$3,114,652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주정부의 경우에는 \$9,500,784의 보조금이 투입된 주택금융공사(FL Housing finance corporation)의 State Housing Initiatives Partnership Program이 가장 큰 보조사업으로 나타났음
- 환경보호부의 해변관리보조프로그램(Beach management funding assistance program)에도 \$3,314,741의 보조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28〉 플로리다주 피널러스 카운티의 보조금 내역(2018)

구분	주관 부처	수여부서/사업 및 클러스터 명	보조금			
			연방 (직접교부 & 이전교부)	주	이전교부	총 교부액
연방 정부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DBG-Entitlement Grants Cluster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s)	\$7,633,492	-	\$846,471	\$7,633,492
		Emergency Solutions Grant Program	\$207,369	-	\$187,322	\$207,369
		Home Investment Partnerships Program	\$7,484,144	-	\$313,872	\$7,484,144
		Fair Housing Assistance Program State and Local	\$356,300	-	-	\$356,300
		ARRA - Neighborhood Stabilization Program	\$532,160	-	-	\$532,160
	US Elections Assistance Commission	Help America Vote Act Requirement Payments	\$171,047	-	-	\$171,047
		2018 HAVA Election Security Grants	\$598,982	-	-	\$598,982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omeland Security Biowatch Program	\$143,658	-	-	\$143,658
		Emergency Management Performance Grants	\$256,461	-	-	\$256,461
		Disaster Grants - Public Assistance	\$3,167,704	-	-	\$3,167,704
		Homeland Security Grant Program	\$13,207	-	-	\$13,207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ir Pollution Control Program Support	\$218,599	-	-	\$218,599
		Surveys, Studies, Research, Investigations, Demonstrations, and Special Purpose Activities Relating to the Clean Air Act	\$135,929	-	-	\$135,929

구분	주관 부처	수여부서/사업 및 클러스터 명	보조금			
			연방 (직접교부 & 이전교부)	주	이전교부	총 교부액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 Projects of Regional and National Significance	\$1,270,504	-	\$923,817	\$1,270,504
		Health Center Program	\$49,654	-	-	\$49,654
		Grants for New and Expanded Services under the Health Care Program	\$1,372,168	-	-	\$1,372,168
		Cooperative Agreement to Support Navigators in Federally-facilitated and State Partnership Marketplaces	\$507,574	-	-	\$507,574
		Child Support Enforcement	\$751,613	-	-	\$751,613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2,226,993	-	-	\$2,226,993
		Social Services Block Grant	\$2,047,413	-	-	\$2,047,413
U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High Intensity Drug Trafficking Areas Program	\$163,095	-	-	\$163,095
US Department of Justice		DNA Backlog Reduction Program	\$228,001	-	-	\$228,001
		Drug Court Discretionary Grant Program	\$397,951	-	-	\$397,951
		Edward Byrne Memorial Competitive Grant Program	\$176,553	-	-	\$176,553
		Juvenile Justice Education Collaboration Assistance	\$131,108	-	-	\$131,108
		Equitable Sharing Program	\$117,324	-	-	\$117,324
		Paul Coverdell Forensic Sciences Improvement Grant Program	\$4,803	-	-	\$4,803

구분	주관 부처	수여부서/사업 및 클러스터 명	보조금			
			연방 (직접교부 & 이전교부)	주	이전교부	총 교부액
		Edward Byrne Memorial Justice Assistance Grant Program	\$288,848	-	-	\$288,848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irport Improvement Program	\$3,114,652	-	-	\$3,114,652
		Highway Planning and Construction Cluster	\$1,226,335	-	-	\$1,226,335
		Highway Safety Cluster	\$130,653	-	-	\$130,653
		State and Community Highway Safety	\$100,000	-	-	\$100,000
		Paul S. Sarbanes Transit in the Parks	\$20,692	-	-	\$20,692
	US Department of Treasury	Federal Confiscated Property	\$4,717	-	-	\$4,717
		Resources and Ecosystems Sustainability, Tourist Opportunities, and Revived Economies of the Gulf Coast States	\$225,494	-	-	\$225,494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	\$153,672	-	-	\$153,672
주 정부	FL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Beach Management Funding Assistance Program	-	\$3,314,741	-	\$3,314,741
		Delegated Title V Air Pollution Control Activities	-	\$46,607	-	\$46,607
		Statewide Surface Water Restoration and Wastewater Projects	-	\$2,085,843	-	\$2,085,843
	FL Department of State and Secretary of State	Public Library Construction Consortium	-	\$831,481	-	\$831,481
		Historic Preservation Grants	-	\$50,000	-	\$50,000

구분	주관 부처	수여부서/사업 및 클러스터 명	보조금			
			연방 (직접교부 & 이전교부)	주	이전교부	총 교부액
	FL Department of Health	County Grant Awards	-	\$136,936	-	\$136,936
		Health Centers	-	\$46,322	-	\$46,322
	FL Executive Office of the Governor	Emergency Management Programs	-	\$132,989	-	\$132,989
		Emergency Management Projects	-	\$15,666	-	\$15,666
	FL Housing Finance Corporation	State Housing Initiatives Partnership Program	-	\$9,500,784	-	\$9,500,784
	FL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viation Grant Programs	-	\$1,263,885	-	\$1,263,885
		NPDES/TMDL Stormwater Retrofit Projects	-	\$8,181	-	\$8,181
		Transportation Regional Incentive Program	-	\$1,957,919	-	\$1,957,919
		County Incentive Grant Program	-	\$2,054,281	-	\$2,054,281
		Florida Shared-use Nonmotorized (Sun) Trail Network Program	-	\$859,836	-	\$859,836
	FL Department of Legal Affairs and Attorney General	Crime Stoppers	-	\$199,153	-	\$199,153
	FL Department of Law Enforcement	Statewide Criminal Analysis Laboratory System	-	\$260,145	-	\$260,145
	FL Department of Economic Opportunity	Division of Community Development	-	\$2,000,000	-	\$2,000,000

구분	주관 부처	수여부서/사업 및 클러스터 명	보조금			
			연방 (직접교부 & 이전교부)	주	이전교부	총 교부액
	FL State Courts System	Post-Adjudicatory Drug Court Program	-	\$573,640	-	\$573,640
	FL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Public Safety,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Local Matching Grant	-	\$367,227	-	\$367,227
	FL Division of Emergency Management	Hurricane Relief - Tropical Storm Debbie	-	\$1,269	-	\$1,269
총 합계	Total Assistance - Federal Programs		\$35,628,869	-	\$2,556,794	\$35,628,869
	Total Assistance - State Programs		-	\$25,706,905	-	\$25,706,905
	Total Assistance		\$35,628,869	\$25,706,905	\$25,706,905	\$61,335,774

주: 이전교부(pass-through)는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지방정부에 이전한 금액을 나타냄.  
 자료: Pinellas County, Florida. (2019).

#### 나.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 시(City of Fayetteville, North Carolina)

-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 시(City of Fayetteville, North Carolina)가 2018년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총 \$25,448,147임
  - 이 중 \$16,442,562 (64.61%)는 연방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고 \$9,005,585 (35.39%)는 주정부로부터의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연방정부의 경우에는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가장 많은 보조금(\$6,799,921)을 교부하였으며, 그 다음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4,247,395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연방정부 보조금 중에서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보조사업은 국토안보부의 재난기금(Disaster Grants)으로 \$4,247,395의 보조금을 페이엣빌 시에 교부하였음
  - 그 다음으로는 교통부 연방항공관리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공항개선사업 프로그램(Airport improvement program)으로 \$3,588,398의 보조금이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음
- 주정부의 경우에도 교통부(NC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가장 많은 \$6,638,181을 교부하였으며, 예산관리부(NC Office of State budget and management)로부터의 보조금이 \$1,855,805로 두 번째로 많은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정부의 경우 각각 \$6,638,181와 \$6,534,771의 보조금이 교부된 교통부 항공과(Division of aviation)의 공항활주로 개선사업보조(State aid for airport projects-Rehab runway 10/28)과 대중교통과(Public transportation division)의 유지관리보조(Maintenance assistance)가 주요 사업으로 나타났음

〈표 2-29〉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 시의 보조금 내역(2018)

구분	주관 부처	사업 및 클러스터 명	보조금			
			연방정부	주정부	이전교부	총 교부액
연방 정부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Economic Adjustment	\$25,535	-	-	\$25,535
	US 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luster	\$1,256,979	-	\$304,598	\$1,256,979
		CDBG Disaster Recovery Grants Cluster	\$10,717	-	-	\$10,717
		Home Investment Partnerships Program	\$1,113,796	-	-	\$1,113,796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624,454	-	-	\$624,454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562,755	-	-	\$562,755
		Edward Byrne Memorial Justice Assistance Grant Program	\$96,507	-	-	\$96,507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Forfeiture Fund Program	\$125,016	-	-	\$125,016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Airport improvement program)	\$3,588,398	-	-	\$3,588,398
		Federal Transportation Administration	\$3,187,110	-	-	\$3,187,110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24,413	-	-	\$24,413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ging Cluster	\$24,765	-	-	\$24,765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isaster Grants	\$5,663,191	-	-	\$5,663,191
		Hazard Mitigation Grant Program	\$819	-	-	\$819
		Homeland Security Grant Program	\$30,417	-	-	\$30,417



구분	주관 부처	사업 및 클러스터 명	보조금			
			연방정부	주정부	이전교부	총 교부액
		Law Enforcement Officer Reimbursement Agreement Programs	\$107,690	-	-	\$107,690
주정부	NC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Public Transportation Division(Maintenance assistance)	-	\$6,534,771	-	\$6,534,771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	\$6,669	-	\$6,669
		Division of Aviation(State aid for airport projects-Rehab Runway 10/28)	-	\$6,638,181	-	\$ 6,638,181
	NC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Division of Parks and Recreation	-	\$250,000	-	\$250,000
	NC Department of Public Safety	Hazmat	-	\$97,974	-	\$ 97,974
		Cumberland CountyJuvenile Restitution FY 2018	-	\$44,763	-	\$44,763
	NC Housing Finance Agency	Essential Single-Family Rehabilitation Loan Pool-Disaster Recovery	-	\$1,200	-	\$1,200
	NC Office of State Budget and Management	Cape Fear River Trail Connector, Phase I	-	\$71,182	-	\$71,182
		Golden Leaf Foundation	-	\$1,784,623	-	\$1,784,623
NC Department of Commerce	Rural Economic Development Division	-	\$117,662	-	\$117,662	
총 합계	Total Assistance - Federal Programs		\$16,442,562	-	\$304,598	\$16,442,562
	Total Assistance - State Programs		-	\$9,005,585	-	\$9,005,585
	Total Assistance		\$15,026,560	\$9,005,585	\$304,598	\$25,448,147

자료: City of Fayetteville. (2018).



# 제3장

## 영국의 국고보조 사업 현황

---

제1절 정부 간 관계

제2절 보조금 제도 및 유형

제3절 보조금 자원분담 현황



## 제3장

## 영국의 국고보조사업 현황

KRILA

## 제1절 정부 간 관계

## 1. 기본구조

- 영국은 1단계 상위자치단체 시스템(Single-tier system)과 2단계 하위자치단체 시스템(Two-tier system)으로 구성됨
  - 런던 등 대도시 일부는 의회를 포함한 해당 지역의 모든 서비스를 1단계 상위 자치단체(Single-tier system) 구조로 운영함
  - 2단계 하위자치단체는 카운티(County)와 디스트릭트(Distric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Council)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가지고 있음
- 종합적으로 영국의 지방정부는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단일 자치주는 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해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가 광역기능까지 흡수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지방정부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으며, 주로 대도시 지역을 포함하고 있음
  - 대도시 디스트릭트는 영국 내 6개의 대도시 지역을 포함하며 이 지역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으나, 소방, 민방위, 경찰, 쓰레기 처리, 교통과 같은 폭넓은 서비스는 다른 대도시 디스트릭트와 협업하여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함(Joint Authorities)
  - 런던 자치구 역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지방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단, Greater London Authority는 런던 정부 전체의 경찰, 소방, 전략 기획 및 교통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카운티는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 사회복지, 쓰레기 처리, 도서관 운영 서비스 등에 대한 책임성을 보유함
  - 디스트릭트는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역할을 수행하며, 쓰레기 수거, 주

택 및 지역계획, 환경보전, 건축 규제 등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함

- 한편 영국에는 약 9,000여 개의 마을 또는 교구 자치 조직인 패리쉬 (Parish)가 있으며, 이들은 가장 기초적 단체로서 디스트릭트 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영되며 대개 100여 명 정도의 마을 단위에 설치됨
  - 패리쉬는 일반적으로 법적 기능은 없지만, 공원 및 커뮤니티 센터 운영, 공동 묘지 운영, 공공 운동장, 공공 보도 등 지역주민 관련 자치행정 서비스와 같은 소규모 지역기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 또한 이들은 카운티 혹은 디스트릭트의 동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표 3-1〉 영국 지방정부 유형

1단계 상위 자치단체 (Single-tier system)	의회 수	2 단계 하위자치단체 (Two-tier system)	의회 수
단일 자치주 (Unitary Authorities)	55	카운티 (County)	26
대도시 디스트릭트 (Metropolitan Districts)	36	디스트릭트 (District)	192
런던 자치구 (London Boroughs)	32		

출처: Gov.uk

- 영국 지방정부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그 권한과 기능이 보장됨
  - 영국 지방정부는 선거에 의해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지역의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
  - 특정 지방정부에게만 특수한 권한 부여가 필요할 때, 국회로부터 지역특별법 (Local Act)을 발의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방정부의 활동이 제정법상 근거가 없을 경우, 지역주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월권행위 금지의 원칙(Ultra Vires)으로 인해 무효로 처리할 권한이 있음

## 2. 지방재정 규모

-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CLG)는 영국의 지방정부의 재정을 운영 및 관리하는 중앙정부 부서로서 매년 잉글랜드(England)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재정통계(Local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를 발간함
  - 지방정부 재정통계 보고서에는 지방재정의 비중, 지방정부의 구조와 역할, 지방자치단체 권역별 지도, 지방정부 세출과 세입구조, 지방재정조정제도 등과 같은 지방정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됨(김의섭, 2013)
  - 지방재정에 관한 데이터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재정에 자원을 할당하고 지방재정 정책의 개발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용됨

### 가. 지방세입

- 각 지방정부는 세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다양한 유형의 세입원을 통하여 스스로 조달함
  - 영국 지방정부의 세입구조는 크게 지방정부가 스스로 조달하는 자체수입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중앙정부 보조금으로 구분됨

〈표 3-2〉 영국 지방세입의 유형별 구분

(단위 : 백만 파운드, 2017-2018년 기준)

자체수입(Locally-funded income)	
지방세 (Council tax)	27,641
사업 자금 보조 잉여 자금 (Retained income from rate retention scheme)	15,162
외부이자 수입 (External interest receipts)	1,169
자본매각 수입 (Capital receipts)	2,767
판매료·수수료·부담금 (Sales, fees and charges)	12,732
주택 임대 수입 (Council rents)	7,010

(단위 : 백만 파운드, 2017-2018년 기준)

보조금 (Grant income)	
세입 지원 보조금 (Revenue support grant)	3,978
경찰 보조금 (Police grant)	7,114
특정·특별 보조금 (Specific and special grant)	39,330
지방 서비스 보조금 (Local services support grant)	35
의존 자원 외 교부금 (Grants outside AEF)	20,478
주택계정 보조금 (Housing subsidy)	-776
자본계정 보조금 (Grants towards capital expenditure)	8,109

자료: DCLG(2019),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England, No.29.

-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지방세, 사업자금 보조로부터 창출되는 잉여금, 차용 및 투자 수입, 외부 이자 수입, 주택 임대료로 구성됨
  - 지방세는 대부분 지방정부의 주요 소득원으로서, 각 지방정부가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과 다른 출처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정부 보조금)의 차이를 충당할 수 있는 주요한 세입원임(지방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서 부분적으로 재산에 할당된 평가 범위와 재산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 수에 따라 부과됨)
  - 판매료·수수료·부담금과 같은 세외수입은 지방정부가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역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이외의 수입을 의미하는데, 도서관 벌금부터 서류 제출 비용까지 각 지방정부의 성격과 서비스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다름(영국 지방정부는 100개가 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판매료 및 수수료를 받고 있음)
  - 외부이자 수입, 자본매각 수입, 주택임대 수입 등은 기타 세입에 포함됨



〈표 3-3〉 판매료·수수료·부담금 서비스 내역

(단위: 백만 파운드, 2017-2018년 기준)

구분	금액
교육	1,683
고속도로 및 교통서비스	2,235
사회서비스(어린이)	171
사회서비스(성인)	2,852
공공 보건	39
주택	834
문화·사회·지역계획	3,053
경찰	489
소방	45
중앙서비스	1,252
기타서비스	79

자료: DCLG(2019),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England, No.29.

## 나. 지방세출

- 영국 지방정부는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함
  - 지방정부는 지역에서 확보된 소득과 재원으로 지방공무원의 급여, 조달, 운송, 연료 및 건물의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지방정부에 지불된 부과금(런던의 경우, 폐기물 처리 비용을 근처 타 지방정부에 지불함) 등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 세출구조에 반영되어 있음
- 지방정부의 세출은 경상지출(current expenditure), 세입지출(revenue expenditure),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로 구분됨
- 경상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지출을 의미함

- 주로 인건비, 사무용품비, 재화 및 용역 구입 지출 비용 등과 같은 소모성 경비·교육비·사회서비스에 관련된 지출로 구성됨
- 경상지출의 재원은 지역에서 확보된 수수료·부담금 등의 세외수입, 기타 지방정부의 소득에 의해 충당됨
- 또한 순경상지출은 국민계정 상 지방정부의 재화와 용역지출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지방정부의 소득에 의해 재원이 확보됨
- 영국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주로 순경상지출 항목에서 측정됨(김의섭, 2013)

〈표 3-4〉 영국 지방정부 서비스별 경상지출

(단위: 백만 파운드, 2017-2018년 기준)

구분	금액
교육	33,862
고속도로 및 교통서비스	4,251
사회서비스(어린이)	8,570
사회서비스(성인)	16,119
공공 보건	3,314
주택	1,575
문화·사회·지역계획	8,258
경찰	11,374
소방	2,081
중앙서비스	2,875
기타서비스	319
총 서비스별 경상지출 비용	92,599
주택 혜택	19,286
페리쉬 관련 서비스	613
자본 계좌 조정 및 기타 조정	-476
총 순경상지출 비용	112,022

자료: DCLG(2019),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England, No.29.

- 세입지출은 세출액의 세입확보 방안과 연계되어 측정되는 지출분류 방식이며, 재원 구성이 지역 내 지방세 수입과 중앙정부 보조금에 의해 충당됨
  - 이는 지역 당국이 구매한 노동, 재화 및 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세입지출 규모는 순경상지출에서 자본조달비용을 더하고 이자 비용을 빼서 기타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함
  - 영국 정부는 매해 일부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각 지방정부의 순경상지출이 어떻게 분류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한 Subjective Analysis Return 보고서를 작성함
  - 이 보고서에서는 주로 공무원 임금과 재화 및 서비스 조달 사이에서 순경상지출이 어떻게 분류되고 수익이 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임금 협상을 통한 수익과 외부 계약을 통한 서비스 조달을 통한 수익을 자세히 보여줌
  - 세입지출은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과 세입구조를 연계시키는 유용한 세출분류 항목으로 자주 사용됨
- 자본지출은 토지 구입, 주택건설, 교통시설 확충, 각종 장비 및 내구자산 구입 등과 같은 자본적 투자활동에 대한 경비지출임
  - 자본지출의 재원은 주로 자본수입금, 차입금, 중앙정부 보조금을 통해 확보됨
  - 지방정부 세출에서 지방채는 주로 자본 계정에 한정됨
- 준비금(revenue reserves)은 세입 소득의 누적으로 향후 세출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잔액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 지방정부는 다양한 이유(홍수나 폭설과 같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지원금, 현금 유동성, 임시 차입, 미래 부채 가능성)로 준비금을 예치해 둬
  - 학교 준비금(Schools' reserves)은 지방정부가 학교가 밝힌 예산에서 특정한 금액을 예상하지 못하는 자연재해 혹은 미래 부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금으로서 보유함
  - 공공보건 준비금(Public health reserves)은 지방정부가 공공 보건을 위하여 설정한 보건 관련 예산에서 공공보건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

해 설정한 준비금임

- 기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기타 준비금(other earmarked reserves)과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목적으로 할당되지 않은 준비금(unallocated reserves)이 있음

〈표 3-5〉 영국 지방정부 준비금 보유 현황

(단위: 백만 파운드)

구분 (3월 31일 기준)	세입지출	준비금				
		학교	공중보건	기타	비할당	총 준비금
2013	94,148	2,372	-	14,886	4,537	21,795
2014	96,419	2,378	207	17,084	4,299	23,967
2015	95,943	2,414	320	17,971	4,483	25,188
2016	94,529	2,315	259	17,675	4,458	24,707
2017	93,567	1,839	246	16,818	4,194	23,097
2018	93,104	1,659	239	17,641	4,286	23,825

자료: DCLG(2019),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England, No.29.

### 3. 사회보장 관리체계

-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관련 부처가 정책 및 재원마련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욕구파악 및 사회서비스 구매와 감독 역할에 초점을 맞춘 행정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정기혜, 2012b)
- 특히 영국은 2001년 6월에 복지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노동부의 노동부분과 사회보장부를 통합하여 노동연금부를 설치하였음
  - 복지와 연금부분을 관장하되 아동·장애인·실업자의 빈곤문제를 재고하고, 이들의 사회복지 의존도를 줄이며 취업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연금부를 설치하였음(정기혜, 2012b)
  - 노동연금부는 고객중심 서비스를 위해 2002년부터 전국 400여개의 사회보장사무소를 통하여 사회급여를 관장하던 사회보장성 산하 급여청을 폐

지하고, 인구대상별 조직에서 급여와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였음(정기혜, 2012b)

- 모든 공공부조와 사회보장급여는 노동연금부의 집행체계인 연금서비스, 고용센터플러스, 돌봄자서비스의 각 지역사무소를 통하여 관리·운영하였음
  - 연금서비스청(Pension Service)은 실업수당, 장애급여, 고용 및 부양수당, 유족급여, 산재급여 등을 담당함
  - 고용센터플러스청(Jobcentre Plus)은 노동인구의 복지와 노동 여건을 돕고 취업알선을 관장하며, 돌봄자서비스청(Disability and Carers Service)은 장애인과 돌봄자서비스를 관장함

## 제2절 보조금 제도 및 유형

### 1. 보조금 제도

#### 가. 기능

- 영국의 보조금 제도는 ① 지역 간 누출효과, ② 지역 간 재정불균형, ③ 지방세 부담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첫째,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역 간 누출효과(spill-over effect) 때문임(김의섭, 2013)
  - 지역공공서비스는 대부분 누출효과 또는 편익의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음
  - 중앙정부가 최적 수준의 보조금을 지방정부에 지원함으로써 누출효과를 발생시키는 지역공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 둘째, 보조금 제도는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공평(horizontal equity)을 달성하는 기능을 수행함(김의섭, 2013)
  -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과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주는 기능을 담당함
  - 지역 간 재정불균형은 세출수요(spending needs)와 세입확보 능력(taxable capacities)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며, 영국은 포괄보조금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해 왔음
- 셋째, 보조금 제도는 지방정부의 지방세 인상 부담을 경감시키는 기능을 수행함(김의섭, 2013)
  - 영국의 지방세는 재산과세 단일 항목으로 되어있는데, 재산과세는 경제활동의 변화에 대응하여 세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조세임
  - 중앙정부가 개인소득세 수입과 같은 재원으로 확보된 보조금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과도한 지방세 인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음

## 나. 연혁

- 영국의 국고보조제도는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정치·사회적 환경, 정부의 정책목표,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에 따라 변화되었음
- 1980년대는 보수적인 대처 정권에 의해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가장 심했던 시기임(김의섭, 2013)
  - 대처 정부는 1990년 4월 1일에 과거 1세기 동안 실시되어 왔던 지방세인 레이트를 폐지하고 주민부담금(또는 인두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영국의 지방자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 레이트 폐지와 더불어 과거의 지방세원이었던 비주거레이트(non-domestic rate)를 중앙정부 세원으로 이전하게 되었음
  - 과거 비주거레이트(또는 기업레이트)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부과한 지방의 중요한 세입원이었는데, 1990년 이후 중앙정부에 의해 책정된 전국적 수준의 비주거레이트가 부과되면서 중앙의 세입원으로 변경되었음
  - 1990년 이후 영국 지방정부의 지방세입은 크게 감소되었고, 전체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자체재원의 규모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영국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먼저 1980년에 도입된 포괄보조금 제도가 1990년에 세입지원교부금(Revenue Support Grant)으로 변화되었음
  - 1990년에 도입된 세입지원교부금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중요시하며 지방정부 간 배분방식을 새롭게 변화시킨 지방재정조정제도로 현재까지 영국 교부금 제도로 활용되고 있음
  - 이때 총 의존재원(Aggregate external finance: AEF)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음
  - 현재 영국 보조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도인 총 의존재원은 세입지원교부금, 비거주자레이트, 경찰보조금을 합한 보조금으로 지방정부에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보조금으로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영국 지방재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운영되는 주택계정에 사용용도를 제한하여 지원하는 주택계정보조금(Ring-fenced housing revenue account)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음(김의섭, 2013)
-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 보조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1998년에 지방정부의 현대화(Modern Local Government) 백서를 발간하였음
  - 이 정책보고서는 3년마다 보조금 제도의 효율성과 보조금 배분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검토·분석하여 영국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이에 따라 2000년까지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보조금 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이루어졌음
  - 2001년 12월에 강력한 지방정부의 리더쉽(Strong Local Leadership) 백서를 발간하고, 지방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방정부의 책임성 제고 및 보조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김의섭, 2013)
- 2003년에는 공식에 의한 보조금 배분제도(Formula Grant Distribution)를 새롭게 도입하였음
  - 이 제도는 사용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보조금(an un-ringfenced basis grant)으로 지방정부가 어떠한 서비스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임
  - 1990년 이후 10여 년 동안 사용되던 표준지출평가액제도<sup>11)</sup>는 폐지되고, 2003년 이후 영국의 보조금은 공식에 의해 배분 금액(Formula Spending Shares)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음(김의섭, 2013)
- 그리고 2003년에 「지방정부법안(Local Government Bill 2003)」이 제정되었음

11) 표준지출평가액은 중앙정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표준의 공공서비스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데 필요한 적정지출 수준으로 파악하는 제도이다.



- 이 법안은 1990년대 이후 실시되어 왔던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를 제한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몇 가지의 새로운 지방재정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 법안에 의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었고, 지방정부가 지역 내 자원을 자율적인 결정 하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새로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적 지원, 지역 내 새로운 교역 권한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구역의 설정 등 지방정부의 자율적 정책실시가 가능해졌음(김의섭, 2013)
- 이 시기 이후 지방정부에 대한 일반보조금 지원을 확대시키기 위한 보조금 제도의 변화가 나타났음
- 2008년에 권역별지원보조금(Area Based Grant)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는 기존의 특정보조금을 통합하여 사용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보조금으로 전환하였음
  - 이후 2011년 3월 31일에 권역별지원보조금 제도는 종료되고 새로운 지역서비스 지원보조금(Local Services Support Grant)이 도입되었으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보조금임(김의섭, 2013)

## 2. 유형

### 가. 총 의존재원 이내 보조금(Aggregate External Finance)

- 영국의 보조금 제도는 크게 총 의존재원 이내 보조금(Aggregate External Finance)과 총 의존재원 이외 보조금(Grant outside grant)으로 구분됨
- 총 의존재원 이내 보조금은 주로 지방정부의 경상계정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공식배분보조금, 특정·특별보조금, 지역서비스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식배분보조금(Formular Grants)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주는 보조금으로, 일정한 배분공식에 따라 배분됨
  - 공식배분보조금은 그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수성, 인구구조의 특성, 자치단체의 징세 가능한 지방의회세입 능력 등의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그 배분액이 결정됨
  - 특히 2003년 이후 공식배분보조금(Formula Grant)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여기에는 세입지원교부금(Revenue Support Grants), 비주거레이트(Redistributed non- domestic rates), 경찰보조금(Policy Grant)이 포함됨(김의섭, 2013)
- 공식배분보조금 중 세입지원교부금(RSG)은 중앙정부의 보조금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수요교부금과 일률교부금으로 구성됨
  - 수요교부금은 1인당 세출액을 기준으로 특정 지역의 세출비용 부담이 높은 것을 경감하여 주기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을 의미함
  - 이 교부금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존재하는 행정수요 격차를 보상하여 모든 지역이 전국적 표준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임
  - 다음으로 일률교부금은 지방세 징세능력이 낮은 지역의 부족한 세원을 보전하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임
  - 이 교부금은 각 지방정부에 정액으로 배분되는데 이를 통해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아 세수능력이 낮은 지역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음
  - 즉, 지방정부 간 세금 징수력의 격차를 완화시켜 주는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함(김의섭, 2013)
- 이외에 총 의존재원 이내 보조금으로 특정·특별보조금, 지역서비스 지원보조금, 광역 GLA 보조금이 있음

- 특정·특별보조금(Specific & Special Grants)은 중앙정부의 개별 부처가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며, 2006년 이후 특정·특별보조금 규모가 급속히 증대되기 시작하였음(김의섭, 2013)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권역별지원보조금(Area Based Grant)이 지방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활용되었음
- 2011년 이후 이 제도는 폐지되고 지역서비스 지원보조금(Local Services Support Grant)으로 새롭게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 지역서비스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우선적 정책목표에 의해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그 사용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보조금임(김대영, 2015)

#### 나. 총 의존재원 이외 보조금(Grant outside grant)

- 총 의존재원 이외에 주택계정보조금, 자본계정보조금, 기타 총 의존재원 이외 보조금이 있음
  - 영국의 지방정부 회계는 주택계정과 자본계정을 독립적인 별도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 총 의존재원 이내 보조금에는 이 두 계정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김의섭, 2013)
- 먼저 주택계정(Housing Revenue Account)은 그 운영 및 기록이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총 의존재원 이내 보조금에 지방정부에 지원되는 주택계정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음
  - 1935년에 제정된 「주택법(Housing Act 1935)」에 따라 지방정부는 주택 수량을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주택계정에 관련된 지출과 수입은 별도 계정으로 따로 관리하게 되었음
  - 주택계정 활동에 필요한 지출은 지방정부의 카운슬세, 중앙정부보조금, 세입자 부담 집세 등의 수입으로 충당됨(김의섭, 2013)
  - 중앙정부는 1990년 이후부터 사용용도를 주택부문으로 지정한 제한된 용도의 보조금(ring-fenced grant)인 주택계정 보조금을 도입하였음

- 중앙정부가 주택계정을 사용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은 지역 내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공정한 집세(fair rent)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정책목표에 기인한 것임
  - 2012년 3월에 그동안 지원되어왔던 주택계정 보조금이 폐지되고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세입확보를 통해 주택계정을 운영하게 되었음
  - 주택계정 보조금 폐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택 자산의 소유권 변화와 지방정부가 주택계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증대시키는 현상을 야기하였음
- 다음으로 자본계정(Capital Account)은 영국 지방정부가 지역 내 자본 확충을 위해 별도로 관리·운영하는 부문임
- 지방정부의 자본지출은 지역 내 물적 자산인 건물, 토지, 기계의 구입과 개선 등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이며, 주로 지방정부가 지역 내 고정자산의 구입이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지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2004년 4월 이후부터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3)」에 의해 지방정부의 자본지출은 중앙정부 보조금, 자산운영·매각 수입, 외부기관 지원금, 자체 차입 등을 통해 그 재원이 조달됨
  - 또한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3)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자본적 지출제도가 도입되었음
  - 새롭게 도입된 신중한 자본지출운영제도(Prudential Capital Finance System)는 지방정부가 지역 내 자본적 투자사업을 위해 필요한 차입을 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방의 자율적 자본계정 운영 권한을 인정하는 것임
  - 즉, 중앙정부는 지역 투자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보조하며, 지방정부는 지방채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는 한 추가적 투자재원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허용됨(김의섭, 2013)

#### 다. 포괄보조금 제도

- 영국의 단일 포괄보조금(Single Pot, Single Programme)은 중앙과 지방 간 서비스 협약에 근거하여 지역개발에 포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예산집행에서의 단절성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됨(이정희·박경돈 외, 2010)
  - 6개 부처(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epartment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UK Trade and Investment)가 분절적으로 관리·집행하던 지역개발 예산을 하나로 포괄하여 집행함
  - 포괄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 잉글랜드 내 9개, 웨일즈 내 6개 그리고 스코틀랜드 내 13개 지역개발청을 설립함
  - 다만, 지역개발청은 2010년 말에 폐지되고, 지역기업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LEPs)이 해당 기능을 수행함

### 제3절 보조금 재원분담 현황

#### 1. 보조금 현황

- 영국 지방정부는 지방세 단일 세목을 중심으로 자체세입 비중이 작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은 중앙정부의 보조금 또는 의존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2017-2018 회계연도 기준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총 78,268백만 파운드임
  - 2013-2014 회계연도의 90,982백만 파운드에 비해 12,714백만 파운드 감소하였음

〈표 3-6〉 영국의 중앙정부 보조금 추이

(단위: 백만 파운드)

구분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세입지원교부금(RSG)	15,175	12,675	9,520	7,188	3,978
경찰보조금	7,565	7,784	7,423	7,387	7,114
특정·특별보조금	41,760	40,805	40,119	39,218	39,330
지역서비스지원보조금	77	48	29	19	35
기타보조금	18,417	18,655	18,296	21,608	20,478
주택계정보조금	-794	-692	-734	-767	-776
자본계정보조금	8,782	9,996	11,037	10,577	8,109
합계	90,982	89,271	85,690	85,231	78,268

자료: MHCLG(2019).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England.

- 영국의 지방재정에서 중앙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2014 회계연도의 58%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7-2018 회계연도 기준 중앙정부 보조금은 78,268백만 파운드로 지방정부 총 세입 164,260백만 파운드의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7〉 지방정부 총 세입 대비 중앙정부 보조금 비중 추이

(단위: 백만 파운드, %)

구분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총보조금 (A)	90,982	89,271	85,690	85,231	78,268
지방정부 총 세입(B)	157,554	166,075	164,045	163,981	164,260
비중(A/B×100)	58%	54%	52%	52%	48%

자료 : MHCLG(2019).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England.

- 지난 10년간 영국의 지방정부 보조금 시스템 및 재원조달 수준에는 큰 변화가 있었음
  - 특히 2011-2012년과 2015-2016년 사이에 광범위한 지방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감축과 사업 비율 유지제도 도입 등으로 지방세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였음
  - 또한 지방정부의 총 세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서비스 전반에 걸쳐 지방정부의 지출이 감소하였음
  - 영국의 지방정부는 공중보건과 학습 장애에 대한 지원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에 관한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임
  - 지방 예산의 상당부분은 교육에 고정되어 있지만, 교육 분야는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금을 받아 진행하는 프로그램(예: 무상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어서 지방정부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많은 재원이 사용되고 있음

〈표 3-8〉 지방정부의 분야별 1인당 지출액(2018-2019 회계연도 기준)

구분	지출액(파운드)
교육	272,593
교통 및 고속도로	449,590
사회 보장	77,244
공공 보건	10,346
주택	827,487

구분	지출액(파운드)
문화	68,212
환경 및 규제	38,721
기획 및 개발	262,658
경찰	1,002
소방 및 구조	24
기타	89,820

자료: MHCL(2019).

- 영국의 경우도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예를 들어 서비스에 대한 순 지출은 지역에 따라서 1인당 639파운드에서 17,050파운드까지 다양함
  - 그리고 지방정부마다 분야별 지출 비중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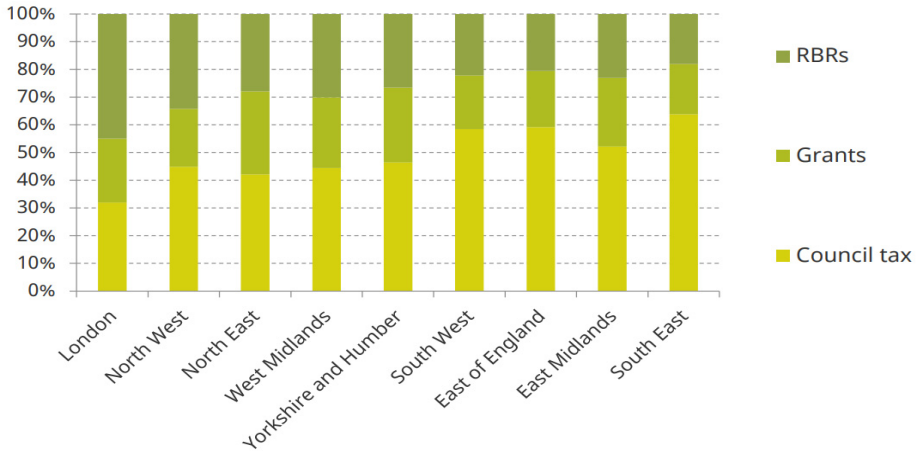
〈표 3-9〉 지역별·분야별 지출 비중

구분	London	North West	North East	West Midlands	Yorkshire and Humber	South West	East of England	East Midlands	South East
교육	28	38	39	39	40	43	43	41	42
교통 및 도로	21	9	8	8	8	5	6	7	5
사회보장	17	19	20	20	20	19	18	19	19
공공보건	6	7	9	7	7	6	6	7	6
주택	6	3	2	3	3	3	3	2	3
문화	3	5	4	4	5	4	4	4	5
환경 및 규제	9	10	9	9	10	12	11	11	12
기획 및 개발	3	3	2	4	2	2	2	2	1
기타	6	6	7	6	5	6	7	7	7

자료: Capital Outturn Return(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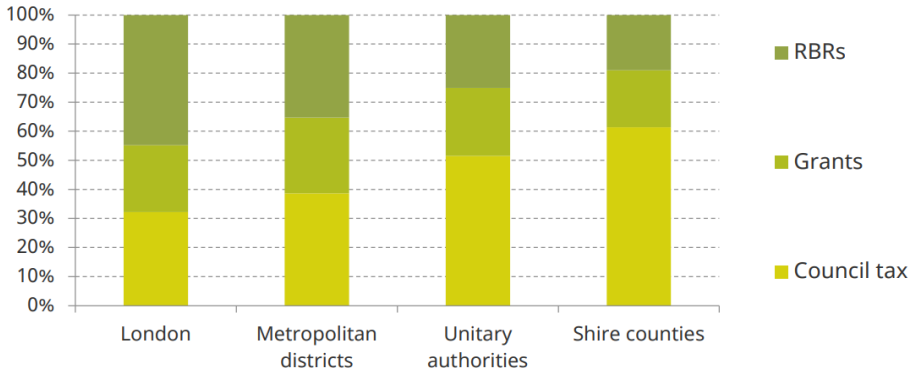
〈그림 3-1〉 지역별 세입 구조(2019-2020 회계연도 기준)



자료: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9) English local government funding: trends and challenges in 2019 and beyond.

- 각 지역별로 세입원의 비중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
  - South East, South West, East of England 지역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보조금과 RBR에 대한 의존도는 낮은 수준임
  - 지방정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Shire County 의회는 지방세를 통해 재정수입의 61%를 조달하지만, 대도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정부의 경우에는 수입의 39%만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고 있음

〈그림 3-2〉 지방정부 유형별 세입 구조(2019-2020 회계연도 기준)



자료: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9)

## 2. 분야별 현황

### 가. 보건복지

- 2019-20년 지방정부에 대한 공공보건 관련 보조금은 31억 3천만 파운드 로 모든 연령대를 위한 공공보건 기능에만 사용함
  - 공공보건 관련 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법률에 따라 국무장관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건을 제시함
  - 각 지방정부는 해당 조건에 대한 수행 여부에 따라서 영국 보건부와 공공보건부에 의해서 매년 평가받음
- 영국 지방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관련 보조금은 2015-16년에 3,465백만 파운드에서 2019-20년에 3,134백만 파운드로 다소 감소하였음

〈표 3-10〉 지방정부 보건복지 분야 관련 보조금 추이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총 보조금액	3,465	3,388	3,304	3,219	3,134

자료: Public health grants to local authorities: 2019 to 2020, www.gov.uk.

- 지방정부 중 버밍엄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버밍엄도 2018-19년 90,818천 파운드에서 2019-20년 88,420천 파운드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이 감소하였음

〈표 3-11〉 지방정부별 보건복지 분야 관련 보조금 추이

(단위: 천파운드)

구분	'18-'19	'19-'20	구분	'18-'19	'19-'20	구분	'18-'19	'19-'20
Hartlepool	8,764	8,533	Wiltshire	17,361	16,903	Greenwich	23,041	22,433
Middlesbrough	16,787	16,344	Bedford	8,723	8,493	Hackney	33,197	32,320
Redcar and Cleveland	11,523	11,219	Central Bedfordshire	12,267	11,943	Hammersmith and Fulham	21,764	21,189
Stockton-on-Tees	13,911	13,544	Northumberland	16,226	15,798	Haringey	20,209	19,675
Darlington	8,447	8,224	Bolton	21,475	20,908	Harrow	10,808	10,523
Halton	10,185	9,916	Bury	11,632	11,325	Havering	10,935	10,646
Warrington	12,259	11,935	Manchester	51,881	50,511	Hillingdon	17,534	17,071
Blackburn with Darwen	14,827	14,435	Oldham	16,891	16,445	Hounslow	15,754	15,338
Blackpool	18,428	17,941	Rochdale	16,732	16,290	Islington	25,923	25,238
Kingston upon Hull, City of	24,484	23,837	Salford	20,759	20,211	Kensington and Chelsea	20,899	20,347
East Riding of Yorkshire	10,759	10,475	Stockport	15,667	15,253	Kingston upon Thames	10,107	9,840
North East Lincolnshire	11,026	10,735	Tameside	14,918	14,524	Lambeth	31,409	30,580
North Lincolnshire	9,315	9,069	Trafford	12,391	12,064	Lewisham	24,325	23,683
York	8,013	7,801	Wigan	25,590	24,914	Merton	10,451	10,175

주요 국가의 기능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구분	'18-'19	'19-'20	구분	'18-'19	'19-'20	구분	'18-'19	'19-'20
Derby	19,258	18,749	Knowsley	17,174	16,721	Newham	31,111	30,289
Leicester	26,811	26,103	Liverpool	44,825	43,641	Redbridge	13,744	13,381
Rutland	1,292	1,258	St. Helens	14,262	13,885	Richmond upon Thames	9,276	9,031
Nottingham	33,830	32,937	Sefton	21,374	20,810	Southwark	27,469	26,744
Herefordshire, County of	9,224	8,980	Wirral	29,079	28,311	Sutton	9,814	9,555
Telford and Wrekin	12,338	12,012	Barnsley	16,998	16,549	Tower Hamlets	35,049	34,124
Stoke-on-Trent	22,589	21,993	Doncaster	23,809	23,180	Waltham Forest	15,932	15,511
Bath and North East Somerset	8,930	8,694	Rotherham	16,304	15,873	Wandsworth	27,326	26,604
Bristol, City of	32,486	31,628	Sheffield	33,355	32,474	Westminster	31,250	30,425
North Somerset	9,561	9,309	Newcastle upon Tyne	23,509	22,888	Buckinghamshire	20,539	19,997
South Gloucestershire	9,379	9,131	North Tyneside	12,430	12,102	Cambridgeshire	26,253	25,560
Plymouth	15,330	14,925	South Tyneside	13,761	13,398	Cumbria	18,400	17,914
Torbay	9,314	9,068	Sunderland	23,386	22,768	Derbyshire	40,548	39,477
Swindon	10,106	9,839	Birmingham	90,818	88,420	Devon	27,512	26,786
Peterborough	10,908	10,620	Coventry	21,969	21,389	East Sussex	27,270	26,550
Luton	15,382	14,976	Dudley	20,697	20,150	Essex	62,479	60,829
Southend-on-Sea	9,462	9,212	Sandwell	24,714	24,061	Gloucestershire	24,271	23,630
Thurrock	11,042	10,750	Solihull	10,935	10,646	Hampshire	50,831	49,489
Medway	17,217	16,762	Walsall	17,653	17,187	Hertfordshire	47,558	46,302
Bracknell Forest	4,050	3,943	Wolverhampton	20,769	20,221	Kent	67,584	65,799
West Berkshire	5,853	5,698	Bradford	41,826	40,722	Lancashire	68,367	66,562
Reading	9,758	9,500	Calderdale	13,246	12,896	Leicestershire	24,872	24,215
Slough	7,563	7,363	Kirklees	25,987	25,301	Lincolnshire	32,662	31,800
Windsor and Maidenhead	4,782	4,656	Leeds	44,311	43,141	Norfolk	39,062	38,031
Wokingham	5,354	5,213	Wakefield	24,305	23,663	Northamptonshire	34,784	33,866
Milton Keynes	11,399	11,098	Gateshead	16,516	16,080	North Yorkshire	21,757	21,182
Brighton and Hove	20,089	19,559	City of London	1,614	1,571	Nottinghamshire	41,109	40,023
Portsmouth	17,719	17,251	Barking and Dagenham	16,906	16,460	Oxfordshire	30,528	29,722
Southampton	16,898	16,452	Barnet	17,156	16,703	Somerset	20,723	20,176

구분	'18-'19	'19-'20	구분	'18-'19	'19-'20	구분	'18-'19	'19-'20
Isle of Wight	7,511	7,313	Bexley	9,695	9,439	Staffordshire	38,192	37,184
County Durham	48,698	47,412	Brent	21,396	20,831	Suffolk	30,001	29,209
Cheshire East	16,400	15,967	Bromley	14,708	14,320	Surrey	36,540	35,575
Cheshire West and Chester	16,254	15,825	Camden	26,792	26,085	Warwickshire	22,957	22,351
Shropshire	12,000	11,683	Croydon	21,349	20,785	West Sussex	33,962	33,065
Cornwall	25,461	24,789	Ealing	24,300	23,658	Worcestershire	29,129	28,360
Isles of Scilly	131	128	Enfield	16,828	16,384	-	-	-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ublic-health-grants-to-local-authorities-2019-to-2020>.

- 한편 「지방자치법」 제31조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보건사회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바이러스 시험 및 추적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을 결정함
- 보조금의 목적은 COVID-19의 지역 발생 및 감염에 대한 예방과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을 지원하는 것임
  - 국무장관은 어떠한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와 지급해야 할 보조금 금액을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
  - 해당 보조금은 2020-21 회계연도의 공공의료보조금 지역별 할당을 기준으로 결정됨

〈표 3-12〉 지방정부별 코로나19 관련 보조금 현황

(단위: 천파운드)

구분	보조금	구분	보조금	구분	보조금	구분	보조금
Barking and Dagenham	1,567	East Riding of Yorkshire	1,024	Merton	965	Southwark	2,521
Barnet	1,599	East Sussex	2,535	Middlesbrough	1,566	St Helens	1,328
Barnsley	1,569	Enfield	1,582	Milton Keynes	1,065	Staffordshire	3,634
Bath and North East Somerset	849	Essex	5,783	Newcastle upon Tyne	2,186	Stockport	1,474
Bedford	806	Gateshead	1,514	Newham	2,843	Stockton-on-Tees	1,311
Bexley	902	Gloucestershire	2,222	Norfolk	3,718	Stoke-on-Trent	2,084

주요 국가의 기능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구분	보조금	구분	보조금	구분	보조금	구분	보조금
Birmingham	8,439	Greenwich	2,160	North East Lincolnshire	1,049	Suffolk	2,789
Blackburn with Darwen	1,367	Hackney	3,101	North Lincolnshire	855	Sunderland	2,220
Blackpool	1,694	Halton	949	North Somerset	869	Surrey	3,478
Bolton	1,998	Hammersmith and Fulham	2,020	North Tyneside	1,140	Sutton	920
Bournemouth, Christchurch and Poole	1,809	Hampshire	4,790	North Yorkshire	2,023	Swindon	931
Bracknell Forest	385	Haringey	1,862	Northamptonshire	3,270	Tameside	1,420
Bradford	3,870	Harrow	1,020	Northumberland	1,529	Telford and Wrekin	1,162
Brent	1,993	Hartlepool	826	Nottingham	3,127	Thurrock	1,051
Brighton and Hove	1,863	Havering	1,023	Nottinghamshire	3,803	Torbay	886
Bristol, City of	3,033	Herefordshire, County of	845	Oldham	1,560	Tower Hamlets	3,220
Bromley	1,370	Hertfordshire	4,506	Oxfordshire	2,858	Trafford	1,157
Buckinghamshire	1,955	Hillingdon	1,630	Peterborough	1,018	Wakefield	2,248
Bury	1,080	Hounslow	1,468	Plymouth	1,402	Walsall	1,651
Calderdale	1,233	Isle of Wight	700	Portsmouth	1,638	Waltham Forest	1,479
Cambridgeshire	2,493	Isles of Scilly	12	Reading	901	Wandsworth	2,542
Camden	2,461	Islington	2,431	Redbridge	1,279	Warrington	1,137
Central Bedfordshire	1,156	Kensington and Chelsea	1,933	Redcar and Cleveland	1,076	Warwickshire	2,138
Cheshire East	1,533	Kent	6,311	Richmond upon Thames	858	West Berkshire	540
Cheshire West and Chester	1,513	Kingston upon Hull, City of	2,236	Rochdale	1,592	West Sussex	3,179
City of London	146	Kingston upon Thames	941	Rotherham	1,518	Westminster	2,891
Cornwall	2,387	Kirklees	2,381	Rutland	120	Wigan	2,392
County Durham	4,498	Knowsley	1,596	Salford	1,976	Wiltshire	1,587
Coventry	2,041	Lambeth	2,919	Sandwell	2,277	Windsor and Maidenhead	436
Croydon	1,998	Lancashire	6,367	Sefton	1,995	Wirral	2,733
Cumbria	1,718	Leeds	4,141	Sheffield	3,102	Wokingham	500
Darlington	779	Leicester	2,489	Shropshire	1,127	Wolverhampton	1,920

구분	보조금	구분	보조금	구분	보조금	구분	보조금
Derby	1,808	Leicestershire	2,309	Slough	690	Worcestershire	2,752
Derbyshire	3,859	Lewisham	2,267	Solihull	1,041	York	734
Devon	2,619	Lincolnshire	3,070	Somerset	1,926	-	-
Doncaster	2,234	Liverpool	4,089	South Gloucestershire	863	-	-
Dorset	1,288	Luton	1,426	South Tyneside	1,250	-	-
Dudley	1,942	Manchester	4,837	Southampton	1,571	-	-
Ealing	2,262	Medway	1,593	Southend-on-Sea	887	-	-

#### 나. 교통

- 지방 고속도로 정비 비용에 관련된 보조금은 개별 지방정부에 지원됨
  - 8개 지역(North East, North West, Yorkshire and the Humber, East Midlands, West Midlands, East of England, South East, South West)이 개별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
  - 런던 자치구와 시칠리 섬은 제외됨
- 도로, 교량 및 조명에 대한 각각의 보조금 배분은 대체로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됨
  - 각 요소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제시한 통계(도로 수, 교량 수, 조명 수 등)를 영국 전체의 통계로 나눈 뒤 각각의 요소에 대한 총 할당량을 파운드 단위로 곱하여 산정함
  - 이후 각 요소에 대한 할당량을 합산하여 각 지방정부별 총 할당량을 구하고, 가장 가까운 1,000파운드로 반올림하여 보조금을 계산함
  - 2015-16 회계연도부터 2020-21 회계연도까지는 2014년 4월 1일 기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비율로 보조금을 책정하였음
  - 영국 교통부는 2018년부터 매년 지방정부에게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으며, 추가적으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

〈표 3-13〉 지방정부별 교통 관련 보조금 추이

(단위: 천 파운드)

구분	총보조금액 2015-16	총보조금액 2016-17	총보조금액 2017-18	총보조금액 2018-19
Hartlepool UA	1,185	1,086	1,053	953
Middlesbrough UA	1,831	1,679	1,628	1,473
Redcar and Cleveland UA	2,113	1,937	1,879	1,700
Stockton-on-Tees UA	2,580	2,365	2,293	2,076
Darlington UA	1,738	1,593	1,545	1,398
North East CA	41,895	38,408	37,245	33,711
Warrington UA	3,195	2,929	2,841	2,571
Blackburn with Darwen UA	1,929	1,768	1,715	1,552
Blackpool UA	1,201	1,101	1,068	966
Cheshire East UA	10,450	9,580	9,290	8,409
Cheshire West and Chester UA	7,951	7,290	7,069	6,398
Cumbria	27,080	24,826	24,075	21,791
Lancashire	23,075	21,154	20,514	18,567
Greater Manchester CA	27,978	25,649	24,873	22,513
Liverpool City Region CA	16,914	15,506	15,036	13,610
Kingston upon Hull, City of UA	2,251	2,064	2,001	1,811
East Riding of Yorkshire UA	11,047	10,127	9,821	8,889
North East Lincolnshire UA	1,996	1,829	1,774	1,606
North Lincolnshire UA	4,601	4,218	4,090	3,702
York UA	2,270	2,081	2,018	1,827
North Yorkshire	29,650	27,182	26,359	23,858
Sheffield City Region CA	12,568	11,522	11,173	10,113
West Yorkshire CA	29,213	26,782	25,971	23,507
Derby UA	2,214	2,030	1,968	1,782
Leicester UA	2,613	2,395	2,323	2,102
Rutland UA	1,907	1,748	1,696	1,535
Nottingham UA	2,215	2,031	1,969	1,782
Derbyshire	18,981	17,401	16,874	15,273
Leicestershire	14,220	13,036	12,642	11,442
Lincolnshire	31,013	28,431	27,571	24,955
Northamptonshire	15,276	14,004	13,581	12,292
Nottinghamshire	14,921	13,679	13,265	12,006
Herefordshire, County of UA	11,523	10,564	10,244	9,272
Telford and Wrekin UA	3,453	3,165	3,069	2,778
Stoke-on-Trent UA	2,380	2,182	2,116	1,915
Shropshire UA	16,498	15,124	14,667	13,275



구분	총보조금액 2015-16	총보조금액 2016-17	총보조금액 2017-18	총보조금액 2018-19
Staffordshire	20,076	18,405	17,848	16,154
Warwickshire	12,951	11,873	11,514	10,421
Worcestershire	15,007	13,758	13,341	12,076
West Midlands ITA	16,295	14,938	14,486	13,112
Peterborough UA	3,462	3,174	3,078	2,786
Luton UA	1,368	1,254	1,216	1,101
Southend-on-Sea UA	1,393	1,277	1,238	1,121
Thurrock UA	1,993	1,827	1,772	1,604
Bedford UA	2,986	2,737	2,654	2,402
Central Bedfordshire UA	4,457	4,086	3,962	3,586
Cambridgeshire	15,008	13,758	13,342	12,076
Essex	24,575	22,529	21,847	19,774
Hertfordshire	17,805	16,322	15,828	14,327
Norfolk	28,637	26,253	25,459	23,043
Suffolk	21,814	19,999	19,393	17,553
Medway UA	2,545	2,333	2,263	2,048
Bracknell Forest UA	1,701	1,560	1,512	1,369
West Berkshire UA	4,314	3,955	3,836	3,472
Reading UA	1,472	1,350	1,309	1,185
Slough UA	904	829	803	727
Windsor and Maidenhead UA	2,178	1,997	1,936	1,752
Wokingham UA	2,655	2,434	2,360	2,136
Milton Keynes UA	5,122	4,696	4,554	4,122
Brighton and Hove UA	2,623	2,404	2,332	2,110
Portsmouth UA	1,430	1,311	1,272	1,151
Southampton UA	1,704	1,562	1,515	1,371
Buckinghamshire	10,500	9,626	9,334	8,449
East Sussex	10,631	9,746	9,451	8,554
Hampshire	26,824	24,591	23,847	21,584
Kent	27,277	25,006	24,249	21,949
Oxfordshire	16,695	15,305	14,842	13,434
Surrey	16,714	15,323	14,859	13,449
West Sussex	13,723	12,581	12,200	11,043
Bath and North East Somerset UA	3,771	3,457	3,352	3,034
Bristol, City of UA	3,892	3,568	3,460	3,132
North Somerset UA	4,012	3,678	3,567	3,229
South Gloucestershire UA	5,080	4,657	4,516	4,088
Plymouth UA	2,325	2,132	2,067	1,871
Torbay UA	1,458	1,337	1,297	1,174

구분	총보조금액 2015-16	총보조금액 2016-17	총보조금액 2017-18	총보조금액 2018-19
Bournemouth UA	1,453	1,332	1,291	1,169
Poole UA	1,601	1,467	1,423	1,288
Swindon UA	2,799	2,566	2,489	2,253
Cornwall UA	22,685	20,796	20,167	18,254
Wiltshire UA	16,599	15,217	14,757	13,357
Devon	42,306	38,785	37,611	34,042
Dorset	13,908	12,750	12,364	11,191
Gloucestershire	17,833	16,349	15,854	14,350
Somerset	22,514	20,640	20,015	18,116

출처: DfT. (2014).

## 다. 교육

### 1) 학교 보조금(Dedicated Schools Grant)

- 「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영국 중앙정부는 교육기술기금지원청 ( Education and Skills Funding Agency, ESFA)을 통하여 지방정부에 학교 보조금 (Dedicated schools grant)을 지원함
  - 학교 보조금은 지방정부의 학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데, 이 교부금은 학교 예산의 주요 수입원임
  - 지방정부가 지역 학교 포럼과 연계하여 중앙정부와 개별 학교 예산 사이의 보조금 분담을 결정하고 지원 공식에 따라서 개별 학교에 배분할 책임이 있음
  -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는 자체재원으로 학교에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함
  - 중앙정부는 총 25번에 나누어서 학교 보조금을 지급하며, 학교별 보조금 할당 금액은 지방정부에 책임이 있음
  - 지방정부는 해당 보조금을 받는 학교의 재정을 관리하고 보조금이 제공되는 빈도를 정하여야 할 의무를 가짐
  - 단 특정한 상황<sup>12)</sup>에서는 지방정부가 학교에 직접 보조금을 제공함

12) 특정한 상황은 ① 고학력 학생을 위한 보충 자금 지원, ② 유아/유치원 단일 자금조달 공식에 따라 계산된 자금 지원, ③ 타학교에서 제외된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④ 지방

- 학교 보조금은 크게 4가지 보조금 블록(학교, 학교 서비스, 특수교육, 유아/유치원)으로 나누어져 있음
- 지방정부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교 포럼의 동의를 얻은 뒤 블록 간 자금이전을 실시함
  - 만약 지방정부가 학교 포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국무장관에게 보조금을 배정할 수 있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
  - 국무장관이 허가한 경우 지방정부가 요구한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조건에 따라 이전할 수 있음

〈표 3-14〉 지방정부별 학교 보조금 현황(2019-20 회계연도 기준)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학교 (School Block)	학교서비스 (central school services block)	특수교육 (high needs block)	유아/유치 교육 (early years block)	합계
Camden	116.9	1.4	36.6	17.7	172.7
Greenwich	220.2	6.2	47.2	27.9	301.4
Hackney	207.6	2.1	43.1	29.3	282.1
Hammersmith and Fulham	102.9	4.4	21.9	15.8	145.1
Islington	129.9	1.8	30.1	19.9	181.7
Kensington and Chelsea	69.6	1.0	17.2	12.0	99.9
Lambeth	211.6	1.0	42.7	29.8	285.2
Lewisham	209.7	5.4	51.5	24.5	291.1
Southwark	247.3	1.7	44.5	26.8	320.3
Tower Hamlets	260.7	4.8	50.8	29.6	345.9
Wandsworth	159.3	3.2	44.0	26.4	232.9
Westminster	112.2	1.1	26.3	14.6	154.2
Barking and Dagenham	216.6	2.6	31.7	22.2	273.1

정부의 성장 기금으로부터의 할당비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구분	학교 (School Block)	학교서비스 (central school services block)	특수교육 (high needs block)	유아/유치 교육 (early years block)	합계
Barnet	254.9	2.2	50.1	28.9	336.0
Bexley	179.6	2.0	32.4	16.3	230.3
Brent	231.0	2.4	56.3	22.6	312.3
Bromley	208.6	1.9	49.0	22.2	281.8
Croydon	247.5	6.1	61.1	28.3	343.0
Ealing	240.7	3.2	54.5	27.9	326.2
Enfield	259.0	2.9	47.3	25.4	334.6
Haringey	197.0	3.0	36.1	20.1	256.2
Harrow	165.8	1.2	32.1	18.2	217.3
Havering	173.7	1.6	25.3	19.0	219.6
Hillingdon	218.7	2.8	40.5	25.3	287.3
Hounslow	188.8	1.4	48.8	22.0	261.0
Kingston upon Thames	102.9	1.1	23.3	13.1	140.4
Merton	123.0	1.0	33.1	16.2	173.3
Newham	340.5	2.0	48.1	28.7	419.2
Redbridge	228.3	7.7	42.8	23.3	302.1
Richmond upon Thames	114.4	0.9	25.3	14.8	155.4
Sutton	153.3	1.8	38.3	15.0	208.4
Waltham Forest	201.0	1.5	37.4	22.5	262.4
Birmingham	918.2	18.0	162.1	89.8	1188.1
Coventry	238.8	3.7	39.2	21.8	303.5
Dudley	201.9	2.0	32.2	18.0	254.0
Sandwell	260.9	2.0	42.2	23.9	329.0
Solihull	155.1	2.5	27.8	14.8	200.2
Walsall	209.0	1.4	33.7	21.2	265.4
Wolverhampton	191.2	2.0	36.0	18.1	247.4
Knowsley	92.5	1.0	20.3	12.3	126.1

구분	학교 (School Block)	학교서비스 (central school services block)	특수교육 (high needs block)	유아/유치 교육 (early years block)	합계
Liverpool	310.3	7.5	49.6	34.4	401.9
St Helens	108.8	1.6	22.3	11.4	144.1
Sefton	159.0	1.3	28.2	16.9	205.4
Wirral	202.9	2.3	36.9	21.2	263.3
Bolton	210.3	1.9	35.3	21.5	269.0
Bury	122.9	0.8	30.5	13.5	167.7
Manchester	409.1	3.7	76.9	41.1	530.8
Oldham	190.5	3.0	33.0	18.6	245.2
Rochdale	164.3	1.2	23.8	17.1	206.4
Salford	161.7	2.8	33.0	19.2	216.7
Stockport	169.2	2.0	31.0	21.0	223.1
Tameside	162.4	0.9	20.8	16.5	200.6
Trafford	162.8	1.6	26.7	17.5	208.6
Wigan	204.0	0.7	29.7	20.3	254.7
Barnsley	148.8	1.9	23.2	15.1	188.9
Doncaster	194.5	1.6	31.8	19.7	247.6
Rotherham	189.9	1.1	31.6	17.3	239.9
Sheffield	332.5	8.1	57.2	34.9	432.6
Bradford	420.2	2.9	69.7	43.7	536.5
Calderdale	152.1	2.8	19.2	14.1	188.2
Kirklees	295.3	2.3	37.1	28.1	362.8
Leeds	516.3	5.3	72.9	58.8	653.3
Wakefield	217.9	1.7	30.9	22.1	272.5
Gateshead	110.3	1.7	22.7	14.0	148.7
Newcastle upon Tyne	165.0	1.6	38.9	21.0	226.5
North Tyneside	120.9	2.3	20.2	13.5	157.0
South Tyneside	91.8	3.4	17.8	10.1	123.1

구분	학교 (School Block)	학교서비스 (central school services block)	특수교육 (high needs block)	유아/유치 교육 (early years block)	합계
Sunderland	167.5	1.3	24.4	19.2	212.4
Bath and North East Somerset	105.4	1.1	24.1	10.2	140.7
Bristol, City of	261.5	2.9	53.9	36.9	352.2
North Somerset	122.5	2.1	23.9	11.3	159.8
South Gloucestershire	155.0	4.2	32.3	16.4	207.8
Hartlepool	63.8	0.9	11.0	6.1	81.8
Middlesbrough	103.5	1.1	23.3	11.2	139.1
Redcar and Cleveland	91.0	0.9	16.5	7.6	116.0
Stockton-on-Tees	127.5	0.9	24.7	13.2	166.2
Kingston Upon Hull, City of	177.4	2.9	30.5	17.8	228.6
East Riding of Yorkshire	184.7	2.1	23.4	17.8	228.0
North East Lincolnshire	101.8	1.4	18.6	10.3	132.1
North Lincolnshire	106.3	1.1	16.8	9.4	133.6
North Yorkshire	339.0	4.3	49.6	31.3	424.1
York	98.2	3.7	19.6	10.8	132.2
Luton	175.9	1.5	28.5	18.2	224.1
Bedford Borough	115.7	3.4	22.5	11.3	152.9
Central Bedfordshire	172.4	1.3	29.1	16.5	219.3
Buckinghamshire	322.2	7.4	82.6	31.6	443.7
Milton Keynes	188.8	1.5	40.8	21.3	252.4
Derbyshire	440.2	4.6	70.0	41.0	555.7
Derby	175.6	4.0	36.1	19.7	235.4
Dorset	194.0	1.9	35.5	16.0	247.4
Bournemouth, Christchurch and Poole	197.3	2.1	39.2	20.8	259.3
Durham	306.1	2.9	52.5	31.8	393.3
Darlington	66.3	1.5	12.8	7.1	87.6

구분	학교 (School Block)	학교서비스 (central school services block)	특수교육 (high needs block)	유아/유치 교육 (early years block)	합계
East Sussex	279.9	8.2	52.3	25.7	366.0
Brighton and Hove	134.2	2.6	25.6	15.4	177.8
Hampshire	752.3	8.3	115.7	80.6	956.8
Portsmouth	116.1	0.8	21.2	14.2	152.3
Southampton	142.4	2.1	25.6	16.6	186.6
Leicestershire	394.6	3.4	68.5	34.9	501.3
Leicester	248.9	1.9	50.3	23.9	325.0
Rutland	23.5	0.2	3.9	1.9	29.4
Staffordshire	485.7	6.6	77.2	49.2	618.7
Stoke-on-Trent	169.1	5.4	32.3	18.2	225.0
Wiltshire	275.2	2.6	46.9	26.4	351.1
Swindon	138.2	1.0	31.2	14.7	185.0
Bracknell Forest	69.8	1.0	15.8	7.5	94.1
Windsor and Maidenhead	86.2	1.1	20.4	9.6	117.2
West Berkshire	100.0	1.0	20.1	9.5	130.6
Reading	89.5	1.3	20.5	12.4	123.7
Slough	132.0	0.7	23.4	14.2	170.3
Wokingham	104.2	1.0	18.9	10.6	134.7
Cambridgeshire	349.3	8.1	68.8	37.3	463.5
Peterborough	161.3	1.5	30.6	17.6	210.9
Halton	86.9	0.7	16.8	10.0	114.3
Warrington	132.3	0.9	20.1	14.0	167.2
Devon	401.0	3.6	69.1	38.0	511.7
Plymouth	154.6	3.7	30.2	17.0	205.5
Torbay	78.0	1.3	17.9	7.3	104.4
Essex	855.8	12.2	140.9	81.9	1090.9
Southend-on-Sea	119.1	1.8	19.5	10.2	150.6

구분	학교 (School Block)	학교서비스 (central school services block)	특수교육 (high needs block)	유아/유치 교육 (early years block)	합계
Thurrock	119.4	2.1	23.3	12.2	157.0
Herefordshire	100.7	0.7	15.7	9.0	126.1
Worcestershire	323.3	3.8	51.7	35.2	414.0
Kent	918.8	13.7	204.0	84.7	1221.2
Medway	179.5	0.7	38.2	17.2	235.7
Lancashire	745.8	6.6	117.7	79.1	949.1
Blackburn with Darwen	122.8	2.6	19.9	11.4	156.7
Blackpool	83.0	1.6	19.5	8.6	112.7
Nottinghamshire	482.1	6.8	66.4	49.1	604.3
Nottingham	211.9	7.1	34.0	22.1	275.1
Shropshire	160.1	3.2	25.8	15.6	204.6
Telford and Wrekin	117.2	1.1	22.0	12.2	152.5
Cheshire East	212.6	3.0	36.5	21.8	273.9
Cheshire West and Chester	204.1	3.0	38.5	20.9	266.5
Cornwall	308.2	4.2	43.2	28.6	384.2
Cumbria	285.5	5.0	43.1	27.2	360.7
Gloucestershire	356.3	2.6	59.9	33.6	452.3
Hertfordshire	752.7	5.7	115.3	90.2	963.9
Isle of Wight	71.0	0.6	15.1	6.8	93.5
Lincolnshire	428.0	5.8	85.3	41.5	560.6
Norfolk	482.0	3.4	81.9	42.2	609.5
Northamptonshire	468.5	11.1	77.9	45.9	603.4
Northumberland	179.7	3.1	32.9	17.0	232.7
Oxfordshire	374.0	4.1	64.3	38.0	480.3
Somerset	293.9	8.3	53.0	28.2	383.4
Suffolk	412.4	8.8	64.4	36.0	521.6
Surrey	629.1	6.2	147.1	74.7	857.2



구분	학교 (School Block)	학교서비스 (central school services block)	특수교육 (high needs block)	유아/유치 교육 (early years block)	합계
Warwickshire	327.4	4.4	62.9	32.5	427.3
West Sussex	459.3	8.6	80.6	49.7	598.2

자료: Education and Skills Funding Agency. (2020).

## 2) 학생 프리미엄 보조금(Pupil Premium Grant, PPG)

- 교육부 장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서 ①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신체적·환경적·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② 군인 신분의 부모를 가진 학생을 위해 학교와 지방정부에 학생 프리미엄 보조금(PPG)을 지원함

〈표 3-15〉 학생 프리미엄 보조금의 분야별 예산(FY2020-2021 기준)

(단위: 파운드)

구분	1인당 보조금
6학년 미만 무료 급식	1,345
7~11학년 무료 급식	955
1989년 「아동법」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에 의해 보호 받고 있거나 숙소를 제공받고 있는 보호 아동	2,345
입양, 특별보호, 아동보호명령으로 인해 잉글랜드와 웨일스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것이 중지된 아동	2,345
11학년까지 무료급식을 받은 학생으로 기록되거나 국방부로부터 아동연금을 수령한 아동	310

- 교육기술기금지원청(ESFA)은 이전 해에 지방정부에서 제공한 학교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4세~15세 사이의 학생을 위한 학생 프리미엄 보조금(PPG)을 각 지방정부에 배분함
- 단, 아카데미 학교(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재원을 조달받는

- 독립 재단)의 경우 교육기술기금지원청(ESFA)으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받음
- 학생 프리미엄 보조금(PPG)은 학교 예산의 일부가 아니며, 지방정부는 학교 예산 지출의 결손액과 관계없이 학생 프리미엄 보조금(PPG)을 학교에 제공해야 함

## 라. 주택

### 1) 자립 생활 기금(Independent Living Fund, ILF)

- 장애인들이 특정 주거환경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이 재단을 설립하여 자립 생활 기금을 보조하였음
- 그러나 2014년에 자립 생활 기금을 폐지하고, 이후 1억 3970만 파운드 상당의 자립 생활 기금 보조금을 지방정부에 제공함
- 기존 자립 생활 기금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함

### 2) 노숙인 지원금(Flexible Homelessness Support Grant)

- 이 보조금은 각 지역 노숙인의 상대적 증가율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현재 임시숙박시설 수준이 높은 지방정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연하게 쓰일 수 있음
- 노숙인의 증가율을 예측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별로 선택된 노숙인 프로그램과 노숙인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된 사례의 수를 더하여 상대적 증가율을 계산함
- 각 지역별 민간부문의 임대비용 차이를 고려하고, 모든 지방정부가 최소 4만 파운드 이상의 보조금을 수혜할 수 있도록 함
- 2017년 영국 국회를 통과한 노숙인 감축법(Homelessness Reduction

Act)은 56일 이내에 노숙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노숙인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안임

-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DCLG)에서는 노숙인 지원을 위한 비용과 노숙인 인원 예상 시스템을 작동하면서 무주택자 예방에 노숙인 지원 보조금을 사용함
- DCLG에서는 노숙인들과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적인 발생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예측하고자 했고, 그에 따라 어떠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추정했음
- DCLG는 약 2년간 지방정부에 숙박시설 확보(3,500만 파운드), 자문 서비스 제공(1,060만 파운드), 사례 검토 및 보고서 작성(800만 파운드), 숙박시설 제공(1,030만 파운드), 검토 중인 사례의 노숙인 임시 숙박시설 제공(700만 파운드), 개인별 맞춤 주택 계획 제공 및 평가(900만 파운드)에 총 7,270만 파운드를 보조할 계획임

○ 노숙자 지원금의 시행 과정은 2단계로 구분됨

- 먼저 1단계에서는 금융 데이터와 국가 노숙자 통계를 사용하여 각 지방정부에 노숙자 지원금을 할당하며, 각 지방정부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른 보조금 공식이 사용됨
- 2단계에서는 2016년 국가통계처에서 추정된 청장년 인구 추정치와 DGLG의 다중 박탈 점수를 사용하여 각 지방정부가 할당받은 보조금을 지역 내의 담당 부서에 분배함

〈표 3-16〉 지역별 노숙인 지원금과 노숙인 감축 보조금 현황

(단위: 파운드)

구분	노숙인 지원금	노숙인 감축 지원금	합계
Adur	138,749	74,669	213,418
Allerdale	40,000	47,088	87,088
Amber Valley	126,498	74,251	200,749
Arun	507,355	197,941	705,296
Ashfield	91,632	109,109	200,741
Ashford	283,309	159,320	442,629
Aylesbury Vale	315,969	148,209	464,178
Babergh	106,334	70,714	177,048
Barking & Dagenham	3,050,134	956,100	4,006,234
Barnet	4,258,319	871,528	5,129,847
Barnsley	40,000	179,299	219,299
Barrow-in-Furness	115,987	43,973	159,960
Basildon	576,925	234,262	811,187
Basingstoke & Deane	447,260	149,734	596,994
Bassetlaw	91,713	86,084	177,797
Bath & North East Somerset	270,829	85,993	356,822
Bedford	544,664	176,194	720,858
Bexley	1,839,447	553,783	2,393,230
Birmingham	4,674,636	1,392,040	6,066,676
Blaby	60,341	34,816	95,157
Blackburn with Darwen	77,894	112,902	190,796
Blackpool	269,818	132,063	401,881
Bolsover	41,607	64,974	106,581
Bolton	279,770	184,352	464,122
Boston	40,000	51,965	91,965
Bracknell Forest	375,230	82,801	458,031
Bradford	685,948	454,910	1,140,858
Braintree	198,948	121,005	319,953
Breckland	141,954	148,193	290,147
Brent	5,219,182	1,163,610	6,382,792
Brentwood	123,625	41,541	165,166
Brighton & Hove	5,480,580	400,611	5,881,191
Bristol	1,991,520	465,610	2,457,130
Broadland	165,094	82,962	248,056
Bromley	2,762,411	645,403	3,407,814
Bromsgrove	83,012	36,975	119,987

구분	노숙인 지원금	노숙인 감축 지원금	합계
Broxbourne	567,290	94,503	661,793
Broxtowe	117,384	52,605	169,989
Burnley	60,597	70,423	131,020
Bury	251,957	94,764	346,721
Calderdale	119,683	135,237	254,920
Cambridge	457,336	101,304	558,640
Camden	1,331,803	726,545	2,058,348
Cannock Chase	139,644	65,514	205,158
Canterbury	327,653	183,675	511,328
Carlisle	87,225	50,184	137,409
Castle Point	229,163	82,261	311,424
Central Bedfordshire	325,661	186,888	512,549
Charnwood	141,844	78,864	220,708
Chelmsford	653,596	117,353	770,949
Cheltenham	220,250	63,637	283,887
Cherwell	265,225	142,826	408,051
Cheshire East	263,108	116,019	379,127
Cheshire West & Chester	472,761	129,603	602,364
Chesterfield	54,359	85,066	139,425
Chichester	187,830	113,014	300,844
Chiltern	121,905	44,314	166,219
Chorley	54,605	41,465	96,070
City of London	106,064	17,638	123,702
Colchester	615,729	175,163	790,892
Copeland	45,190	36,024	81,214
Corby	193,850	59,387	253,237
Cornwall	846,349	497,673	1,344,022
Cotswold	50,559	37,529	88,088
Coventry	738,555	300,987	1,039,542
Craven	40,000	17,716	57,716
Crawley	610,376	141,520	751,896
Croydon	5,462,491	1,192,095	6,654,586
Dacorum	374,044	108,794	482,838
Darlington	67,759	43,409	111,168
Dartford	362,679	137,140	499,819
Daventry	47,875	36,331	84,206
Derby	525,558	220,808	746,366
Derbyshire Dales	62,358	27,927	90,285
Doncaster	307,662	229,781	537,443

구분	노숙인 지원금	노숙인 감축 지원금	합계
Dover	231,902	172,245	404,147
Dudley	205,965	247,597	453,562
Durham	170,451	224,165	394,616
Ealing	3,994,445	1,068,912	5,063,357
East Cambridgeshire	221,908	55,762	277,670
East Devon	111,394	70,206	181,600
East Hampshire	263,462	82,469	345,931
East Hertfordshire	162,425	65,761	228,186
East Lindsey	176,182	137,224	313,406
East Northamptonshire	68,735	42,567	111,302
East Riding of Yorkshire	233,494	129,467	362,961
East Staffordshire	142,180	72,287	214,467
Eastbourne	403,356	151,561	554,917
Eastleigh	189,127	89,274	278,401
Eden	40,000	18,175	58,175
Elmbridge	365,255	72,121	437,376
Enfield	7,163,422	1,184,670	8,348,092
Epping Forest	358,720	107,152	465,872
Epsom & Ewell	377,218	46,913	424,131
Erewash	68,285	70,888	139,173
Exeter	385,512	80,604	466,116
Fareham	164,683	69,722	234,405
Fenland	124,561	139,935	264,496
Folkestone & Hythe	256,190	180,650	436,840
Forest of Dean	40,000	59,414	99,414
Fylde	42,766	26,655	69,421
Gateshead	236,048	90,721	326,769
Gedling	150,374	57,222	207,596
Gloucester	466,908	107,451	574,359
Gosport	378,486	116,405	494,891
Gravesham	104,964	151,379	256,343
Great Yarmouth	107,037	178,346	285,383
Greenwich	2,215,366	963,601	3,178,967
Guildford	243,927	92,325	336,252
Hackney	3,636,756	1,251,960	4,888,716
Halton	165,371	87,385	252,756
Hambleton	61,178	26,687	87,865
Hammersmith & Fulham	2,805,420	568,346	3,373,766
Harborough	40,000	24,183	64,183

구분	노숙인 지원금	노숙인 감축 지원금	합계
Haringey	6,725,515	1,041,269	7,766,784
Harlow	360,351	100,551	460,902
Harrogate	293,689	42,735	336,424
Harrow	1,478,165	517,498	1,995,663
Hart	190,224	35,474	225,698
Hartlepool	54,167	51,867	106,034
Hastings	745,258	211,517	956,775
Havant	306,009	182,300	488,309
Havering	1,515,115	595,726	2,110,841
Herefordshire	147,758	116,266	264,024
Hertsmere	272,701	78,761	351,462
High Peak	78,488	47,052	125,540
Hillingdon	1,378,029	764,523	2,142,552
Hinckley & Bosworth	127,312	49,362	176,674
Horsham	206,410	93,462	299,872
Hounslow	1,723,056	800,787	2,523,843
Huntingdonshire	446,656	120,698	567,354
Hyndburn	40,000	58,403	98,403
Ipswich	364,825	193,088	557,913
Isle of Wight	446,983	219,080	666,063
Isles of Scilly	0	1,026	1,026
Islington	2,141,442	906,280	3,047,722
Kensington & Chelsea	3,779,590	462,762	4,242,352
Kettering	183,394	63,518	246,912
King's Lynn & West Norfolk	196,668	195,271	391,939
Kingston upon Hull	422,915	258,285	681,200
Kingston upon Thames	1,164,437	274,856	1,439,293
Kirklees	483,141	269,562	752,703
Knowsley	181,713	135,395	317,108
Lambeth	3,991,730	1,140,350	5,132,080
Lancaster	325,114	73,370	398,484
Leeds	1,130,007	526,345	1,656,352
Leicester	290,491	357,752	648,243
Lewes	335,716	107,583	443,299
Lewisham	3,137,363	1,113,802	4,251,165
Lichfield	118,023	41,857	159,880
Lincoln	188,128	86,863	274,991
Liverpool	736,179	441,728	1,177,907
Luton	3,344,024	300,807	3,644,831

구분	노숙인 지원금	노숙인 감축 지원금	합계
Maidstone	470,496	186,373	656,869
Maldon	62,853	49,501	112,354
Malvern Hills	57,455	40,208	97,663
Manchester	2,101,431	461,130	2,562,561
Mansfield	146,221	101,190	247,411
Medway Towns	894,843	441,932	1,336,775
Melton	58,023	20,888	78,911
Mendip	137,225	72,682	209,907
Merton	715,812	415,709	1,131,521
Mid Devon	101,845	52,707	154,552
Mid Suffolk	77,337	73,504	150,841
Mid Sussex	280,925	77,071	357,996
Middlesbrough	73,395	90,281	163,676
Milton Keynes	1,403,930	320,917	1,724,847
Mole Valley	174,298	55,144	229,442
New Forest	364,436	155,456	519,892
Newark & Sherwood	99,173	76,239	175,412
Newcastle upon Tyne	214,709	141,981	356,690
Newcastle-under-Lyme	40,000	78,531	118,531
Newham	9,354,132	1,432,928	10,787,060
North Devon	239,872	75,308	315,180
North East Derbyshire	40,000	57,390	97,390
North East Lincolnshire	135,382	122,341	257,723
North Hertfordshire	173,376	83,992	257,368
North Kesteven	139,970	43,707	183,677
North Lincolnshire	172,372	92,846	265,218
North Norfolk	135,362	119,390	254,752
North Somerset	300,477	129,021	429,498
North Tyneside	162,077	72,860	234,937
North Warwickshire	94,029	37,206	131,235
North West Leicestershire	40,000	48,545	88,545
Northampton	731,531	171,535	903,066
Northumberland	230,260	112,268	342,528
Norwich	237,684	211,229	448,913
Nottingham	592,258	376,777	969,035
Nuneaton & Bedworth	159,719	97,217	256,936
Oadby & Wigston	92,506	24,116	116,622
Oldham	193,534	164,434	357,968
Oxford	755,936	171,327	927,263



구분	노숙인 지원금	노숙인 감축 지원금	합계
Pendle	68,965	59,110	128,075
Peterborough	882,212	303,303	1,185,515
Plymouth	501,076	266,919	767,995
Portsmouth	816,437	384,529	1,200,966
Preston	108,613	88,153	196,766
Reading	1,146,366	212,761	1,359,127
Redbridge	4,207,545	719,443	4,926,988
Redcar & Cleveland	60,797	64,667	125,464
Redditch	193,040	61,332	254,372
Reigate & Banstead	469,982	110,711	580,693
Ribble Valley	40,000	13,393	53,393
Richmond upon Thames	979,322	255,422	1,234,744
Richmondshire	95,628	15,785	111,413
Rochdale	353,952	159,367	513,319
Rochford	191,531	49,286	240,817
Rossendale	60,113	35,907	96,020
Rother	275,692	125,650	401,342
Rotherham	172,524	191,061	363,585
Rugby	193,257	48,490	241,747
Runnymede	222,540	70,240	292,780
Rushcliffe	97,470	27,558	125,028
Rushmoor	286,969	100,540	387,509
Rutland	40,000	10,852	50,852
Ryedale	40,000	21,017	61,017
Salford	474,567	183,193	657,760
Sandwell	570,108	365,891	935,999
Scarborough	261,844	69,809	331,653
Sedgemoor	188,484	99,710	288,194
Sefton	205,940	156,715	362,655
Selby	65,041	27,711	92,752
Sevenoaks	264,630	99,413	364,043
Sheffield	491,515	385,067	876,582
Shropshire	359,395	176,010	535,405
Slough	592,557	227,544	820,101
Solihull	609,929	119,600	729,529
South Bucks	181,783	44,127	225,910
South Cambridgeshire	363,686	72,572	436,258
South Derbyshire	118,421	49,401	167,822
South Gloucestershire	396,369	125,605	521,974

구분	노숙인 지원금	노숙인 감축 지원금	합계
South Hams	74,996	45,099	120,095
South Holland	65,987	54,859	120,846
South Kesteven	198,226	62,459	260,685
South Lakeland	82,377	27,506	109,883
South Norfolk	69,287	99,676	168,963
South Northamptonshire	113,294	23,091	136,385
South Oxfordshire	203,648	78,976	282,624
South Ribble	63,788	35,665	99,453
South Somerset	253,761	110,979	364,740
South Staffordshire	43,123	47,147	90,270
South Tyneside	137,840	75,170	213,010
Southampton	601,687	451,461	1,053,148
Southend-on-Sea	268,829	221,389	490,218
Southwark	3,615,745	1,127,032	4,742,777
Spelthorne	428,725	98,633	527,358
St Albans	337,396	66,643	404,039
St Helens	85,752	119,447	205,199
Stafford	96,330	59,547	155,877
Staffordshire Moorlands	67,819	47,414	115,233
Stevenage	313,089	93,722	406,811
Stockport	396,238	127,903	524,141
Stockton-on-Tees	151,021	80,750	231,771
Stoke-on-Trent	306,370	282,814	589,184
Stratford-on-Avon	246,367	47,939	294,306
Stroud	105,183	48,977	154,160
Sunderland	91,507	134,713	226,220
Surrey Heath	229,797	47,635	277,432
Sutton	1,169,725	393,725	1,563,450
Swale	280,201	267,210	547,411
Swindon	1,609,663	157,558	1,767,221
Tameside	327,970	148,716	476,686
Tamworth	145,855	51,740	197,595
Tandridge	186,928	69,164	256,092
Teignbridge	266,151	80,467	346,618
Telford & Wrekin	121,103	142,343	263,446
Tendring	425,167	241,022	666,189
Test Valley	201,381	99,234	300,615
Tewkesbury	126,747	42,852	169,599
Thanet	415,641	295,093	710,734

구분	노숙인 지원금	노숙인 감축 지원금	합계
Three Rivers	174,083	49,805	223,888
Thurrock	512,504	195,794	708,298
Tonbridge & Malling	189,227	115,625	304,852
Torbay	467,538	145,436	612,974
Torridge	143,627	60,432	204,059
Tower Hamlets	3,884,968	1,220,540	5,105,508
Trafford	410,620	80,043	490,663
Tunbridge Wells	246,373	88,722	335,095
Uttlesford	105,359	44,772	150,131
Vale of White Horse	113,492	74,272	187,764
Wakefield	330,188	230,162	560,350
Walsall	345,592	286,490	632,082
Waltham Forest	4,158,368	960,033	5,118,401
Wandsworth	3,211,381	746,390	3,957,771
Warrington	317,357	83,548	400,905
Warwick	228,035	54,803	282,838
Watford	456,775	80,863	537,638
Waverley	479,923	62,550	542,473
Wealden	339,475	131,031	470,506
Wellingborough	132,473	56,193	188,666
Welwyn Hatfield	280,374	94,618	374,992
West Berkshire	69,585	104,834	174,419
West Devon	108,472	38,204	146,676
West Lancashire	40,000	44,720	84,720
West Lindsey	65,813	62,987	128,800
West Oxfordshire	134,522	63,359	197,881
Westminster	5,510,730	714,731	6,225,461
Wigan	358,967	176,487	535,454
Wiltshire	501,990	255,257	757,247
Winchester	154,479	79,413	233,892
Windsor & Maidenhead	1,314,972	83,991	1,398,963
Wirral	100,655	201,314	301,969
Woking	257,315	72,629	329,944
Wokingham	338,056	65,253	403,309
Wolverhampton	383,266	269,477	652,743
Worcester	318,665	66,641	385,306
Worthing	151,922	124,375	276,297
Wychavon	222,618	64,323	286,941
Wycombe	376,223	124,657	500,880

구분	노숙인 지원금	노숙인 감축 지원금	합계
Wyre	145,234	48,831	194,065
Wyre Forest	209,998	72,649	282,647
York	205,644	60,131	265,775
Bournemouth, Christ church and Poole	1,181,860	274,127	1,455,987
Dorset Council	442,352	225,777	668,129
East Suffolk	172,248	263,315	435,563
Somerset West and Taunton	238,361	112,253	350,614
West Suffolk	391,638	157,581	549,219

자료: MHCLG. (2019).

### 3. 특정·특별보조금 현황

- 영국의 특정·특별보조금은 우리나라 국고보조금과 유사하며, 총 의존재원  
이내 특정·특별보조금과 총 의존재원 이외 특정·특별보조금으로 구분됨
  - 총 의존재원 이내 특정·특별보조금(Grants Inside AEF)은 개별 중앙정  
부 부처가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수입보조금으로, 동 보조금의 목적은 지방  
정부의 핵심 서비스 제공임
  - 총 의존재원 이외 특정·특별보조금(Grants outside AEF)은 개별 중앙정  
부 부처에서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수익보조금이나, 동 보조금이 서비스를  
관리하는 제3자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는 중간자 역할을 함
  - 총 의존재원 이내 특정·특별보조금과 총 의존재원 이외 특정·특별보조금의  
가장 큰 차이는 보조금 관련 책임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의 여부이며,  
전자는 지방정부에게 후자는 제3자에게 있음
- 2015-16년 회계연도 기준 잉글랜드의 특정·특별보조금은 대표적으로 다  
음과 같음

〈표 3-17〉 잉글랜드의 특정·특별보조금

구분	보조금	담당부처
총 의존재원 이내 보조금	Dedicated Schools Grant (DSG)	교육부
	Pupil Premium Grant	교육부
	Education Services Grant	교육부
	Universal Infants Free School Meals	교육부
	GLA Transport Grant	교통부
	Public Health Grant	보건사회복지부
	Adult Social Care Implementation 2015-16	보건사회복지부
	Housing Benefit Subsidy Admin Grant	노동연금부
	New Homes Bonus	주택, 지역사회, 지방정부부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지방정부부
Other grants within AEF		
총 의존재원 이외 보조금	Adult and Community Learning from Skills Funding Agency	기업혁신기술부
	Sixth Form Funding from the Education Funding Agency	교육부
	Mandatory Rent Allowances: subsidy	노동연금부
	Mandatory Rent Rebates outside HRA: subsidy	노동연금부
	Rent Rebates Granted to HRA Tenants: subsidy	노동연금부
	Other grants outside AEF	

주: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for Health and Social Care,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주택, 지역사회, 지방정부부=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자료: DCLG(2016).

- 2019-20년 회계연도 기준 잉글랜드의 특정·특별보조금은 597.4억 파운드이며, 2015-16 회계연도의 625.7억 파운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총 의존재원 내 특정·특별보조금과 총 의존재원 이외 특정·특별보조금이 각각 408.3억 파운드(68.3%), 189.1억 파운드(31.7%)로 총 의존재원 내 보조금 비중이 더 큼

- 총 의존재원 내 특정·특별보조금의 비율은 2015-16년 64.1%에서 2019-20년 68.3%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총 의존재원 이외 특정·특별보조금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3-18〉 잉글랜드의 특정·특별보조금 세출예산 현황

(단위: 천 파운드)

구분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Grants Within Aggregate External Finance (AEF)						
102	Dedicated Schools Grant (DSG)	28,065,062	26,904,470	26,516,187	26,462,303	28,436,113
103	Pupil Premium Grant	1,654,570	1,527,325	1,409,084	1,332,413	1,282,196
106	Education Services Grant	563,953	497,770	131,986	-	-
107	Universal Infants Free School Meals	442,291	467,285	444,920	435,788	361,867
221	GLA Transport Grant	594,616	458,608	236,218	0	614
313	Public Health Grant	3,032,475	3,388,208	3,090,158	3,011,452	2,933,495
315	Social Care Support Grant	-	-	-	-	382,577
317	Rural Services Delivery Grant	-	-	-	55,124	59,235
318	Adult Social Care Grant	195,315	18,348	270,336	150,680	-
323	Improved Better Care Fund	-	-	-	1,433,783	1,690,546
328	Winter Pressures Grant	-	-	-	236,212	226,036
330	Former Independent Living Fund recipient grant	-	-	-	150,772	152,254
401	Flexible Homelessness Support Grant	-	-	-	200,479	165,611
406	Housing Benefit Subsidy Admin Grant	294,746	249,804	227,098	188,441	228,065
540	New Homes Bonus	1,108,118	1,438,098	1,211,727	941,157	894,647
543	Localised Council Tax support administration subsidy grant	-	-	-	66,570	61,579
545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1,276,780	1,271,754	1,296,802	1,289,038	1,220,362

구분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698	Other grants within AEF	2,891,196	2,996,291	4,495,108	3,595,121	2,731,389
699	Total Revenue Grants Within AEF	40,119,123	39,217,961	39,329,624	39,549,332	40,826,586
Grants Outside Aggregate External Finance (AEF)						
715	Adult and Community Learning from Skills Funding Agency	218,826	207,920	210,513	200,046	294,915
716	Sixth Form Funding from the Education Funding Agency (EFA)	694,670	597,716	538,268	474,993	522,133
745	Mandatory Rent Allowances: subsidy	15,984,555	15,503,537	14,706,629	13,563,294	13,265,207
746	Mandatory Rent Rebates outside HRA: subsidy	794,821	762,344	854,318	782,206	1,149,836
747	Rent Rebates Granted to HRA Tenants: subsidy	4,151,221	3,971,493	3,578,240	3,425,554	3,212,323
798	Other grants outside AEF	608,330	565,461	590,371	680,507	467,135
799	Total Revenue Grants Outside AEF	22,452,422	21,608,472	20,478,339	19,126,600	18,911,549
800	Total Specific And Special Revenue Grants	62,571,545	60,826,432	59,807,963	58,675,931	59,738,135

자료: Local Authority revenue expenditure and financing England: 2015-2020 Individual local authority data - outturn, <http://gov.uk>.

- 총 의존재원 내 특정·특별보조금은 2019-20년 회계기준 408.3억 파운드이며, Dedicated School Grant가 284억 파운드로 6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Dedicated School Grant는 단위학교로 배분되는 예산의 근간으로, 2006-07년 회계연도부터 기존의 공식에 의한 보조금 체계를 대체하며 도입됨
  - Pupil Premium Grant는 저소득층 학생들과 평균적인 학생들 사이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 지원금임

- Public Health Grant는 금연, 아동 건강 서비스, 성 건강 클리닉, 약물 및 알코올 서비스를 포함하여 중요한 예방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임
  - Private Financing Initiative는 지방정부가 신규 또는 개선된 자본 자산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부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기법으로, 지방정부에 PFI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수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보조금임
- 총 의존재원 이외 특정·특별보조금은 2019-20년 회계기준 189.1억 파운드임
- 임대료 수당(Rent Allowances), 비공영주택 거주자 임대료 할인(Rent Rebates to Non-HRA Tenants), 공영주택 거주자 임대료 할인(Rent Rebates to HRA Tenants)을 포함하는 의무주거급여(Mandatory Housing Benefits)가 176.3억 파운드(9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주거보조금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Housing Benefit)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제도로, 소득보조의 성격이 강함
  - 임대료 할인은 공영주택과 비공영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출한 임대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임
  - 전체 주거급여 금액은 2015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대료 수당(Rent Allowance)과 공영주택 거주자 임대료 할인(Rent Rebates to HRA Tenant) 보조금은 줄어드는 반면, 비공영주택 거주자 임대료 할인 보조금은 증가하는 추세임

#### 4. 지방정부 사례

- 영국 지방정부의 보조금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도시(런던), 중대도시(리버풀), 소도시(캔터버리)의 정부 활동별 수입원을 검토하였음



- 먼저 런던시는 공공안전(police pension, counter terrorism, national cyber security program, action fraud managed service) 분야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수령함

〈표 3-19〉 런던시의 정부서비스별 보조금 수입

(단위: 백만 파운드)

정부기능/프로그램	2017/18 보조금 금액	2018/19 보조금 금액
Police Pension	18.5	19.5
Counter Terrorism	4.8	6.2
National Cyber Security Programme	4.2	5.3
National Enabling Programme	1.9	0.4
National and International Capital City grant	4.5	0
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au	8.0	4.0
National Lead Force for Fraud	2.5	2.5
Home Office-Other	1.5	1.0
Action Fraud Managed Services	0	5.5
Economic Crime Capability	0	1.1
National to Local Fraud & Cyber Data Sharing	0	1.2
Housing and Council Tax Benefit	5.2	4.5
HM Courts and Tribunals Service	5.7	5.5
Dedicated Schools Grant	2.6	2.8
Department for Education- Other	0.2	1.2
Cost of Collection Allowance	2.0	2.0
Top up and tariff reconciliation	3.0	0
Ministry of Housing, Communication and Local Governmnet - Other	0.4	1.9
Public Health	1.7	1.6
Department of Health - Other	0.2	0.3
Transport for London	3.3	3.3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4	1.6
Greater London Authority	0.3	0.9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0.2	0.2
Arts Council England	0.5	0.4
Other revenue grants (Government)	1.9	1.4

자료: The City of London Corporation (2019).

- 리버풀시는 교육(Dedicated Schools Grants)과 근로/실업급여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benefit) 분야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수령함

〈표 3-20〉 리버풀 시의 정부서비스별 보조금 수입

(단위: 천 파운드)

정부기능/프로그램	2017/18 보조금 금액	2-18/19 보조금 금액
Dedicated Schools Grant(DSG)	308,003	317,368
DWP Benefit Subsidy	246,321	237,722
Public Health	46,008	44,825
Pupil Premium Grant	25,718	25,550
SFA Schools Sixth form	15,319	14,019
Capital Grants used to fund REFCUS	16,354	7,553
SFA adult skills & community learning	5,161	4,842
Universal Infant Free school meals	4,797	4,574
Independent Living Fund	4,592	4,447
Single investment fund- culture	650	4,282
Tackling troubled families	2,914	3,814
Syrian Refugee resettlement scheme	2,630	3,376
Winter pressures	0	2,957
Ways to work ESF	3,133	2,891
DWP benefit Administration Grant	2,956	2,706
Asylum Seekers grant	1,330	2,612
Primary PE and Sport	1,765	2,156
Discretionary housing grant	2,105	1,999
Other revenue grants	12,940	18,452

자료: Liverpool City Council (2019).

- 캔터버리시는 주거와 관련한 분야(Rent Allowance, Rent rebates, Housing specified grants for disabled facilities)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수령함

〈표 3-21〉 캔터버리시의 정부서비스별 보조금 수입

(단위: 천 파운드)

정부기능/프로그램	2017/18 보조금 금액	2018/19 보조금 금액
Rent Allowances	29,160	27,287
Rent rebates	15,220	14,535
Benefits administration	608	562
NDR administration	241	229
Other	569	861
Housing specified grants for disabled facilities	968	1,164
Environment agency (Coast and flood protection)	53	0

자료: Canterbury city council. (2019).



# 제4장

## 독일의 국고보조 사업 현황

---

제1절 정부 간 관계

제2절 보조금 제도 및 유형

제3절 보조금 자원분담 현황



## 제4장

독일의 국고보조사업 현황<sup>13)</sup>

KRILA

## 제1절 정부 간 관계

## 1. 기본구조

## 가. 정부계층

- 독일은 16개 주(Land)를 근간으로 국가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연방국가(Bundesstaat)임(홍근석·김봉균, 2019)
  - 연방정부(Bundesregierung), 주정부(Landesregierung), 군(Kreis)·자치시(Kreisfreie Stadt), 게마인데(Gemeinde) 등의 4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독일의 연방정부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주정부는 광역자치단체, 군·자치시는 시·군·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 게마인데는 읍·면·동에 해당함
  - 독일은 우리나라의 읍·면·동에 해당하는 게마인데를 정부계층에 포함하고 헌법상<sup>14)</sup> 보장하고 있음

〈표 4-1〉 독일 지방자치단체 현황(2017년 기준)

주정부	계	군	자치시	게마인데
계	11,451	294	107	11,054
Baden-Württemberg	1,145	35	9	1,101
Bayern	2,152	71	25	2,056
Berlin	1	0	1	1
Brandenburg	435	14	4	417
Bremen	2	0	2	2
Hamburg	1	0	1	1
Hessen	452	21	5	426

13) “제4장 독일의 국고보조사업 현황”의 내용은 안권욱(2018)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14) 독일 연방헌법 제28조 제2항 제1문에서 게마인데의 설치를 보장하고 있다.

주정부	계	군	자치시	계마인데
Mecklenburg-Vorpommern	761	6	2	753
Niedersachsen	989	37	8	944
Nordrhein-Westfalen	449	31	22	396
Rheinland-Pfalz	2,341	24	12	2,305
Saaland	58	6	0	52
Sachsen	436	10	3	423
Sachsen-Anhalt	232	11	3	218
Schleswig-Holstein	1,125	11	4	1,110
Thüringen	872	17	6	849

자료: 독일연방 통계청(2017년), 안권욱(2018).

## 나. 연방헌법 상 규정

- 독일의 정부 간 관계는 연방헌법에 규정된 원칙에 기초하는 지방분권적 시스템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음
  - 독일의 연방헌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전권한성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정치·행정적 지위에서 각자의 권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직적 정부계층 간에 각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한 지방분권적 정부 간 관계의 특성을 지님(홍근석·김봉균, 2019)
- 첫째, 연방헌법 제79조 제3항의 연방국가성의 불가침성원칙이 있음
  - 연방헌법 제79조 제3항은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이 규정에 의하면 각 주정부는 원칙적으로 연방정부의 입법과정에 관여할 수 있으며, 그 입법 관여권한은 연방헌법의 개정에도 침해될 수 없다는 연방국가성의 불가침성을 보장하고 있음(대구경북분권혁신아카데미, 2015)
  - 이 규정으로부터 주정부가 최소한의 독자적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음
- 둘째, 연방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의 보충성원칙이 있음



-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은 보충성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의 존중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보충성원칙은 수직적 정부 간 기능관계의 배분원칙으로서, 기능적 권한을 일차적으로 주민가까이에 배분해야한다는 당위적 의무규정을 의미함(홍근석·김봉균, 2019)
- 셋째, 연방헌법 제28조 제2항의 자치단체 전권한성원칙(Allzuständigkeitsprinzip)이 있음
  - 헌법 제2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역 공동체의 모든 업무 및 사항들을 자기책임 하에 규율·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음
  - 이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일의 정치·행정시스템에 있어 세 번째 자치계층으로서의 존재임을 보장하며, 이와 동시에 지역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전권한성원칙의 보장을 의미함(Nassmacher, 1999; Knemeyer, 1999)

## 2. 사무배분 원칙

- 독일의 연방헌법은 제7장 연방입법권, 제23조 제1항 보충성원칙, 제28조 제2항 자치단체 전권한성원칙 등의 규정에서 정부 간 사무배분에 관한 기본원칙과 함께 연방정부의 주요 사무들을 명시하고 있음
  - 연방헌법은 제7장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입법권한의 구분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 즉, 연방헌법은 입법대상 권한의 규정을 통해 각각의 사무권한을 배분하고 있음
- 연방헌법 규정상 사무는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제73조 연방정부의 배타적 입법권 규정에 따른 연방정부 전속사무임
  - 둘째, 제74조 연방·주정부의 경합적 입법권 규정에 따른 연방·주정부 경합사무임

〈표 4-2〉 연방헌법 제73조 규정에 따른 사무배분(연방정부 전속사무)

구분	사무	참고
연방정부 전속사무	(1)외교·민간보호·국방, (2)연방국적, (3)거주이전·여권·이민·입국·범죄자인도, (4)통화·화폐·주화제도·도량형·표준시간, (5)관세구역·통상구역·항해·조약·관세·국경보호·무역·지불 거래 등, (6)독일문화제 국외반출보호, (7)항공교통, (8)연방철도(철도의 개설·유지·운영·철도이용료 등), (9)우편·전신, (10)연방정부·연방직속기관 근무자의 법률관계, (11)영업 권리보호·저작권·출판권, (12)연방경찰·국제테러방어 <sup>15)</sup> , (13)연방·주정부 협력사항(형사경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보호, 연방·주의 존립·헌법수호, 독일연방공화국 대외이익) <sup>16)</sup> , (14)연방통계, (15)총포·화약, (16)전상자·전사자의 부양, 전쟁포로 구호, (17)핵에너지(생산·이용, 시설의 건립·운영, 핵·방사선 위험방지, 방사능 물질폐기 등)	연방정부에 입법권을 부여함으로써, 연방정부의 전속사무로 규정된 사항들
주정부 사무	(1)연방정부 전속사무를 제외한 사무, (2)연방정부 전속사무 중, 주정부에 위임한 사무	(1)연방헌법 제74조 연방·주정부 경합사무의 일부제외, (2)연방헌법 제71조

자료: 흥근석·김봉균(2019).

- 먼저 연방정부 전속사무는 연방헌법 제73조 제1항에서 17개 항목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73조 제1항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sup>17)</sup>에 의해 주정부의 사무권한에 속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4조 규정에 의한 연방·주정부 경합사무가 있기 때문에, 제73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 외의 모든 사무가 주정부의 사무권한에 속하는 것은 아님

15) 이 사항에 대한 연방입법은 연방상원(Bundesrat)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연방헌법 제73조 제2항).

16) 연방정부의 전속입법 사항이지만, 연방주정부의 공동·협력 사무에 해당한다.

17) 본 기본법이 연방입법권한으로 부여하지 않은 사항은 주정부가 입법권을 가진다.

- 또한 연방정부 전속사무 중에서 연방이 주정부에 그 사무의 입법을 위임한 경우, 제71조 규정에 의해서 주정부는 그 사무에 대해 법정수임사무로서의 권한을 가진(홍근석·김봉균, 2019)

〈표 4-3〉 연방헌법 제74조 규정에 따른 사무배분(연방정부·주정부 경합사무)

구분	사무	참고
경합사무	(1)민법, 형법, 법원조직, 재판절차(구류집행법 제외), 변호사, 공증인·법률상담(1호), (2)가족관계 증명제도(2호), (3)결사법(3호), (4)난민·추방자(6호), (5)전쟁피해·복구(9호), (6)희생자묘지(전몰자·전쟁희생자·독재정치희생자 등의 묘지)(10호), (7)기업조직, 노동(노동자보호, 직업소 등을 포함)(12호), (8)연방전속사무·경합사무분야에서 그 범위문제가 있는 공용수용권 관련 사항(14호), (9)경제권력 지위남용방지(16호), (10)농업·임업생산의 지원(경지정리 제외), 식량확보, 농·임업 생산물의 수출입, 원양어업, 연안어업·해안보호(17호), (11)토지(도로저급기여금 제외), 토지거래(도시계획법상), 주택·주택건설 보조금, 광산노동자의 거주지·주택건설, 구동독발행채무보조(18호), (12)전염성질병조치, 의사·진료직업, 의료업허가, 약국·약품, 의료기재, 치료제·마취제·독극물(19호), (13)항해·항로(원양·연안·내륙의 항해·항로표식), 내륙수로, 기상관측소(21호), (14)철도(연방·산악철도 제외)(23호), (15)폐기물처리, 공기정화, 소음처리(24호), (16)자치단체·공법상 기관의 공무원·법관의 지위·권리·의무(경력·급여·부양 제외)(27호), (17)수렵(28호), (18)자연·자연경관의 보호(29호), (19)토지분배(30호), (20)지역개발계획(31호), (21)수자원관리(32호), (22)대학 입학허가·졸업(33호)	연방정부가 입법권행사하지 않는 경우, 주정부 사무 (제72조 제1항)
연방전체  (1)균형 생활관계 형성  (2)이익	(21)외국인 체류·정주법(4호), (22)공적구호(양로원법 제외)(7호), (23)광·공업, 에너지산업, 은행·증권거래소, 사법상의 보험 등(상점의 영업·폐점시간, 숙박, 오락장, 윤락, 박람회, 전시회, 일반시장 등의 경제활동 제외)(11호), (24)직업훈련지원, 학술연구진흥(13호), (25)공유재산(토지천연자원생산수단 등을 포함한), 공동경제 전환관련 다양한 형태의 사항(제15호), (26)병원의 의료수가·경제적 지원(19a호), (27)동·식물의 식자재, 기호·생필품, 동물사료, 농·임업 종자·묘목의 거래보호, 식물병충해, 동물보호(20호), (28)자동차관련 사항, 도로(도로교통, 지방도로의 건설·유지), 교통차로·공용도로 이용요금·보상금의 징수·배분(22호), (29)국가배상(25호), (30)인간의 인공수정, 유전자정보 검사, 유전자의 인공적 변경, 장기·조직·세포의 이식(26호)	연방정부에 사무권한 우선적 배분 (제72조 제2항)

자료: 홍근석·김봉균(2019).

- 다음으로 연방헌법 제74조 제1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경합사무를 연방·주정부 경합적 입법권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첫째, 주정부 사무는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연방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사항이 포함됨
  - 둘째,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72조 제1항의 사무들 중 연방 전체의 균형적 생활관계의 형성 및 연방 전체이익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연방정부의 사무가 됨(홍근석·김봉균, 2019)
- 이러한 연방헌법 상 규정을 근거로 연방재무성은 2016년 기준 연방정부·주정부·자치단체의 주요 사무영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첫째, 연방정부의 사무영역은 ① 외교적 사항, ② 연방재무행정, ③ 사회적 보장시스템, ④ 초지역적 경제육성, ⑤ 교통사항, ⑥ 통화 등임
  - 둘째, 주정부 사무영역은 ① 교육, ② 연구·학문, ③ 자치단체 행정지휘·재정 지원, ④ 문화, ⑤ 주재무행정, ⑥ 대중교통, ⑦ 경찰, ⑧ 지역경제육성 등임
  - 셋째, 자치단체 사무영역은 ① 폐수·쓰레기처리, ② 건축계획, ③ 유아·청소년지원·유아주간보호, ④ 박물관·스포츠시설·극장, ⑤ 지역 학교, ⑥ 지역 교통사항, ⑦ 지역 상수·에너지 공급, ⑧ 도로청소 등임
- 독일의 정부 간 사무배분체계의 구조적 특징은 공동사무에 있음
  - 독일의 경우 공동사무를 연방헌법(제8a장)에 명시하고, 공동사무의 처리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공동사무의 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재정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헌법상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는 특정 정부계층이 사무 및 재정에 관한 권한을 독점할 수 없도록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권력의 분산을 적극적으로 명시한다는 것을 의미함

### 3. 사회보장 관리체계

- 독일의 공적보험은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 보험기금이 연금보험, 질병보험, 실업보험, 재해보험, 요양보험 및 각종 보험의 관리기관임
- 노동시장정책부터 연금보험, 실업보험, 실업부조 등 사회보장 전반은 연방 노동사회부에 감독책임이 부여됨
  - 연방보건부는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담당하며, 연방가족·고령자·여성·청년부는 아동정책과 가족정책을 담당함
  - 보험기금은 전국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참여하는 공법상의 자치법인이며, 개별기금은 사회보장법 상 자치운영원칙에 따라 관리됨
- 실업보험 및 실업부조 운영주체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고용공단임
- 노동시장이나 직업훈련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 일자리나 훈련기관 알선, 실업수당 및 아동급여 지급 등을 수행함
  - 연방고용공단은 2003년 노동시장 개혁안에 따라 연방노동청을 재편하였으며, 주노동청은 연방고용공단의 고용공단지역지부로 편입하였음
  - 연방고용공단의 자치운영기구인 행정위원회는 노동자, 고용주, 공익 대표가 1/3씩 동수로 참여함
- 독일에서는 새로운 사회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다양한 사회부조 급여가 존재하고 있음
- 장애인에게 의료급여, 직업 및 복지 급여를 제공하며, 이들을 통합급여로 일원화하여 지급함
  - 아동급여, 연방양육급여, 육아휴직, 생계비지원, 보충자녀수당 등은 지역고용공단 가족급여과가 관리운영의 주체이며, 연방가족·고령자·여성·청년부가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감독함
  - 모성보호급여는 각 주에 설치된 관리기관이 집행하며, 연방수준에서는 연방가족·고령자·여성·청년부가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감독함
  - 전쟁피해자 보상은 연방부양청 또는 주부양청이 관리하며, 주택수당은 연방운수·건설·도시개발부에 의해 관리되는 사회보장급여임

## 제2절 보조금 제도 및 유형

### 1. 보조금 제도

- 연방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독일의 연방보조금은 공동사무 연방부담금·위임사무 연방교부금·연방지원금·연방보충교부금 등 4개 영역으로 분류됨
  - 공동사무 연방부담금은 지역경제구조개선, 농업구조·해변보호개선, 대형연구시설, 학술공동체연구시설, 교육성취도국제비교·확인 등 6개의 부담금을 포함함
  - 위임사무 연방교부금은 연방교육교부금, 주거교부금, 부모교부금, 아동생계교부금,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 노령·기본생계보장교부금 등 6개의 교부금을 포함함
  - 주·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에 대한 연방지원금으로는 도시건설지원금, 철도인프라지원금, 기타지원금 등이 있음
  - 연방보충교부금은 일반보충교부금, 특별보충교부금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별보충교부금은 다시 특별행정수요교부금, 사회기반취약교부금 등으로 구분됨

〈표 4-4〉 독일 연방헌법 상 연방보조금 유형

구분	연방보조금	연방헌법상 근거
공동사무 연방부담금	지역경제구조개선 부담금	제91a조 제1항, 제3항
	농업구조·해변보호개선 부담금	
	대형연구시설 부담금	제91b조 제1항, 제3항
	학술공동체연구시설 부담금	
	연구진흥 부담금	
	교육성취도국제비교·확인 부담금	제91b조 제2항, 제3항
위임사무 연방교부금	연방교육교부금	제104a조 제3항
	주거교부금	
	부모교부금	
	아동생계교부금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	
	노령·기본생계보장교부금	
주·자치단체 투자사업 연방지원금	도시건설지원금	제104b조
	철도인프라지원금	
	기타지원금	
연방보충교부금	일반보충교부금	제107조 제2항
	특별보충교부금	

자료: 연방재무성(2020).

## 2. 유형

### 가. 공동사무 연방부담금

- 공동사무 연방부담금은 연방헌법 제91a조와 제91b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동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임<sup>18)</sup>

18) 연방헌법에서는 제91a조, 제91b조 뿐만 아니라, 제91c조, 제91d조, 제91e조 등에서도 공동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방재무성의 연방·주정부 재정관계보고서(Bund·Länder Finanzbeziehungen auf der Grundlage der Finanzverfassung)는 제91a조, 제91b조 두 규정과 관련한 재정사항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 역시 이들 두 규정과 관련한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연방·주정부 간의 재정관계를 분석하였다. 참고로 연방헌법 제91c조

- 공동사무(Gemeinschaftsaufgaben)는 1969년에 연방헌법 상의 제도로 설치되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방부담금 역시 당시에 도입됨
-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지역 간 산업·경제적 격차(regionale disparität) 완화를 통한 국토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및 삶의 동질적 수준 유지하는데 있음
- 공동사무와 관련된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동사무 재원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지를 연방헌법 제91a조 제3항과 제91b조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제91a조 제3항은 지역경제구조개선(연방헌법 제91a조 제1항 제1문)과 농업구조·해변보호개선(연방헌법 제91a조 제1항 제2문)을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원부담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
  - 지역경제구조개선 사업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절반(1/2)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경제구조개선 사업에서 연방정부의 부담금은 각 주정부 사업재원의 50%임
  - 농업구조·해변보호개선 사업재원은 연방정부가 최소 절반(1/2)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농업구조·해변보호개선에서 연방정부부담금은 각 주정부 사업재원의 50% 이상임
  - 지역경제구조개선과 농업구조·해변보호개선 사업의 재원은 모든 주정부에 동일한 비중으로 적용되어, 각 주정부의 재정격차에 따른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지 않음

---

는 정보기술시스템의 계획수립·설치·운영과 관련한 공동사무이며, 재정부담은 연방·주정부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91d조는 행정능률성비교·촉진과 관련한 공동사무이며, 연방·주정부 재정부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제91e조는 실업자의 기본생활 보장(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과 관련한 공동사무이며, 재정부담은 연방정부가 모두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91b조 제3항은 대형연구시설, 학술공동체연구시설, 교육성취도국제비교·확인 등의 사업수행을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원부담을 연방정부와 주정부 양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명시함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부담비율은 개별 사업마다 매년 다르게 설정될 수 있음

#### 나. 위임사무 연방교부금

- 위임사무 연방교부금은 연방헌법 제104a조 제3항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연방위임사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임
- 제104a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정부의 연방위임사무는 다양한 법률에 기초하여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사무이며, 이러한 현금급여 사무는 연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되어 있음
-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주요 사회복지정책은 연방 교육교부금, 주거교부금, 부모교부금, 아동생계교부금,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 노령·기본생계보장교부금 등 여섯 영역이며, 각각의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됨

#### 1) 연방교육교부금

- 연방교육교부금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위임하여 정책대상자인 학생 개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급여제도임
  - 직접적으로는 연방교육육성법(BAföG)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연방사회복지법 I (SGB I)<sup>19)</sup> 제68조 제1문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

19) 첫 번째 사회복지법률 -일반사항부분-(Das Erste Buch Sozialgesetzbuch -Allgemeiner Teil-)이다.

- 이 제도의 1차적 목적은 학생의 생계·학업비용을 지원하여(BAföG 제1조) 학생이 부업(Nebenarbeit) 없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교육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음
- 연방교육교부금의 수혜자는 일반학교 10학기 이상의 학생, 전문학교·직업 전문학교 학생, 아카데미·대학교의 학생 등임(BAföG 제2조)
  - 아카데미(Akademien)는 일반 학교·대학교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하여 졸업장을 수여하는 기관으로 제한됨
  - 한편 박사과정 학생은 정책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연방교육교부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방정부가 100% 모두 부담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이에 대한 재정부담 의무를 부여받고 있지 않음(연방재무성, 2019)<sup>20)</sup>

## 2) 주거교부금

- 주거교부금은 개인에게 임대주거시설비용·소유주거시설비용<sup>21)</sup>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제도임
  - 직접적으로는 주거급여법률(WoGG<sup>22)</sup>)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방사회복지법 I (SGB I) 제68조 제10문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이 제도의 1차적 목적은 각 개인 및 가족의 삶의 주거공간시설을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임(WoGG 제1조 제1항)
- 수혜자는 임대주거시설비용·소유주거시설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개인임(WoGG 제3조 제1항)

20) 연방정부가 100% 재정 부담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

21) 본인 스스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주거(ein selbst genutzter Wohneigentum)에 대한 부담을 연방이 지원하는 것을 의미 한다.

22) "Wohngeldgesetz"의 약칭이다.

- 교부대상시설은 임대주거시설(Mietwohnung)과 소유주거시설(Eigentumswohnung)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교부대상자는 원칙적으로 ① 가구원수, ② 부담수준, ③ 수입수준 등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개인임
- 주거교부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음

### 3) 부모교부금

- 부모교부금은 영·유아가 있는 부모에게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제도임
  - 직접적으로는 부모급여법률(BEEG<sup>23</sup>)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방사회복지법 I(SGB I) 제68조 제15문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이 제도의 1차적 목적은 영·유아보육에 따른 부모생업활동제한·표준생활유지수입의 감소문제 해결 및 출산장려와 가족정책목적 실현 등에 있음<sup>24)</sup>
  - 본 교부금은 기존의 보육교부금(Erziehungsgeld)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2006년에 입안되고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부모교부금의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생후 12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부모이며, 한부모의 경우 최대 14개월까지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음(BEEG 제4조 제3항)
  - 부모교부금 수혜자의 핵심요건은 ① 주거지, ② 동거, ③ 돌봄, ④ 생업활동, ⑤ 기타 등 5가지 사항<sup>25)</sup>이 있음(BEEG 제1조 제1항)

23)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의 약칭이다.

24) 이 제도의 취지를 BEEG에서 직접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법률의 전반적 내용으로 볼 때, 이 제도는 이들 두 가지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5) 영·유아와 부모가 독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영·유아와 부모가 동일한 가족 공간에 있어야 한다. 부모가 영·유아를 직접 돌봐야 하며, 영·유아보육으로 인해 부모의 생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록 부모는 아니지만 앞의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부모교부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 부모교부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방정부가 100% 모두 부담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이 제도에 대한 재정부담 의무를 부여받고 있지 않음(연방재무성, 2019)

#### 4) 아동생계교부금

- 아동생계교부금은 아동의 생계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제도임
  - 직접적으로는 아동생계교부금법(UnterhaltsVG<sup>26</sup>)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방사회복지법 I(SGB I) 제68조 제14문 규정에 근거를 둠
- 이 제도의 1차적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생계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아동이며, 교부금 수혜자의 핵심요건에는 ① 연령, ② 부모혼인관계, ③ 생활비관계, ④ 연방사회복지법 II(SGB II)상의 규정 등 4가지 사항<sup>27</sup>이 있음(UnterhaltsVG 제1조 제1항, 제1a항)
- 아동생계교부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방정부가 40%, 주정부가 60%를 부담하고 있음(연방재무성, 2019)
  - 아동생계교부금은 연방정부로부터 위임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주정부가 교부금 재원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음

26) "Gesetz zur Sicherung des Unterhalts von Kindern alleinstehender Mütter und Väter durch Unterhaltsvorschüsse oder -ausfallleistungen"의 약칭이다.

27) 첫째, 수급아동의 연령기준은 2가지이다. 교부금의 수급대상자는 기본적으로 12세까지의 아동이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은 연방사회복지법 II(SGB II)상의 예외적 경우이다. 둘째, 수급대상 아동은 그의 부모가 편부모, 미혼자(예: 미혼모·부), 이혼, 양친의 장기간 별거 등 4가지의 경우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과 함께 동거하는 편부모가 다른 한편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규칙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아동은 아동생계교부금의 수급대상자가 된다. 넷째, 연방사회복지법 II에 따른 사회복지교부금을 받지 않거나, 연방 사회복지법 II 제9조에 따라 특별히 도움이 요구되는 등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은 18세까지 아동생계교부금의 수급대상자가 된다.

## 5)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

-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KdU)은 개인에게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제도임
  - 직접적으로는 연방복지지원법(BSHG) 제22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지만, 연방사회복지법II(SGBII-실업급여II) 제22조, 연방사회복지법XII(SGBXII-복지지원) 제35조, 연방난민지원법(AsylbLG) 제3조 등 사회복지관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은 주거임대료와 같은 시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교부금(WoG)과는 구분됨
- 이 제도의 1차적 목적은 주거생활과정에 꼭 필요한 전기·가스·수도·난방·온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에 있으며, 나아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음
- 교부금의 수혜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을 스스로 지불할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으로, 사회복지법II 제22조 제7항은 그 수혜자의 예를 열거하여 명시<sup>28)</sup>하고 있음
  - 각 개인이 지원받는 현금급여는 가구원 수(Haushaltsgröße)와 적정 주거공간규모(Angemessener Wohnraum)를 고려하여 결정됨
  - 즉,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요구되는 적정 주거공간규모의 범위 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전기·가스·수도·난방·온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측정하여 현금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에 소요되는 재원부담은 주무부처인 연방노동·복지성(Bundesministerium für Arbeit·Soziales)에 의해 매 회계연도마다 제시되며, 연방상원(Bundesrat)의 동의를 얻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부담비율이 결정됨

28) 이 규정에 의한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생활부가비용을 지불할 능력에 한계가 있어, 주거계약 해지압박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둘째, 주거생활과 관련한 각종 사용료를 지불할 능력에 한계가 있어, 전기 공급 절단압박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셋째, 술·마약 중독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이다. 넷째, 채무가 많은 경우이다.

〈표 4-5〉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 급여수준 결정기준

가구원 수(Haushaltsgröße)	적정 주거공간규모(Angemessener Wohnraum)
1인 가구(1 Person)	방 1개, 50 m <sup>2</sup> 까지(1 Raum, bis zu 50 m <sup>2</sup> )
2인 가구(2 Person)	방 2개, 65 m <sup>2</sup> 까지(2 Räume, bis zu 65 m <sup>2</sup> )
3인 가구(3 Person)	방 3개, 80 m <sup>2</sup> 까지(3 Räume, bis zu 80 m <sup>2</sup> )
4인 가구(4 Person)	방 4개, 95 m <sup>2</sup> 까지(4 Räume, bis zu 95 m <sup>2</sup> )
추가 가구원 당(jede weitere Person)	방 1개+15 m <sup>2</sup> 면적 추가(+ 1 Raum, + 15 m <sup>2</sup> )

## 6) 노령·기본생계보장교부금

- 노령·기본생계보장교부금은 특별한 생계지원이 요구되는 노령계층과 저소득계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급여제도임
  - 연방사회복지법XIII(SGB XII)<sup>29)</sup> 제4장 노령·수입감소에 따른 기본생계보장(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음
- 이 제도의 목적은 노령계층과 저소득계층의 수입 감소(Erwerbsminderung)<sup>30)</sup> 부분을 지원하여 기본생계를 보장하는 것임
  - 교부금 수혜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노령계층과 저소득계층이며, 교부금 수혜의 핵심요건은 연령(SGB XII 제41조)과 수입(SGB XII 제43조)<sup>31)</sup>임
- 노령·기본생계보장교부금에 소요되는 자원부담은 주무부처인 연방노동·복지성(Bundesministerium für Arbeit·Soziales)에 의해 매 회계연도마다 제시되며, 연방상원(Bundesrat)의 동의를 얻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부담 비율이 확정됨

29) "Sozialgesetzbuch Zwölftes Buch(XII) -Sozialhilfe-"의 약칭이다.

30) 특히 직업·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의미한다.

31) 노령계층의 교부금대상자는 65세 이상이며, 저소득계층은 18세 이상이다. 그리고 연간 총수입이 100,000EU 이하인 가구(부양의무가 있는 연령의 아이·부모)는 해당 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다.

- 2019년 기준, 연방정부가 100% 부담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재정부담은 없음

#### 다. 연방지원금

- 연방지원금은 연방헌법 제104b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investitionen)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금임
  - 연방헌법 제104b조는 투자사업 중 지역균형발전과 이를 위한 경제발전 촉진에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경우에,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연방헌법 제104b조 규정에 따른 연방지원금은 ① 경제균형의 장애요소 제거(제1항 제1문), ② 연방전체의 경제력 격차 조정(제1항 제2문), ③ 경제발전 촉진(제1항 제3문)을 목적으로 함
- 연방정부는 지원금을 1차적으로 주정부에 제공하며, 주정부가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거나 주정부가 직접 투자사업을 실시함
  - 즉,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방지원금은 주정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됨
- 헌법상 지원대상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연방지원금 대상은 도시건설(Städtebauförderung)과 철도인프라(Schieneninfrastruktur) 2가지임
- 도시건설연방지원금은 연방·주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있음
  - 각 정부의 재정부담에 대한 사항은 도시건설행정협정(Verwaltungsvereinbarung Städtebauförderung: VwvStädtebau)에 명시되어 있음
  - 이 협정은 연방내무성과 주정부<sup>32)</sup>에 의해 이루어지며, 연방상원(Bundesrat)의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임

32) 이 협정은 연방내무성 장관과 16개 주의 해당 부처 장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새롭게 체결하게 된다.

- 연방정부는 원칙적으로 도시건설사업 전체예산의 33%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최소한 연방정부와 동일 수준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 (VwvStädtebau 제2조 제1항)
- 그러나 주요 사업의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고택(Altbau)수리의 경우 연방정부가 45%를 부담하고, 주정부는 최소한 연방정부와 동일한 비중(45%)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조 제2항 제1문단)
  - 문화재건축물(städtebauliches Denkmalschutz)수리의 경우는 연방정부가 40%를 부담하고, 주정부는 최소한 연방정부와 동일한 비중(4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조 제2항 제2문단)
  - 한편 동독지역에서 일반주택의 재건축,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고택수리, 도시인프라의 재건설 등은 연방정부가 전체예산의 50%를 부담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동일한 비중(50%)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제2조 제2항 제3문단 a·b·c 문장)
  -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재정부담을 하지 않음

#### 라. 연방보충교부금

- 연방보충교부금은 연방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재정조정제도임
  - 재정력이 약한 지역에 연방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음
- 연방보충교부금은 크게 일반보충교부금(Allgemeine BEZ: AgBEZ), 특별보충교부금(Sonderbedarfs BEZ: SoBEZ)으로 구분됨(FAG<sup>33</sup>) 제11조 제1항)

33) 「연방·주정부 간의 재정조정제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en Finanzausgleich zwischen



- 연방보충교부금은 공동세원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의 주정부별 차등배분과 주정부 간 재정조정<sup>34)</sup> 등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각 지역의 재정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지방재정조정을 위한 연방교부금임
  - 주정부 간 재정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재정조정 제도임<sup>35)</sup>
  - 연방보충교부금을 통한 재정조정수준은 연방보충교부금에 의한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 각 주정부의 재정력 순위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1) 일반보충교부금

- 일반보충교부금은 주정부의 재정력지수가 평균 이하인 주정부의 재정력 보완 및 재정격차 해소를 1차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반보충교부금의 수급대상은 재정력지수가 평균 이하인 주정부이며, 주정부의 재정력은 해당 주의 주민 1인당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함
  - 전국 평균 주민 1인당 재정력지수(100%) 대비 99.5% 이하인 주정부가 일반보충교부금의 교부대상임
- 일반보충교부금은 주정부 재정부족분의 77.5%까지 교부할 수 있지만, 일반보충교부금을 수단으로 한 재정조정 수준은 최대 98.5%까지임

Bund und Ländern)」의 약칭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9년까지의 재정조정법(FAG)을 기준으로 연방보충교부금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 34) 이 제도는 2020년부터 그 근간이 폐지되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연방보충교부금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 35) 물론, 부가가치세의 각 주정부별 안분에서 재정력을 기준으로 각 주정부의 부가가치세 몫을 배분하는 재정조정과정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독일 16개 주정부 전체 부가가치세 몫의 일부(25%)를 재정조정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안분은 16개 주정부 재원으로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각 주정부에 재정지원을 하는 연방보충교부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 다만, 주정부 간 재정력 순위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2) 특별보충교부금

- 특별보충교부금은 지역의 특수한 상황·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인 재정력 격차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보충교부금과는 차이가 있음
- 특별보충교부금은 특별행정수요교부금과 사회기반취약교부금 등으로 이루어짐
- 특별행정수요교부금은 규모가 작은 주정부, 인구밀도가 낮은 주정부, 특별한 정치·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주정부가 교부대상임
  - 규모와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한 특별행정수요교부금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작거나 인구밀도가 낮아서, 주민 1인당 재정지출이 특별하게 많은 지역의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사회기반취약교부금은 구조적 실업문제가 심각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수입은 적고, 재정지출은 많은 지역의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3. 정부 간 재원분담 원칙

### 가. 공동사무 연방부담금

- 공동사무 연방부담금은 연방헌법 상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되며, 사무·사업유형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재원분담 원칙이 상이하게 적용됨
- 제91a조 제1항에 의한 공동사무에서 지역경제구조개선 사무·사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50%씩 균등하게 재원을 부담을 하지만, 농업구조·해변보호개선 사무·사업에서 주정부는 50%이상 재원을 부담하고 있음

- 제91b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연구시설, 연구진흥, 교육성취도비교 등과 관련한 사무·사업의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의·협정에 따라 부담하고 있음

〈표 4-6〉 공동사무·사업에서 연방헌법상 연방·주정부 자원분담 원칙

구분	연방·주정부 재정분담원칙	사업 분야
연방헌법 제91a조 제1항 공동사무	50% 균등 분담	지역경제구조개선
	50%이상 연방 분담	농업구조·해변보호개선
연방헌법 제91b조 제1항 공동사무	연방주정부 협의·협정	대형연구시설
		학술공동체연구시설
		연구진흥
연방헌법 제91b조 제2항 공동사무	연방주정부 협의·협정	교육성취도국제비교·확인

#### 나. 위임사무 연방교부금

- 독일의 위임사무 연방교부금은 연방헌법 제104a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크게 6개 유형으로 구분됨
  - 연방교육교부금, 주거교부금, 부모교부금, 아동생계교부금,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 노령·기본생계보장교부금 등 6개 유형으로 구분됨
  - 이들 6개 유형은 모두 사회복지 분야 사무임
- 위임사무 연방교부금 집행에 있어 개별 사무의 유형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자원분담 원칙은 다르게 적용됨

〈표 4-7〉 위임사무 연방교부금에 대한 연방·주정부 간 재정부담 현황

구분	연방정부	주정부	법률근거
연방교육교부금	100	0	BAföG, SGB I 제68조 제1문
주거교부금	50	50	WoGG, SGB I 제68조 제15문
부모교부금	100	0	BEEG, SGB I 제68조 제15문
아동생계교부금	40	60	UnterhaltsVG, SGB I 제68조 제14문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 교부금 <sup>36)</sup>	58.3(최고)	41.7(최저)	BSHG, SGB II, SGBXII, AsylbLG
	43.6(최저)	56.4(최고)	
노령·기본생계보장 교부금	100	0	SGB XII 제4장

자료: 연방재무성, 각 회계연도별 「연방·주정부 재정관계보고서」.

- 연방교육교부금은 연방교육육성법(BAföG)과 연방사회복지법 I(SGB I) 제 68조 제1문 규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교부금임
  - 100% 연방정부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정부는 재원을 부담하지 않음
- 주거교부금은 주거급여법률(WoGG)과 연방사회복지법 I(SGB I) 제68조 제10문 규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교부금임
  - 소요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절반(50%)씩 부담함
- 부모교부금 부모급여법률(BEEG), 연방사회복지법 I(SGB I) 제68조 제15 문 규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교부금임
  - 100% 연방정부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정부는 재원을 부담하지 않음
- 아동생계교부금은 아동생계교부금법(UnterhaltsVG), 연방사회복지법 I(SGB I) 제68조 제14문 규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교부금임
  - 소요 재원은 연방정부가 40%, 주정부가 60%를 각각 부담함
-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은 연방복지지원법(BSHG) 제22조, 연방사회복지법II(SGB II-실업급여II) 제22조, 연방사회복지법XII(SGBXII-복지

36) 회계연도 2019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지원) 제35조, 연방난민지원법(AsylbLG) 제3조 등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교부금임
- 소요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절반(50%)씩 부담하며, 회계연도 2018년에 연방정부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4-8〉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의 2018년 연방정부 부담금 비율(%)

주정부	연방 비율	주정부	연방 비율
Baden-Württemberg(BW)	53,9	Niedersachsen(NI)	49,9
Bayern(BY)	50,3	Nordrhein-Westfalen(NW)	46,8
Berlin(BE)	46,9	Rheinland-Pfalz(RP)	58,3
Brandenburg(BB)	43,6	Saarland(SL)	52,9
Bremen(HB)	49,3	Sachsen(AN)	45,1
Hamburg(HH)	55,9	Sachsen-Anhalt(ST)	44,8
Hessen(HE)	51,0	Schleswig-Holstein(SH)	49,4
Mecklenburg-Vorpommern(MV)	44,9	Thüringen(TH)	47,8

자료: Verordnung zur Festlegung und Anpassung der Bundesbeteiligung an den Leistungen für Unterkunft und Heizung für das Jahr 2019.

- 노령·기본생계보장교부금은 연방사회복지법XII(SGB XII) “제4장 노령·수입감소에 따른 기본생계보장(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에 준해서 운영되고 있는 교부금임
  - 2019년 현재 100% 연방정부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정부는 재원을 부담하지 않음
  - 이 교부금은 2013년 이전까지 연방정부 75%, 주정부 25% 각각 자원 분담·부담하였음(SGB XII 제46a조 제1항 제1문)
  - 2014년부터 이 교부금의 100%를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있음(SGB XII 제46a조 제1항 제2문)<sup>37)</sup>

37) SGB XII 제46a조(Erstattung durch den Bund)는 제1항에서 "Der Bund erstattet den

#### 다. 연방지원금

- 연방헌법 제104b조에 근거하고 있는 연방지원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도시 건설육성(Städtebauförderung)사업은 다음과 같은 재원분담 원칙에 준해 추진되고 있음
- 연방지원금의 기본적인 재원분담 원칙은 연방정부가 33%, 주정부가 33%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부담하고 남은 나머지 재원을 부담하는 것임
- 고택수리·재건축 사업은 연방정부 45%, 주정부 45%이상, 지방자치단체 10% 이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도시건축문화재 수리·재건축 사업은 연방정부 40%, 주정부 40%이상, 지방자치단체 20% 이하 부담을 원칙으로 함
- 동독지역의 도시재건축·고택수리·인프라재건설 등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없음

---

#### Ländern

1. im Jahr 2013 einen Anteil von 75 Prozent und
2. ab dem Jahr 2014 jeweils einen Anteil von 100 Prozent, der im jeweiligen Kalenderjahr den für die Ausführung des Gesetzes nach diesem Kapitel zuständigen Trägern entstandenen Nettoausgaben für Geldleistungen nach diesem Kapitel."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 4-9〉 연방지원금 운영에서 연방·주·자치단체 간의 재정부담의 원칙현황

도시건설연방지원금 사업		연방·주·자치단체 재정부담 비중현황 (%)			법률근거
		연방정부	주정부	자치단체	
기본부담원칙		33(1/3)	33이상	나머지	VVStädtebau 제2조 제1항
고택수리		45	45이상	100이하	VVStädtebau 제2조 제2항 제1문단
도시건축문화제		40	40이상	200이하	VVStädtebau 제2조 제2항 제2문단
동독 지역	주택재건축	50	50	0	VVStädtebau 제2조 제2항 제3문단
	고택수리	50	50	0	
	인프라재건설	50	50	0	

#### 라. 연방보충교부금

- 연방보충교부금(BEZ)은 연방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정조정법(FAG)에 의해 운영됨
- 연방보충교부금은 일반보충교부금(AgBEZ) 특별보충교부금(SoBEZ)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FAG 제11조 제1항), 특별보충교부금은 다시 특별행정수요교부금, 사회기반취약교부금, 동독지역교부금 등 세 유형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제3절 보조금 재원분담 현황

#### 1.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재원분담 현황

##### 가. 공동사무 연방부담금

- 지역경제구조개선 사무·사업 분야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연방헌법상 재원분담 원칙에 준해 엄격하게 50%씩 부담하고 있음
- 농업구조개선 사무·사업의 경우 연방정부가 60%를 부담하고, 주정부가 40%를 부담하고 있음
- 해변보호개선 사무·사업의 경우 연방정부가 70%를 부담하고, 주정부가 30%를 부담하고 있음
- 연구진흥 사무·사업의 경우 연방정부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음
  - 이 분야는 대학특화전략(Hochschul Exzellenzstrategie)사업과 혁신대학(Innovative Hochschule) 사업으로 크게 구분됨
  - 대학특화전략사업은 대학의 특화연구가 핵심이며, 연방정부가 전체소요재원의 75%를 부담하고 주정부가 25%를 부담함
  - 혁신대학은 아이디어·학문·과학기술 등의 이전(실용화)이 핵심이며, 연방정부가 전체소요예산의 90%를 부담하고 주정부가 10%를 부담함
  - 연구진흥 사무·사업 분야는 연방헌법상 공동사무 전체예산(연방정부 부담 기준)에서 56.5%를 차지하는 가장 규모가 큰 분야임



〈표 4-10〉 공동사무에서 연방·주정부의 실재 자원분담 현황 사례

공동사무 사업 사례	연방·주정부 실재 자원분담 비중 현황(%)			참고
	전체	연방 분담비중	주 분담비중	
지역경제구조개선	100	50	50	연방헌법
농업구조개선	100	60	40	연방헌법 50%이상
해변보호개선	100	70	30	
대학특화전략(연구진흥)	100	75	25	연방헌법 협의·협정
혁신대학(연구진흥)	100	90	10	

자료: Ministerium für Finanzen(2018b), 「연방재정보고서2019」, pp.139-140.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방부담금 평균 총액은 107억 유로이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지만 2018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음
  - 제91b조 제1항에 의한 연구시설·연구진흥 분야(88.7%)의 연방부담금이 전체 공동사무·사업의 연방부담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연구진흥 분야의 연방부담금이 전체 공동사무·사업의 연방부담금 중 56.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연구진흥의 핵심 분야인 대학특화전략·혁신대학사업의 연방부담금 비율이 각각 75%와 90%로 다른 공동사무의 연방부담금 비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연구진흥 분야의 연방지출 규모는 크지만, 주정부의 부담은 다른 공동사무의 연방부담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공동사무 연방부담금 중 연방정부의 자원부담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연구시설·연구진흥으로 나타남

〈표 4-11〉 공동사무·사업에서 연방부담금 운영현황

(단위: 억 유로)

구분	연방부담금(분담금) 종류	회계연도별 연방부담금액(억EU)				평균 (억EU)	비중 (%)
		14년	16년	17년	18년		
	총액	96	106	114	112	107(108) <sup>38)</sup>	100
연방헌법 제91a조 제1항 공동사무	지역경제구조개선	11	11	12	12	11.5	10.6
	농업구조·해변보호개선	5	5	5	5	5	
	농업구조·해변보호개선	6	6	7	7	6.5	
연방헌법 제91b조 제1항 공동사무	대형연구시설	85	94	101	99	95.75	88.7
	대형연구시설	25	27	29	30	27.75	
	학술공동체연구시설	5	6	7	7	6.25	
	연구진흥	55	61	66	62	61	56.5
연방헌법 제91b조 제2항 공동사무	교육성취도국제비교·확인	-	1	1	1	0.75	0.7
	교육성취도국제비교·확인	-	1	1	1	0.75	

자료 : 연방재무성, 각 회계연도별「연방·주정부 재정관계보고서」.

### 나. 위임사무 연방교부금

- 2018년 기준 위임사무 연방교부금 총액은 250억 유로이며, 2014년의 193억 유로 대비 29.5% 증가함
- 기타를 포함한 7개 위임사무 연방교부금 중 연방정부 부담규모가 가장 큰 것은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은 70억 유로이며, 기타를 포함한 7개의 위임사무 연방교부금 중 28.0%를 차지함
  - 그 다음 부모교부금은 2018년 기준으로 67억 유로(26.8%)이며, 노령·기본생계보장 교부금은 59억 유로(23.6%)로 나타남
  - 반면 아동생계교부금은 2018년 기준으로 9억 유로이며, 7개 위임사무 연방교부금 중 3.6%를 차지함

38) ( )안의 값은 평균 보조금액의 합계금액이다. 비중(%)은 각 공동사무·사업의 연방부담금이 전체 연방부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표 4-12〉 연방위임사무(사회복지 연방교부금)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부담 추이

(단위: 억 유로)

구분	14년	16년	17년	18년	증가율(% 14년-18년	비중(% 18년 기준
합계	193	226	238	250	29.5	100
연방교육교부금 (BAföG)	16	24	24	22	37.5	8.8
주거교부금 (WoGG)	4	6	6	5	25.0	2.0
부모교부금 (BEEG)	57	61	65	67	17.5	26.8
아동생계교부금 (UnterhaltsVG)	3	3	4	9	200.0	3.6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 (BSHG 등)	42	54	68	70	66.7	28.0
노령·기본생계보장 교부금 (SGB XII 제4장)	54	62	55	59	9.3	23.6
기타	17	17	18	19	11.8	7.6

자료: 연방재무성, 각 회계연도별 「연방·주정부 재정관계보고서」.

#### 다. 연방지원금

- 연방헌법 제104b조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도시건설 사업은 복지도시, 도시재건, 도시건축문화제, 역동적 도시중심, 소규모도시, 미래 도시녹지 등의 6개 프로젝트 영역에 걸쳐 있음
- 이들 6개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지원금은 각 회계연도별 「도시건설육성 행정협정(Verwaltungsvereinbarung Städtebauförderung: VVStädtebau)」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복지도시(Soziale Stadt)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지원금은 총 189,050천 유로임
  - 16개 주정부 중 Nordrhein-Westfalen(NW)이 43,950천 유로로 가장 큰 규모의 연방지원금을 받은 반면, Bremen(HB)이 1,847천 유로로 가장 작은 규모의 연방지원금을 받음

〈표 4-13〉 복지도시 건설사업 연방지원금 운영현황(2018년)

(단위: 천 유로, %)

주정부	비중	금액	주정부	비중	금액
BW	12.452	23,541	NI	9.422	17,812
BY	14.324	27,080	NW	23.248	43,950
BE(O)	1.679	3,174	RP	4.699	8,883
BE(W)	3.358	6,348	SL	1.241	2,346
BB	3.043	5,753	SN	4.868	9,203
HB	0.977	1,847	ST	2.856	5,399
HH	2.366	4,473	SH	3.413	6,452
HE	7.493	14,166	TH	2.521	4,766
MV	2.040	3,857	계	100	189,050

자료: 「도시건설육성 행정협정(VVStädtebau)2018」 제1조 제3항.

- 2018년 기준 도시재건(Stadtumbau)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지원금은 총 258,700천 유로임
- Sachsen(SN)이 가장 큰 규모의 연방지원금을 받은 반면, Bremen(HB)이 가장 작은 규모의 연방지원금을 받음

〈표 4-14〉 도시재건 건설사업 연방지원금 운영현황(2018년)

(단위: 천 유로, %)

구분	비중	금액	구분	비중	금액
BW	14.014	19,521	NI	12.244	17,056
BY	17.537	24,429	NW	28.659	39,922
BE(O)	7.281	8,694	RP	6.149	8,566
BE(W)	3.129	4,359	SL	2.121	2,955
BB	17.687	21,118	SN	29.845	35,635
HB	0.950	1,323	ST	17.703	21,137
HH	2.247	3,130	SH	3.937	5,484
HE	9.013	12,555	TH	15.765	18,823
MV	11.719	13,993	계	100	258,700

자료: 「도시건설육성 행정협정(VVStädtebau)2018」 제1조 제3항.

- 도시건축문화제(Städtebaulicher Denkmalschutz)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지원금은 총 109,450천 유로임
  - Sachsen(SN)이 16개 주정부 중 가장 큰 규모의 연방지원금을 받은 반면, Bremen(HB)이 역시 가장 작은 규모의 연방지원금을 받았음

〈표 4-15〉 도시건축문화제 건설사업 연방지원금 운영현황(2018년)

(단위: 천 유로, %)

구분	비중	금액	구분	비중	금액
BW	14.950	5,950	NI	11.701	4,657
BY	17.522	6,974	NW	27.542	10,962
BE(O)	9.523	6,633	RP	5.971	2,376
BE(W)	3.714	1,478	SL	1.819	724
BB	17.186	11,970	SN	29.519	20,560
HB	1.013	403	ST	16.764	11,676
HH	2.583	1,028	SH	3.984	1,586
HE	9.201	3,662	TH	15.576	10,849
MV	11.432	7,962	계	100	109,450

자료: 「도시건설육성 행정협정(VVStädtebau)2018」 제1조 제3항.

- 역동적 도시중심(Aktive Stadtzentren)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지원금은 총 109,450천 유로임
  - 16개의 주정부 중 Nordrhein-Westfalen(NW)이 가장 큰 규모의 연방지원금을 받은 반면, Bremen(HB)이 가장 작은 규모의 연방지원금을 받았음

〈표 4-16〉 역동적 도시중심 건설사업 연방지원금 운영현황(2018년)

구분	비중	금액	구분	비중	금액
BW	12.216	13,370	NI	9.202	10,072
BY	14.164	15,502	NW	21.727	23,780
BE(O)	1.518	1,662	RP	4.722	5,168
BE(W)	3.037	3,324	SL	1.343	1,470
BB	3.403	3,725	SN	6.038	6,609
HB	0.828	906	ST	3.578	3,916
HH	2.130	2,331	SH	3.206	3,509
HE	7.353	8,048	TH	3.236	3,542
MV	2.299	2,516	계	100	109,450

자료: 「도시건설육성 행정협정(VVStädtebau)2018」 제1조 제3항.

- 소규모도시(Kleinere Städte)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지원금은 총 69,650 천 유로임
  - 16개 주정부 중 Nordrhein-Westfalen(NW)이 가장 큰 규모의 연방지원금을 받은 반면, Bremen(HB)이 가장 작은 규모의 연방지원금을 받았음

〈표 4-17〉 소규모도시 건설사업 연방지원금 운영현황(2018년)

(단위: 천 유로, %)

구분	비중	금액	구분	비중	금액
BW	11.213	7,810	NI	9,213	6,417
BY	13.695	9,539	NW	21,496	14,972
BE(O)	1.282	893	RP	4,669	3,252
BE(W)	2.564	1,786	SL	1,442	1,004
BB	4.017	2,798	SN	6,933	4,829
HB	0.760	529	ST	4,423	3,081
HH	1.850	1,288	SH	3,103	2,161
HE	6.906	4,810	TH	3,744	2,608
MV	2.690	1,873	계	100	69,650

자료: 「도시건설육성 행정협정(VVStädtebau)2018」 제1조 제3항.

- 미래 도시녹지(Zukunft Stadtgrün) 프로젝트의 연방지원금은 총 49,750 천 유로임
  - 16개 주정부 중 Nordrhein-Westfalen(NW)이 가장 큰 규모의 연방지원금을 받은 반면, Bremen(HB)이 가장 작은 규모의 연방지원금을 받았음

〈표 4-18〉 미래 도시녹지 건설사업 연방지원금 운영현황(2018년)

(단위: 천 유로, %)

구분	비중	금액	구분	비중	금액
BW	12.452	6,195	NI	9.422	4,687
BY	14.324	7,126	NW	23.248	11,566
BE(O)	1.679	835	RP	4.699	2,338
BE(W)	3.358	1,671	SL	1.241	617
BB	3.043	1,514	SN	4.868	2,422
HB	0.977	486	ST	2.856	1,421
HH	2.366	1,177	SH	3.413	1,698
HE	7.493	3,728	TH	2.521	1,254
MV	2.040	1,015	계	100	49,750

자료: 「도시건설육성 행정협정(VVStädtebau)2018」 제1조 제3항 표1.

#### 라. 연방보충교부금

- 연방보충교부금은 일반보충교부금과 특별보충교부금으로 구분되며, 일반보충교부금과 특별보충교부금 모두 주정부의 매칭(matching)부담이 없음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 연방보충교부금 총액은 감소하고 있음
  - 일반보충교부금은 크게 증가한 반면, 특별보충교부금은 크게 감소하고 있음
  - 일반보충교부금은 2014년 3,517백만 유로에서 2018년 4,570백만 유로로 최근 5년간 1,053백만 유로(약 30%) 증가하였으며, 매년 점진적·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반면에 특별보충교부금은 2014년 7,072백만 유로에서 2018년 3,833백만 유로로 최근 5년간 3,239백만 유로(84.5%) 감소하였으며, 일반보충교부금과 반대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표 4-19〉 일반·특별보충교부금의 회계연도별 재원규모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방보충교부금(총액)	10,589	10,203	9,928	9,106	8,403
일반보충교부금(AgBEZ)	3,517	3,847	4,339	4,506	4,570
특별보충교부금(SoBEZ)	7,072	6,356	5,589	4,600	3,833

자료: Ministerium für Finanzen(2019), 「연방·주정부 재정관계보고서 2019」, p55.

## 2.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현황

### 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재정수입

- 회계연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재정수입 현황은 〈표 4-20〉과 같음<sup>39)</sup>
  -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재정수입은 지방세, 일반교부금, 목적교부금, 수수료, 기타수입으로 구성됨
  - 이 중에서 일반교부금은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목적교부금은 국고보조금과 기능이 동일함
- 20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총수입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2.7%이며, 2014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과거 서독 지역의 경우 지방세 비중이 44.4%인 반면, 과거 동독 지역은 32.5%로 지역 간 재정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39)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 등 3개의 도시주정부(Sadtstaat)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인 동시에 주(Land)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현황에서 제외하였다.



-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와 유사한 일반교부금의 비중은 2014년 22.0%에  
서 2018년 21.3%로 다소 감소하였음
  - 2018년 기준으로 과거 서독 지역의 일반교부금은 19.9%인 반면, 과거 동  
독 지역은 29.5%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과 유사한 목적교부금의 비중은 2014년 14.0%에  
서 2018년 16.2%로 증가하였음
  - 2018년 기준 과거 서독 지역의 목적교부금은 15.6%이며, 과거 동독 지역  
은 19.5%임

〈표 4-20〉 독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재정수입

(단위: 십억 유로,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수입	서독	162.9	100.0	174.1	100.0	187.3	100.0	196.5	100.0	203.8	100.0
	동독	28.2	100.0	29.0	100.0	31.0	100.0	32.2	100.0	33.2	100.0
	계	191.1	100.0	203.1	100.0	218.3	100.0	228.7	100.0	237.0	100.0
지방세	서독	71.1	43.7	75.9	43.6	80.2	42.8	85.7	43.6	90.4	44.4
	동독	8.4	29.8	8.9	30.5	9.5	30.7	10.2	31.7	10.8	32.5
	계	79.5	41.6	84.8	41.8	89.7	41.1	95.9	41.9	101.2	42.7
일반 교부금	서독	32.5	19.9	33.8	19.4	36.5	19.5	38.2	19.5	40.6	19.9
	동독	9.5	33.6	9.1	31.5	9.3	30.1	9.4	29.2	9.8	29.5
	계	42.0	22.0	42.9	21.1	45.8	21.0	47.6	20.8	50.4	21.3
목적 교부금	서독	22.3	13.7	26.7	15.3	31.5	16.8	32.6	16.6	31.9	15.6
	동독	4.5	16.1	5.2	17.9	6.3	20.2	6.4	19.8	6.5	19.5
	계	26.8	14.0	31.9	15.7	37.8	17.3	39.0	17.1	38.4	16.2
수수료	서독	15.1	9.3	15.6	9.0	16.4	8.8	16.7	8.5	17.5	8.6
	동독	2.2	7.8	2.3	7.8	2.3	7.5	3.4	7.6	2.4	7.3
	계	17.3	9.1	17.9	8.8	18.7	8.6	20.1	8.8	19.9	8.4
기타 수입	서독	21.9	13.4	22.1	12.7	22.7	12.1	23.2	11.8	23.3	11.4
	동독	3.6	12.7	3.5	12.2	3.6	11.5	3.7	11.6	3.7	11.1
	계	25.5	13.3	25.6	12.6	26.3	12.0	26.9	11.8	27.0	11.4

자료: 연방재무성(2019)를 바탕으로 정리.

#### 나.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속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서 주정부교부금과 지방세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총수입 중 주정부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9.0%에서 2016년 39.0%로 10%p 증가하였음
  - 그리고 지방세 비중은 2000년 37.0%에서 2016년 39.0%로 2%p 증가하였음
  -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수수료와 기타 수입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음

〈표 4-21〉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속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단위: %)

구분	2000년	2010년	2016년	차이(B-A)
지방세	37	38	39	2
주정부 교부금	29	35	39	10
수수료	12	7	9	-3
기타	22	19	13	-9

자료: 바덴-뷔르템베르크 재무부(2017)을 바탕으로 정리.

#### 다. 콘스탄츠(Konstanz)시 재정수입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속한 지방자치단체 중 콘스탄츠(Konstanz)시의 재정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총수입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5.97%에서 2020년 45.56%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소득·부가가치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총수입 중 주정부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2.92%에서 2020년 34.60%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일반교부금이 목적교부금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 국고보조금과 유사한 목적교부금은 2019년 13.64%에서 2020년 12.56%로 다소 감소하였음
- 주정부로부터의 목적교부금 중 유치원·유아돌봄교부금이 총수입의 5.33%(2020년 기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투자포괄교부금(2.71%), 학교교부금(1.83%), 대학지원금(1.07%)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4-22〉 콘스탄츠(Konstanz)시 세입 중 지방세와 주정부 교부금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금액(EU)	비중(%)	금액(EU)	비중(%)
예산총액	268,671,770	100	282,309,670	100
지방세	123,508,700	45.97	128,617,300	45.56
영업세	43,000,000	16.00	44,500,000	15.76
재산세(부동산분)	13,858,000	5.16	14,058,000	4.98
소득·부가가치세	59,012,900	21.59	61,288,000	21.71
가구(가족)세	3,737,800	1.39	3,871,300	1.34
기타	4,900,000	1.82	4,900,000	1.74
주정부 교부금	88,456,600	32.92	97,671,400	34.60
일반교부금	50,917,170	19.28	60,444,800	22.04
일반교부금	50,821,300	18.92	59,474,600	21.07
특별일반교부금	958,700	0.36	970,200	0.34
목적교부금	37,539,430	13.64	37,226,600	12.56
투자포괄교부금	7,562,700	2.81	7,652,700	2.71
대학지원금	3,256,600	1.21	3,338,400	1.18
카지노 자치단체분	3,067,800	1.14	3,067,800	1.09
학교교부금	5,154,200	1.92	5,154,200	1.83
유치원·유아돌봄교부금	14,469,200	5.39	15,035,900	5.33
기타목적교부금	3,166,100	1.18	2,977,600	1.05

자료: 콘스탄츠 회계과(2020)을 바탕으로 정리.

- 콘스탄츠(Konstanz)시의 사회복지 분야 세출은 대부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며, 현금급여 관련 지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23〉 콘스탄츠(Konstanz)시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 현황

구분	2019년(EU)	2020년(EU)
사회복지시설 운영	442,630	445,030
복지서비스 전달단체지원	228,000	229,400
사회복지증	600,000	600,000
주민화합(다문화 등)	112,000	112,000
청소년 사회복지활동	520,000	550,000
청소년 시설운영	415,000	415,000
청년지원	450,900	458,200
유치원운영지원	27,865,300	28,065,700
주간보호	567,500	568,000
병원신축(분담금)	1,800,000	1,800,000
시민건강관리	88,300	121,900
스포츠육성	1,495,080	1,571,580
주거시설개선	1,824,500	1,436,300

자료: 콘스탄츠 회계과(2020)을 바탕으로 정리.

- 독일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현금급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음
  - 사회복지 관련 현금급여는 각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있음
  - 위임사무 연방교부금 중 연방교육교부금, 부모교부금, 노령·기본생계보장 교부금은 연방정부가 100% 부담하고 있음
  - 주거교부금, 아동생계교부금,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법률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분담하고 있음
- 독일의 연방보조금 중 도시건설육성 관련 연방지원금의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을 규정하고 있음

# 제5장

## 일본의 국고보조 사업 현황

---

제1절 정부 간 관계

제2절 보조금 제도 및 유형

제3절 보조금 자원분담 현황



## 제5장

## 일본의 국고보조사업 현황

KRILA

## 제1절 정부 간 관계

## 1. 기본구조

## 가.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

- 일본 「지방자치법」 제1조와 제2조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의 역할은 동법 제1조의2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로서 존립에 관련된 사무, ②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민의 제 활동 혹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 준칙에 관한 사무, ③ 전국적 규모 혹은 전국적 시점에서 행해야 하는 시책 및 사업의 실시, ④ 기타 국가가 본래 수행해야 할 역할을 수행함
- 지방공공단체의 역할은 동법 제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공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 도모를 기본으로 지역 행정을 자주적, 종합적으로 실시함
  - 지방공공단체는 지역 사무 및 기타 사무를 수행하며,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처리함
- 지방공공단체 중에 광역(도도부현)의 역할은 동법 제2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
  - ① 광역에 걸친 것(광역사무), ② 시정촌에 관한 연락조정 관련된 것(연락조정사무), ③ 사무의 규모 또는 성질이 일반 시정촌이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보완사무)을 처리함

- 지방공공단체 중에 기초(시정촌)의 역할은 동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
  - 지방공공단체 사무 중 광역이 처리하는 것을 제외한 사무를 수행함
  - 단, 광역이 처리하는 사무 중 '보완사무'에 관해 시정촌은 당해 시정촌의 규모 및 능력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음

〈그림 5-1〉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주요 역할분담

	(보건위생)	(복지)	(교육)	(환경)	(마을만들기)	(치안·안전·방재)
<b>도부현</b>					중핵시·특례시가 처리하지 않는 사무	
					지정도시가 처리하지 않는 사무	
<b>지정도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취급자(일부)의 면허</li> <li>· 정신과병원 설치</li> <li>· 임시예방접종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사, 개조지원전문원 등록</li> <li>· 신체장애자 경성상당소</li> <li>· 지적장애자 경성상당소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학교 편제기준, 교직원 정수 결정</li> <li>· 사립학교, 시장준립 고등학교 설치인가</li> <li>· 高等学校の設置管理</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종 프론트류 회수업자 등록</li> <li>· 공해건강피해 보상급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구획 지정</li> <li>· 시가지개발사업 인가</li> <li>· 지정구간 1급하천, 2급하천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범죄조사, 운전면허 등)</li> </ul>
<b>중핵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장애자 입원 조치</li> <li>· 동물취급업 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상당소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비부담 교직원 임명, 급여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용 지하수의 재입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역구분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li> <li>· 지정구간의 국도, 현도 관리</li> <li>· 지정구간의 1급하천(일부), 2급하천(일부) 관리</li> </ul>	
<b>특례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설치</li> <li>· 음식점 영업종허가</li> <li>· 운전 이용허가</li> <li>· 어관업·공중욕장 경영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소, 양로노인촌 설치 인가, 감독</li> <li>· 개조서비스 사업자 지정</li> <li>· 신체장애자수첩 교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비부담 교직원 연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허가</li> <li>· 매연발생시설 설치 신청서 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핵시가 처리하나 특례시가 처리하지 않는 사무</li> </ul>	
<b>시정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촌 보건센터 설치</li> <li>· 건강증진사업 실시</li> <li>· 정기 예방접종 실시</li> <li>· 결핵관련 건강진단</li> <li>· 매장, 화장 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소 설치·운영</li> <li>· 생활보호(시 및 복지사쿠스 설치) 관련 처리</li> <li>· 양로노인촌 설치·운영</li> <li>· 장애자직립지원금부</li> <li>· 개조보편사업</li> <li>· 국민건강보험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학교 설치관리</li> <li>· 유치원 설치·운영</li> <li>· 현비부담 교직원 복무 감축, 근무성적 평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신청서 수리</li> <li>· 오수 또는 폐역을 배출하는 특정시설 설치 신청서 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폐기물 수납과 처리</li> <li>· 소음·진동, 악취를 규제하는 지역 지정, 규제기준 설정(시 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수도 정비·관리 운영</li> <li>· 도시계획결정(상하수도 등 관계)</li> <li>· 도시계획결정(상하수도 등 관계)</li> <li>· 도시기획결정(상하수도 등 이외)</li> <li>· 시장촌도·고랑의 건설·관리</li> <li>· 준용하천 관리</li> </ul>

자료: 오사카시 홈페이지, “地方公共団体の主な役割分担の現状” (2012년 4월).

## 나. 사무배분 원칙

- 일본의 「지방자치법」에서는 2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사무배분 원칙을 정하고 있음
  -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부령·부령·고시(政令·省令·告示) 등에 의해 지방공공단체에 관한 제도를 기획 입안하려는 경우임



- 국가가 어떤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법률로 특별히 정하고자 하는 경우(즉, 법정수탁사무로 하려고 하는 경우)임
- 법령 등으로 제도가 규정된 사무가 지방공공단체의 '법정수탁사무'이며, 법령 등으로 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사무는 '자치사무'가 됨
  - 법정수탁사무는 국가가 본래 수행해야 역할과 관련된 업무이지만 이를 국가가 법률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말함
  - 법정수탁사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새롭게 설정하지 않도록 하면서 지방분권 추진의 관점에서 적절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지방분권추진 일괄법 부칙 제250조)
  - 그리고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사무라 하더라도 편리성·효율성·종합성 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있는 것이 있음(김성주, 2017)
- 중앙정부가 지방공공단체의 사무 처리에 관여할 때에는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정부령으로 정해야 하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기본원칙(입법기준)에 따라야 함
  - 중앙정부가 지방공공단체에 관여할 때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선에서 하며,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배려해야 함(동법 제245조의 3 제1항)

〈표 5-1〉 중앙정부가 지방공공단체에 관여할 때의 기본원칙

구분	자치사무	법정수탁사무
조언·권고	○	○
자료 제출 요구	○	○
시정 요구	○	-
동의	특정한 경우 이외 설치 없음*	○
허가·인가·승인	특정한 경우 이외 설치 없음*	○
지시	특정한 경우 이외 설치 없음*	○ (시정 요구)

구분	자치사무	법정수탁사무
대신 집행	원칙적으로 설치 없음**	○
협약	특정한 경우 이외 설치 없음*	특정한 경우 이외 설치 없음*
기타 관여	원칙적으로 설치 없음**	원칙적으로 설치 없음**

- 주 1. 위 표에서 ○ 표시가 되어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일반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중앙정부 관여가 있는 사무가 됨
2. \*는 예를 들어 '협약'의 경우 중앙정부나 도도부현 시책 간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공공단체가 '협약'이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함(동법 제245조의 3 제3항).
3. \*\*중앙정부는 가능한 한 지방공공단체에게, 자치사무의 처리에 관한 '대신 집행'이나 '기타 관여', 법정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기타 관여'를 받거나 필요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함(동법 제245조의 3 제2항)

자료: 総務省(2017)「国と地方の役割分担について」.

- 일본에서 지방공공단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근거로 이를 해석하고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동법 제2조 제12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에 관한 법령이나 시책을 해석·운용할 때,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게 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중앙정부는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해당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지방자치법 제2조 제13항)
  - 즉,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가 본래 수행해야 할 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을 자주적이고 종합적으로 넓게 담당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임(김성주, 2017)

## 2. 지방재정 규모

### 가. 지방세출

- 일본의 경우 2017년 순계 결산액 기준 총 세출액은 168조 2,178엔임
  - 이 중에서 지방의 세출(97조 2,650억 엔)이 중앙정부의 세출(70조 9,537억 엔)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음

- 2017년 순계 기준으로 지방정부는 국가 전체 세출의 5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의 세출 중 민생비, 위생비, 주택비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관계비가 24조 5,437억 엔(34.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채의 발행에 따른 비용도 전체 세출의 31.8%인 22조 5,565억 엔으로 사회보장관계비와 공채비에 대한 지출이 전체 지출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두 항목을 제외하고는 방위비(5조 2,598억 엔, 7.4%)와 국토보전 및 개발비(4조 7,678억 엔, 6.7%)에 대한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지출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음
- 지방공공단체의 경우에도 사회보장관계비가 전체 세출액의 34.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16조 8,829억 엔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17.4%)을 나타내고 있음
  - 이외에 기관비(14조 9,565억 엔, 15.4%)와 국토보전 및 개발비(12조 8,652억 엔, 13.2%)에 대한 지출이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표 5-2〉 일본의 정부계층별 세출 현황(2017년 순계 결산액 기준)

(단위: 억엔, %)

구분	중앙정부(A)	지방공공단체(B)	합계(C)	비율(B/C)
기관비	43,073	149,565	192,639	77.6
일반행정비	11,598	87,405	99,002	88.3
사법경찰소방비	14,654	52,646	67,300	78.2
외교비	8,887	-	8,887	-
징세비	7,788	9,514	17,303	55
화폐제조비	147	-	147	-
지방재정비	3,067	-	3,067	-
방위비	52,589	-	52,589	-
국토보전 및 개발비	47,678	128,652	176,329	73
국토보전비	7,675	16,492	24,167	68.2
국토개발비	37,588	103,838	141,426	73.4
재해복구비	650	8,322	8,971	92.8
기타	1,765	-	1,765	-
산업경제비	43,375	62,625	106,000	59.1
농림수산업비	15,910	13,678	29,588	46.2
상공비	27,465	48,947	76,412	64.1
교육비	30,029	168,829	198,858	84.9
학교교육비	19,960	130,360	150,320	86.7
사회교육비	1,399	12,632	14,031	90
기타	8,670	25,837	34,507	74.9
사회보장관계비	245,437	336,113	581,550	57.8
민생비	231,164	262,365	493,529	53.2
위생비	550	62,626	63,176	99.1
주택비	365	11,025	11,390	96.8
기타	13,358	97	13,455	0.7
연금비	2,850	100	2,951	3.4
공채비	225,565	126,753	352,318	36
전년도 조상총당금	-	3	3	100
기타	15,874	-	15,874	-
합계	709,537	972,640	1,682,178	57.8

자료: 일본 총무성(2019). 2019 지방재정현황.

## 나. 지방세입

-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2017년 순계 결산액 기준 총 세입액은 101조 3,223억 엔임
  - 이 중에서 도도부현의 세입(50조 8,895억 엔)이 시정촌의 세입(59조 8,267억 엔)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도도부현의 총 세입 중 지방세, 지방양여세,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에 따른 세입은 31조 2,412억 엔으로 총 세입액의 6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재원에 따른 도도부현의 세입 중 지방세가 20조 5,428억 엔으로 가장 큰 비중(40.4%)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가 8조 6,592억 엔으로 두 번째로 큰 비중(17.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재원 이외의 세입의 경우에는 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 국고위탁금을 포함하는 국고지출금으로부터의 수입이 6조 438억 엔으로 가장 큰 비중(11.9%)을 나타내고 있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수입(5조 5,166억엔, 10.8%)도 높게 나타났음
- 시정촌의 경우 총 세입 중 일반재원에 따른 세입은 31조 4,191억 엔으로 총 세입액의 52.5%를 차지하여, 도도부현에 비해서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각각 19조 3,615억엔과 8조 1,087억엔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재원 이외의 세입의 경우, 도도부현과 마찬가지로 국고지출금과 지방채에 따른 수입이 시정촌의 주요 세입원으로 나타났고, 특히 도도부현의 지출금에 따른 수입(3조 9,900억엔)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5-3〉 일본의 정부계층별 세입 현황(2017년 순계 결산액 기준)

(단위: 백만 엔, %)

구분	도도부현		시정촌		합계	
지방세	20,542,835	40.4	19,361,567	32.4	39,904,402	39.4
지방양여세	1,990,889	3.9	414,335	0.7	2,405,224	2.4
지방특별교부금	47,258	0.1	85,542	0.1	132,800	0.1
지방교부세	8,659,264	17.0	8,108,742	13.6	16,768,005	16.5
시정촌담배세도도부현교부금	1,014	0.0	-	-	-	-
이자당 교부금	-	-	34,613	0.1	-	-
배당당 교부금	-	-	104,334	0.2	-	-
주식등양도소득당 교부금	-	-	108,193	0.2	-	-
분리과세소득당 교부금	-	-	4,715	0.0	-	-
도부현민세소득당 임시교부금	-	-	557,545	0.9	-	-
지방소비세교부금	-	-	2,343,803	3.9	-	-
골프장이용세교부금	-	-	31,452	0.1	-	-
특별지방소비세교부금	-	-	1	0.0	-	-
자동차취득세교부금	-	-	135,472	0.2	-	-
경유인수세교부금	-	-	128,804	0.2	-	-
소계(일반재원)	31,241,260	61.4	31,419,116	52.5	59,210,431	58.4
분담금, 부담금	250,573	0.5	665,304	1.1	586,655	0.6
사용료, 수수료	866,263	1.7	1,373,830	2.3	2,240,092	2.2
국고지출금	6,043,848	11.9	9,421,165	15.7	15,465,013	15.3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31,962	0.1	23,382	0.0	55,344	0.1
도도부현지출금	-	-	3,990,062	6.7	-	-
재산수입	212,139	0.4	398,367	0.7	610,506	0.6
기부금	19,858	0.0	407,082	0.7	426,891	0.4
이월금(繰入金)	1,388,426	2.7	2,143,986	3.6	3,532,413	3.5
이월금(繰越金)	1,403,213	2.8	1,694,782	2.8	3,097,995	3.1
제수입	3,915,356	7.7	2,161,396	3.6	5,453,083	5.4
지방채	5,516,607	10.8	5,152,008	8.6	10,644,892	10.5
특별구재정조정교부금	-	-	976,299	1.6	-	-
세입합계	50,889,504	100.0	59,826,779	100.0	101,323,315	100.0

자료: 일본 총무성(2019). 2019 지방재정현황.

### 3. 사회보장 관리체계

- 일본의 사회보장 관리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 공유함
  - 연금 등은 국가가 담당하고, 의료행정은 도도부현이 담당하며, 복지행정은 시정촌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형태임
  - 일본의 사회보장 체계는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건강보험, 후생연금)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의 2가지로 구분됨
- 후생노동성이 사회보장체계를 관리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자들에게 밀접한 사회보장 공공서비스를 제공함
  - 사회복지관, 어린이보호센터, 공공의료기관도 지방정부 산하의 사회보장 전문 행정기관임(정기혜, 2012c)
- 건강관리를 위한 병의원, 노인의 장기 관리를 위한 주간보호시설이나 기관들, 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와 지원센터 같은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의 주체는 공공기관과 사립기관임(정기혜, 2012c)
  - 공공병원과 개인병원 모두 공공건강보험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후생노동성의 관리·감독 하에 있음

## 제2절 보조금 제도 및 유형

### 1. 보조금 제도

- 일본은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음
  - 지방공공단체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행정의 종합적인 부분을 광범위하게 담당하도록 함
  - 중앙정부는 지방공공단체를 지원하는 역할로 국가 존립에 관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성과 획일성이 요구되는 사무, 대규모의 종합적 관점이 필요한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함
- 주민밀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며, 중앙정부는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함

〈표 5-4〉 일본의 중앙-지방간 기능분담

구분		안전	사회자본	교육	보건복지	산업경제
중앙		외교, 방위, 형사	고속도로, 국도, 1급하천	대학교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통상·관세, 우편사업, 경제정책
지방	광역	경찰	지방도(광역), 향만, 2급하천, 공영주택	고등학교	아동복지, 공공보건센터	지역개발정책, 고용안정
	기초	소방, 호적	지방도(기초), 도시계획사업, 향만, 하수도, 공영주택	중학교, 초등학교, 간호학교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공공부조, 노인복지	지역개발정책

자료: 일본 총무성(2007), Local public finance in japan; 심혜정(2009),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사례와 시사점에서 재인용.



- 그리고 기존의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구분하였음
  - 자치사무는 도시계획결정, 식품점영업 허가, 병원 개설 허가 등을 포함하며, 법정수탁사무는 국회의원 총선거, 여권발급, 전국 통계 등을 포함함(김성주, 2017)
- 기존 기관위임사무 중 나머지는 국가 직접집행사무로 전환하거나 폐지하였음
  - 국가 직접집행사무는 국립공원 관리, 신용협동조합 인가 등을 포함하며, 폐지사무는 국민연금 인지검증, 외국인 등록원표 등을 포함함

〈표 5-5〉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의 구분

구분	지방분권개혁 이전	지방분권개혁 이후	
	기관위임사무	자치사무	법정수탁사무
조례제정권	조례제정 불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제정 가능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제정 가능
지방의회 권한	자치법규 규정에 의한 검열 및 검사권 예외 (국가안전·개인비밀·지방노동위원회·수용위원회 권한)	자치법규 규정에 의한 검열 및 검사권 예외 (지방노동위원회·수용위원회 권한)	자치법규 규정에 의한 검열 및 검사권 예외 (국가안전·개인비밀·지방노동위원회·수용위원회 권한)
행정 불복 심사	국가에 심사청구 가능	국가에 심사청구 불가	국가에 심사청구 가능
중앙 관여	중앙부처 주무장관의 포괄적 지휘감독권(개별법)	구체적인 사무유형에 따라 중앙 관여의 기본유형을 제시하고, 기본유형 이외의 관여는 제한(개별법에 근거한 중앙 관여의 전면적인 축소)	

자료: 행정안전부(2005), 「일본의 지방분권 및 사무배분」 추진 분석: 지방분권일괄법을 중심으로.

-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로 중앙정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적 지휘감독이 불가능하게 되고, 기존의 중앙 관여 사항 중 일부가 폐지·축소되었음(김성주, 2017)

- 이와 함께 삼위일체개혁을 통해 국고부담금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었음
  - 장려적 국고보조 원칙하에 국고부담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폐지·축소하는 방향으로 슬림화를 추진하였음
  - 삼위일체개혁(2004~2006)을 통해 4.7조 엔의 국고지출금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3조 엔의 세원이양을 동시에 진행하였음

〈표 5-6〉 삼위일체개혁을 통한 국고지출금 개혁

구분	개혁 내용	개요
내각부	10억엔 정도	생활정보체제정비 교부금, 교통사고상당소 교부금, 민간자본활용사업조사비 보조금 등
총무성	90억엔 정도	소방방재설비정비비 보조금(긴급소방원조대관계설비분 제외), 지역정보통신네트워크기반정비사업비 보조금, 정보통신시스템정비촉진비 보조금 등
문부과학성	의무교육분 국고부담금 8,500억엔 정도	감액상당분은 세원이양예정 특례교부금으로 조치
	기타 국고보조부담금 등 230억엔 정도	요보호급및準요보호아동학생원조비 보조금, 교원연수사업비 보조금, 고등학교 장학사업비 보조금, 학교교육설비정비비 보조금 등
후생노동성	9340억엔 정도	국민건강보호 국고부담, 양로노인홈 보호비 부담금, 아동보호비 보조금(산후대체보육사 보조금 등), 재택복지사업비 보조금(생활지원하우스 등), 사회복지시설시설정비비 보조금·부담금 등
농림수산성	3040억엔 정도	경영체육성기반정비사업비 보조, 차산사업비 보조, 농도정비사업비 보조, 수토보전림정비 차산사업비 보조, 협동농업보급사업 교부금, 농업위원회 교부금 등
경제산업성	180억엔 정도	소규모기업활성화 보조금, 중심시가지상업활성화종합지원사업비 보조금, 산업재배치촉진환경정비비 보조금, 수입관련사업자집적촉진사업비 보조금 등
국토교통성	6,460억엔 정도	공영주택집세대책보조, 주택산업구조개혁추진 보조금, 토지이용전환계획책정 보조금, 토지분류조사비 보조금, 특정임대주택건설용자이자보급보조 등

구분	개혁 내용	개요
환경성	530억엔 정도	환경감시조사 보조금, 조수보호사업비 보조금, 폐기물처리시설정비 보조금 등
합계	23,380억엔 정도	지역자주전략교부금 폐지

자료: 鈴木·橋本 (2015) '国庫支出金の構造変化について'.

- 삼위일체 개혁의 결과, 국고지출금 총액은 개혁 이전인 2004년의 20조 4천억엔 규모에서 2006년 18조 7천억엔 규모로 축소됨
  - 공공사업관계 항목과 의무교육 관련 항목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사회보장관련 항목의 비중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음(국중호, 2012; 유태현 외, 2017)
- 이러한 삼위일체개혁은 2002년 6월 25일 일본 정부가 지방재정개혁의 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음
  - 국고보조금,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가 상호간에 연관을 갖고 있어 각각을 개별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 3가지를 일체로 하여 포괄적으로 개혁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음(김성주, 2017)
  - 삼위일체개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분담을 재검토하고,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재정재건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음
- 국고지출금과 관련된 삼위일체개혁의 주요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7〉 국고지출금 개혁의 경과 및 주요 내용

시기	관련 계획	주요 내용	
2001	4	고이즈미(小泉)내각 발족	“성역없는 구조개혁”
	6	골격방침2001(骨太の方針2001)	지방자립, 활성화프로그램(시정촌합병, 국고보조금부담금 정리합리화 등)
2002	5	카타야마(片山) 시안 '지방재정구조와 세원이양에 관하여'	세원이양으로 세수를 국가:지방=1:1 실현 국고지출금 5.5조엔 삭감, 교부세 재검토

시기	관련 계획	주요 내용	
	6	골격방침 2002	지방의 재원부족(14조엔) 조기해소 목표
	10	지방분권개혁추진회의·의견서	국고보조부담사업 형태 검토 + 국고보조부담금 형태에 관해 언급
2003	6	골격방침 2003	삼위일체개혁 기본방침 제출(2006년까지의 공정표 제시)
	12	2004년 지방재정계획	교부세 1.2조엔 감액, 소득양여세 4200억엔
2004	4	아소(麻生)플랜	2005년도 이후의 삼위일체개혁 진행방법
	5	지방6단체 긴급결의	아소플랜에 반발, 국고보조부담금 개혁안(삼위일체개혁에 대한 전제 제시)
	6	골격방침 2004	2005년~2006년에 국고보조금개혁 3조엔 공정표, 지방에 개혁구체안 정리 요청, 세원이양에 개인주민세 플랫폼 검토
	8	지방6단체 개혁안	2기에 나눠 3.2조엔, 3.6조엔의 보조금삭감, 세원이양안 제시
	11	삼위일체개혁에 관하여	정부여당합의(6천억엔 보조금개혁은 미정)
2005	4	아소대신이 도지사회장에게 요청	미결정분 6천억엔의 국고보조부담금 개혁제시를 지방에 요청
	6	골격방침 2005	정부여당합의의 답습
	7	도지사회 개혁안	6천억엔 개혁을 위해 1조엔 개혁리스트 제시
	11	추가개혁안	정부여당합의, 3조엔 세원이양내용이 결정
2007	4	삼위일체개혁 완료	국가에서 지방에 세원이양 완료
2009	4	아소내각 경제대책	리먼쇼크 경제대책(지방에 대한 배려)
	9	민주당 '매니페스토 2009'	조건부 보조금의 일괄교부금화, 지역주권
2011	4	2011년도 예산	지역자주전략교부금 창설
2013	1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지역자주전략교부금 폐지

자료: 鈴木·橋本 (2015) '国庫支出金の構造変化について'.

## 2. 유형

- 일본의 경우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특정사무·사업에 대해 국가에서 교부되는 돈을 총칭하여 국고지출금이라고 하며, 크게 ① 국고부담금, ② 국고보조금, ③ 국고위탁금으로 구분됨
- 국고부담금은 국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해 일정 부담구분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보조금을 지칭함
  - 국가 및 지방의 부담비율은 법령에 따라 규정되며,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교부세 기본재정수요액에 포함됨
  - 경상적 국고부담금: 의무교육 및 생활보호와 같이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원
  - 건설사업비 국고부담금: 도로, 하천 등 국가의 종합계획에 의한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비용 지원
  - 개해복구사업비 등의 국고부담금: 지자체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비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행정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로 교부하는 보조금임
  - 장려적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장려
  - 재정원조적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특정경비에 대한 재정부담 경감
- 국고위탁금은 국가 위탁사무에 대한 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임
  - 국민연금사무비 국고위탁금, 통계·조사 등 위탁금 등을 포함함
- 일본의 국고지출사업은 '보조금등에 관한 예산집행적정화에 관한 법률'(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에 따라 집행·관리됨
  - 일본은 보조금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기준보조율 및 대상 범위는 각 사업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 혹은 지침(요강)에서 규정함

### 제3절 보조금 재원분담 현황

#### 1. 보조금 현황

- 도도부현의 경우 총 6조 758억 엔의 국고지출금이 투입되었음
  -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의무교육비 부담금으로 도도부현 총 국고지출금의 20.8%인 1조 2630억 엔이 배분되었음
  - 이 밖에 보통건설사업비 지출금(1조 1,264억 엔, 18.5%)과 사회자본 정비 종합 부담금(9,521억 엔, 15.7%)도 도도부현에 배분된 국고지출금 항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나타났음

〈표 5-8〉 국고지출금 현황(2017년 기준)

(단위: 백만엔, %)

구분	도도부현		시정촌		순계액	
의무교육비부담금	1,263,075	20.8	-	-	1,263,075	8.1
생활보호비부담금	140,408	2.3	2,666,669	28.2	2,807,077	18.1
아동보호비등부담금	105,257	1.7	916,521	9.7	1,021,778	6.6
장애인자립지원금부비등부담금	77,497	1.3	1,187,480	12.6	1,264,977	8.2
사립고등학교등경상비 조성비보조금	105,577	1.7	-	-	105,577	0.7
아동수당등교부금	-	-	1,360,477	14.4	1,360,477	8.8
공립고등학교수업료 불징수교부금	12	0.0	9	0.0	21	0.0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교부금	328,549	5.4	-	-	328,549	2.1
보통건설사업비지출금	1,126,487	18.5	632,481	6.7	1,758,968	11.3
재해복구 사업비 지출금	417,136	6.9	108,694	1.2	525,829	3.4
실업대책 사업비 지출금	-	-	3	0.0	3	0.0
위탁금	124,453	2.0	94,993	1.0	219,447	1.4
보통 건설 사업	4,316	0.1	7,265	0.1	11,581	0.1
재해 복구 사업	32	0.0	1,161	0.0	1,193	0.0
기타	120,105	1.9	86,567	0.9	206,673	1.3
재정 보급금	3,851	0.1	3,691	0.0	7,542	0.0
국유 제공 시설등 소재 시정촌 조성 교부금	30	0.0	35,510	0.4	35,540	0.2
교통 안전 대책 특별 교부금	31,962	0.5	23,382	0.2	55,344	0.4
전원(電源) 입지 지역 대책 교부금	94,421	1.6	30,887	0.3	125,308	0.8

구분	도도부현		시정촌		순계역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특정 방위 시설 주변 정비 조정 교부금	-	-	20,742	0.2	20,742	0.1
석유저장시설 입지대책 등 교부금	5,318	0.1	-	-	5,318	0.0
사회자본 정비 종합교부금	952,189	15.7	751,400	8.0	1,703,589	11.0
지방 창생 관계 교부금	45,000	0.7	63,116	0.7	108,117	0.7
동일본 대지진 부흥 교부금	13,658	0.2	95,234	1.0	108,892	0.7
기타	1,240,930	20.5	1,453,258	15.4	2,694,187	17.4
합계	6,075,810	100.0	9,444,547	100.0	15,520,357	100.0

자료: 일본 총무성(2019). 2019 지방재정현황.

- 시정촌의 국고지출금은 9조, 4,445억 엔으로 도도부현에 투입된 국고지출금보다 약 3조 3600억 엔 정도 더 많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음
  -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시정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생활보호비 부담금으로 시정촌 총 국고지출금의 28.2%인 2조 6,666억엔이 배분되었음
  - 이를 이어 아동수당 등 교부금(1조 3,604억엔, 14.4%)과 장애인 자립지원 급부비 등 부담금(1조 1,874억엔, 12.6%)의 규모도 다른 항목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 2017년도 일본의 국고보조사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영역으로, 국고지출금 총액의 약 35.1%가 사회복지분야에 사용되고 있음
  - 생활비보호비부담금(18.1%), 아동수당등교부금(8.8%), 장애인 자립지원 급부비 등 부담금(8.2%)
- 한편 2017년에 도도부현에서 시정촌으로 배분된 지출금은 총 3조 9,900억 엔으로 나타남
- 먼저 도도부현 지출금을 국고 재원의 수반 여부에 따라 나누었을 때, 국고 재원을 수반하는 지출금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국고 재원을 수반하는 금액은 전체의 62.3%인 2조 4,847억 엔이고 도도

- 부현 비용만으로 지출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37.7%인 1조 5,052억 엔임
- 항목별로 살펴봤을 경우,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항목은 장애인 자립지원급부비 등 부담금으로 총 지출금의 14.1%인 5,615억 엔임
    - 다음으로는 아동보호비 등 부담금에 3,908억 엔(9.8%) 그리고 보통 건설사업비 지출금에 3,038억 엔(7.6%)이 투입되어 도도부현 지출금 항목 중 규모가 큰 항목으로 각각 나타났음
    - 반면 재해 복구 사업(0.0%), 석유저장시설 입지대책 등 교부금(0.1%) 그리고 보통 건설 사업(0.3%) 등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출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전년도(2016년)의 지출금 수준과 비교했을 경우, 전체적인 지출금 액수는 361억 엔 증가하였음
    - 국고 재원을 수반하는 금액은 286억 엔 감소한 반면 도도부현의 비용만으로 지출된 금액은 647억 엔 증가하였음
    - 아동보호비 등 부담금과 장애인 자립지원 급부비 등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각각 18.3%와 5.9% 증가한 반면 아동수당 등 교부금은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5-9〉 도도부현 지출금현황

(단위: 백만엔, %)

구분	결산액				비교		
	평성29년도(2017)	비율	평성28년도(2016)	비율	증감액	증감률	전년도증감률
국고 재원을 수반하는 것	2,484,793	62.3	2,513,427	63.6	△ 28,634	△ 1.1	△ 1.1
아동보호비 등 부담금	390,872	9.8	330,377	8.4	60,495	18.3	14.6
장애인 자립 지원 급부비등 부담금	561,558	14.1	530,485	13.4	31,073	5.9	5.8
아동수당 등 교부금	288,029	7.2	292,084	7.4	△ 4,055	△ 1.4	△ 1.7
보통 건설사업비 지출금	303,836	7.6	272,750	6.9	31,086	11.4	△ 10.8
재해복구 사업비 지출금	62,198	1.6	64,499	1.6	△ 2,301	△ 3.6	△ 8.3
위탁금	58,530	1.5	58,833	1.5	△ 303	△ 0.5	△ 13.0



구분	결산액				비교		
	평성29년도(2017)		평성28년도(2016)		증감액	증감률	전년도증감률
보통 건설 사업	11,478	0.3	8,943	0.2	2,535	28.3	18.8
재해 복구 사업	1,395	0.0	470	0.0	925	196.8	109.8
기타	45,657	1.2	49,420	1.3	△ 3,763	△ 7.6	△ 17.5
전원 입지 지역 대책 교부금	17,854	0.4	20,055	0.5	△ 2,201	△ 11.0	△ 13.6
석유저장시설 입지대책 등 교부금	4,755	0.1	4,788	0.1	△ 33	△ 0.7	0.7
기타	797,161	20.0	939,556	23.8	△ 142,395	△ 15.2	△ 4.3
도도부현비만의 것	1,505,269	37.7	1,440,553	36.4	64,716	4.5	2.6
보통 건설사업비 지출금	192,344	4.8	177,805	4.5	14,539	8.2	6.5
재해복구 사업비 지출금	3,755	0.1	1,752	0.0	2,003	114.3	9.4
기타	1,309,170	32.8	1,260,996	31.9	48,174	3.8	2.0
합계	3,990,062	100.0	3,953,979	100.0	36,083	0.9	0.2

## 2. 분야별 현황

### 가. 야마나시현 사례

#### 1) 개요

- 2019년 기준 야마나시현의 국고지출금 사업은 총 345개이며, 이를 세출 분야별<sup>40)</sup>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123개(35.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사업이 74개(21.4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수송 및 교통 분야 사업이 3개(0.87%)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도 4개(1.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40) 분야별 현황은 야마나시현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의 세출 분야와 유사하게 분류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일본에서 분류하는 분야별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표 5-10〉 야마나시현 분야별 국고지출금 사업 수 및 비중

분야	사업수	비중
공공질서 및 안전	74	21.45%
과학기술	7	2.03%
교육	27	7.83%
국토 및 지역개발	8	2.32%
농림해양수산	25	7.25%
문화 및 관광	6	1.74%
보건	27	7.83%
사회복지	123	35.65%
산업중소기업	4	1.16%
수송 및 교통	3	0.87%
일반공공행정	15	4.35%
환경보호	21	6.09%
기타	5	1.45%
합계	345	100%

자료: 야마나시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 2) 분야별 자원분담 현황

### (1) 일반공공행정

-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중앙-광역-기초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사업은 총 15개임
- 이 중 광역자치단체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8개(53%)<sup>41)</sup>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정부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4개(27%)<sup>42)</sup>로 나타났음

41) 광역자치단체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개인현민세 부과징수 사무를 위한 비용 보상, 현민세 이자할 시정총교부금, 지방소비세 시정총교부금 등에 관한 사업이다.

42) 중앙정부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주민기본대장시스템 정비, 단체 내 통합명시스템 정비, 개인번호카드교부사업비 보조금 등이다.

- 그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서 50:50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2개(15%)이며,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서 67:33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1개(7%)로 나타났음

〈표 5-11〉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일반 공공행정

보조율			사업수	비율
중앙	광역	기초		
50%	-	50%	2	13%
67%	-	33%	1	7%
100%	-	-	4	27%
-	100%	-	8	53%
합계			15	100%

자료: 야마나시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 (2) 공공질서 및 안전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경우 중앙-광역-기초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사업은 총 74개임

〈표 5-12〉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공공질서 및 안전

보조율			사업수	비율
중앙	광역	기초		
30%	0.5%	69.5%	1	1%
33%	0.5%	66.5%	1	1%
33%	-	67%	13	18%
33%	33%	33%	4	5%
40%	-	60%	3	4%
45%	0.5%	54.5%	2	3%
45%	-	55%	1	1%
50%	25%	25%	3	4%
50%	-	50%	29	39%
50%	0.5%	49.5%	5	7%

보조율			사업수	비율
중앙	광역	기초		
50%	27.5%	22.5%	1	1%
55%	-	45%	1	1%
65%	-	35%	2	3%
65%	17.5%	17.5%	1	1%
67%	-	33%	3	4%
75%	-	25%	1	1%
100%	-	-	2	3%
-	100%	-	1	1%
합계			74	100%

자료: 야마나시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 이 중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서 50:50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29개(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서 33:67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13개(18%)로 나타났음
- 중앙정부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2개(3%)<sup>43)</sup>로 나타났고, 광역자치단체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1개(1%)<sup>44)</sup>로 나타났음

### (3) 교육

- 교육 분야의 경우 중앙-광역-기초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사업은 총 27개임
- 이 중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서 33:67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13개(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서 50:50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8개(30%)로 나타났음

43) 중앙정부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자위관 모집사무, 긴급소방원조대 활동 관련 보조사업이다.

44) 광역자치단체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오수관거 설치 종말처리장 설치 관련 보조사업이다.

- 한편 중앙정부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2개(3%)<sup>45)</sup>로 나타났다

〈표 5-13〉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교육

보조율			사업수	비율
중앙	광역	기초		
22%	44%	33%	1	4%
33%	-	67%	13	48%
33%	33%	33%	2	7%
50%	-	50%	8	30%
100%	-	-	2	7%
-	67%	33%	1	4%
합계			27	100%

자료: 야마나시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 (4) 문화

- 문화 분야의 경우 중앙-광역-기초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사업은 총 6개임
- 이 중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50:50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과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에서 25:50:25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각각 2개(33%)로 나타났다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50:50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세계문화유산 경관형성 지원 사업비, 도쿄올림픽 사전합숙유치 추진 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사적구입비 보조금은 중앙-광역단체-기초자치단체에서 80:10:10으로 부담하여 중앙정부의 부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5) 중앙정부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고등학교 취학지원금 교부금 관련 보조사업으로 근거 법령이 법률과 요강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5-14〉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문화

보조율			사업수	비율
중앙	광역	기초		
25%	50%	25%	2	33%
50%	25%	25%	1	17%
80%	10%	10%	1	17%
-	50%	50%	2	33%
합계			6	100%

자료 : 야마나시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5) 환경보호

- 환경보호 분야의 경우 중앙-광역-기초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사업은 총 21개임
- 이 중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서 50:50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7개(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50:50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5개(24%)로 나타났음
- 한편 중앙정부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2개(10%)<sup>46)</sup>로 나타났음

〈표 5-15〉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환경보호

보조율			사업수	비율
중앙	광역	기초		
30%	10%	60%	1	5%
33%	-	67%	1	5%
50%	-	50%	7	33%
50%	25%	25%	3	14%
50%	20%	30%	1	5%
-	50%	50%	5	24%

46) 일반폐기물최종처리장 관련 도로정비사업 및 자금 대부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중앙	보조율		사업수	비율
	광역	기초		
-	100%	-	2	10%
-	75%	25%	1	5%
합계			21	100%

자료: 야마나시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 (6) 사회복지

-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중앙-광역-기초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사업은 총 123개임
- 이 중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서 50:50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26개(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50:50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19개(15%)로 나타났음
- 중앙정부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6개(3%)<sup>47)</sup>로 나타났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2개(2%)<sup>48)</sup>로 나타났음

〈표 5-16〉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사회복지

중앙	보조율		사업수	비율
	광역	기초		
25%	25%	50%	2	2%
32%	-	68%	1	1%
33%	33%	33%	9	7%
33%	-	67%	3	2%
33%	67%	-	1	1%
44%	44%	11%	1	1%
45%	-	55%	2	2%

47) 중앙정부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생활곤궁자 취로준비지원 사업비 보조금, 모자 가정대책종합지원 사업비, 재난피해 아동의 건강생활대책 보조금, 지역자살대책강화 사업비 보조금 등이다.

48) 광역자치단체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행로병자 및 사망자 취급비, 구급의료센터 운영비 관련 보조사업이다.

중앙	보조율		사업수	비율
	광역	기초		
50%	-	50%	26	21%
50%	25%	25%	17	14%
50%	50%	-	5	4%
67%	-	33%	2	2%
67%	17%	17%	3	2%
75%	-	25%	10	8%
75%	25%	-	3	2%
75%	12.5%	12.5%	3	2%
82%	9%	9%	1	1%
95%	-	5%	1	1%
100%	-	-	6	5%
-	100%	-	2	2%
-	75%	25%	2	2%
-	33%	67%	2	2%
-	50%	50%	19	15%
-	67%	33%	1	1%
-	40%	60%	1	1%
합계			123	100%

자료: 야마나시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 (7) 보건

- 보건 분야의 경우 중앙-광역-기초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사업은 총 27개임
- 이 중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서 33:67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6개(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서 25:75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4개(15%)로 나타났음
- 한편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없음



〈표 5-17〉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보건

보조율			사업수	비율
중앙	광역	기초		
25%	-	75%	4	15%
33%	-	67%	6	22%
33%	7%	60%	2	7%
33%	22%	44%	2	7%
33%	33%	33%	1	4%
33%	17%	50%	1	4%
40%	-	60%	3	11%
50%	-	50%	3	11%
50%	25%	25%	1	4%
67%	-	33%	2	7%
80%	-	20%	1	4%
-	67%	33%	1	4%
합계			27	100%

자료: 야마나시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 (8)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중앙-광역-기초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사업은 총 25개임
- 이 중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서 50:50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10개(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50:50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5개(20%)로 나타났음
-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없음

〈표 5-18〉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농림해양수산

보조율			사업수	비율
중앙	광역	기초		
33%	33%	33%	1	4%
50%	25%	25%	4	16%
50%	-	50%	10	40%
50%	0.5%	49.5%	1	4%
50%	40%	10%	1	4%
55%	-	45%	1	4%
55%	0.5%	45.5%	1	4%
-	50%	50%	5	20%
-	30%	70%	1	4%
합계			25	100%

자료: 야마나시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9) 산업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중앙-광역-기초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사업은 총 4개임
-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50:25:25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50:50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각각 2개(50%)로 나타났다
-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없음

〈표 5-19〉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산업중소기업

보조율			사업수	비율
중앙	광역	기초		
50%	25%	25%	2	50%
-	50%	50%	2	50%
합계			4	100%

자료: 야마나시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 (10) 수송 및 교통

- 수송 및 교통 분야의 경우 중앙-광역-기초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사업은 총 3개임
- 3개 사업이 모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50:50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20〉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수송 및 교통

보조율			사업수	비율
중앙	광역	기초		
-	50%	50%	3	100%
합계			3	100%

자료: 야마나시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 (11) 국토 및 지역개발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경우 중앙-광역-기초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사업은 총 8개임
-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서 50:50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4개(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정부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3개(38%)<sup>49)</sup>로 나타났음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규정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49) 중앙정부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과소지역 유희시설재정비사업, 과소지역 집락 네트워크권형성 지원, 지역경제순환창조사업 교부금 등이다.

〈표 5-21〉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국토 및 지역개발

보조율			사업수	비율
중앙	광역	기초		
33%	-	67%	1	13%
50%	-	50%	4	50%
100%	-	-	3	38%
합계			8	100%

자료: 야마나시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12) 과학기술

-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중앙-광역-기초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사업은 총 7개임
-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서 50:50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3개 (4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서 67:33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2개(29%)로 나타났음
- 한편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22〉 일본 야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과학기술

보조율			사업수	비율
중앙	광역	기초		
33%	-	67%	1	14%
50%	-	50%	3	43%
50%	20%	30%	1	14%
67%	-	33%	2	29%
합계			7	100%

자료: 야마나시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 (13) 기타

- 기타 분야의 경우 중앙-광역-기초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사업은 총 5개임
-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서 50:50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과 중앙정부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각각 2개(40%)<sup>50)</sup>로 나타났다

〈표 5-23〉 일본 아마나시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부담비율: 기타

보조율			사업수	비율
중앙	광역	기초		
50%	-	50%	2	40%
100%	-	-	2	40%
-	50%	50%	1	20%
합계			5	100%

자료: 아마나시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 나. 사이타마현 사례

## 1) 개요

-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사업은 총 251개이며, 예산은 약 494.5억 엔인 것으로 나타남
- 사업 수 기준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사업이 49개(1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육 분야 사업이 37개(14.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예산액 기준으로는 교육 분야 사업이 149억 엔(30.1%)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다음으로 보건 분야 사업이 127억 엔(25.7%)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50) 중앙정부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지역인권개발활동 활성화 사업, 각종 통계조사 관련 보조사업이다.

〈표 5-24〉 사이타마현 분야별 국고지출금 사업 수, 예산 및 비중(2019년 1-4월)

(단위: 천엔, %)

분야	사업수	비중	예산	비중
공공질서및안전	10	4.0	2,340,530	4.7
과학기술	3	1.2	-	0.0
교육	37	14.7	14,907,941	30.1
국토및지역개발	49	19.5	7,240,187	14.6
농림해양수산	27	10.8	1,888,371	3.8
문화및관광	2	0.8	66,270	0.1
보건	30	12.0	12,697,657	25.7
사회복지	30	12.0	3,234,150	6.5
산업중소기업	4	1.6	16,760	0.0
수송및교통	14	5.6	484,053	1.0
일반공공행정	24	9.6	4,743,400	9.6
환경보호	19	7.6	1,826,889	3.7
기타 <sup>51)</sup>	2	0.8	5,750	0.0
합계	251	100.0	49,451,958	100.0

자료: 사이타마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 2) 분야별 자원분담 현황

### (1) 공공질서 및 안전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경우, 정부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사업은 총 10개로, 예산액은 23.3억 엔임
- 국가 50%와 시정촌에서 5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과 그 외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각각 2개(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방방재과의 「럭비월드컵 2019 구마가야회장소방·구급체제정비비 교부금」 사업에 대해 국가가 100%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51) 기타 분야 사업에는 생활위생과의 「지역 고양이 활동 추진 사업 보조금」, 「주인 없는 고양이의 중성화수술추진사업 보조금」이 포함되었다.

- 예산액 기준으로는 현이 50%와 시정촌이 50%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15억 엔(64.4%)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국가와 시정촌이 33.3:66.7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7.4억 엔(31.8%)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표 5-25〉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공공질서 및 안전

(단위: 천 엔)

국가	보조율(%)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현	시정촌	그 외		
33.3%	-	66.7%	-	1 (10.0%)	740,000 (31.8%)
50%	-	50%	-	2 (20.0%)	0 (0.0%)
100%	-	-	-	1 (10.0%)	54,530 (2.3%)
-	33.3%	66.7%	-	1 (10.0%)	1,000 (0.0%)
-	33.3%~50% 등	50%~66.7% 등	-	1 (10.0%)	27,000 (1.2%)
-	50%	50%	-	1 (10.0%)	8,000 (0.3%)
-	50% 등	50% 등	-	1 (10.0%)	1,500,000 (64.4%)
-	-	-	100%	2 (20.0%)	0 (0.0%)
합계				10 (100.0%)	2,330,530 (100.0%)

자료: 사이타마현(2019). 시정촌의 국고지출금 개요.

## (2) 과학기술

-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정부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사업은 총 3개임
-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며, 현-시정촌-

그 외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시스템과의 「사회보장·세금번호제도 시스템정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 국가가 100%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표 5-26〉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과학기술

(단위: 천 엔, %)

국가	보조율(%)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현	시정촌	그 외		
50.0%	20.0%	13.3%	16.7%	1 (33.3%)	0 (0.0%)
66.7%	13.3%	8.9%	11.1%	1 (33.3%)	0 (0.0%)
100.0%	-	-	-	1 (33.3%)	0 (0.0%)
합계				3 (100.0%)	0 (0.0%)

자료: 사이타마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 (3) 교육

- 정부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교육 분야 사업은 총 37개로 예산액은 149억 엔임
- 교육 분야의 경우 국가-현-시정촌이 각각 33.3%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11개(29.7%)로 가장 많았으며, 현이 50%, 시정촌이 50% 부담하는 사업이 5개(13.5%)로 다음으로 많음
- 예산 기준으로도 국가-현-시정촌이 각각 33.3%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80억 엔(53.8%)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현과 시정촌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27억 엔(18.1%)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표 5-27〉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교육

(단위: 천 엔)

국가	보조율(%)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현	시정촌	그 외		
22.2%	44.4%	33.3%	-	1 (2.7%)	70,632 (0.5%)
33.3%	33.3%	33.3%	-	11 (29.7%)	8,015,592 (53.8%)
33.3%	-	66.7%	-	2 (5.4%)	0 (0.0%)
50.0%	50.0%	-	-	1 (2.7%)	3,764 (0.0%)
50.0%	25.0%	25.0%	-	3 (8.1%)	1,264,758 (8.5%)
50.0%	-	50.0%	-	3 (8.1%)	0 (0.0%)
50.0%	-	12.5%	12.5%	1 (2.7%)	124,353 (0.8%)
50.0%	-	25.0%	25.0%	3 (8.1%)	2,274,237 (15.3%)
66.7%	-	33.3%	-	2 (5.4%)	0 (0.0%)
66.7%~100%	-	0%~33.3%	-	1 (2.7%)	26,463 (0.2%)
75.0%	12.5%	12.5%	-	1 (2.7%)	418,635 (2.8%)
-	33.3%	66.7%	-	2 (5.4%)	10,242 (0.1%)
-	50.0%	50.0%	-	5 (13.5%)	2,699,138 (18.1%)
-	-	100%	-	1 (2.7%)	127 (0.0%)
합계				37 (100.0%)	14,907,941 (100.0%)

자료: 사이타마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4) 국토 및 지역개발

- 정부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사업은 총 49개로, 예산액은 72억 엔임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경우 국가와 시정촌이 50% 등 부담하는 사업이 11개(22.4%),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8개(16.3%)로 많이 나타남
- 반면, 예산의 경우 현과 시정촌이 각각 50% 비율로 부담하는 사업이 6억 엔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의 82.9%를 차지함

〈표 5-28〉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국토 및 지역개발

(단위: 천 엔)

국가	보조율(%)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현	시정촌	그 외		
33.3%	11.1%	22.2%	33.3%	1 (2.0%)	680,035 (9.4%)
33.3%	-	66.7%	-	3 (6.1%)	0 (0.0%)
33.3% 등	16.7% 등	16.7% 등	33.3% 등	2 (4.1%)	60,900 (0.8%)
33.3% 등	-	33.3% 등	33.3% 등	3 (6.1%)	0 (0.0%)
40.0%	-	60.0%	-	1 (2.0%)	0 (0.0%)
50.0%	50.0%	-	-	1 (2.0%)	0 (0.0%)
50.0%	50% 등	50% 등	-	2 (4.1%)	0 (0.0%)
50.0%	25.0%	25.0%	-	1 (2.0%)	200,005 (2.8%)
50.0%	-	50.0%	-	8 (16.3%)	0 (0.0%)
50.0% 등	-	50.0% 등	-	11 (22.4%)	0 (0.0%)

보조율(%)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국가	현	시정촌	그 외		
50.0%~55.0%	20%~33.3%	10.2%~30.0%	-	1 (2.0%)	181,213 (2.5%)
55.0%	-	45.0%	-	3 (6.1%)	0 (0.0%)
정액	-	정액	-	1 (2.0%)	0 (0.0%)
-	50.0%	50.0%	-	6 (12.2%)	6,000,900 (82.9%)
-	50.0% 등	50.0% 등	-	1 (2.0%)	14,134 (0.2%)
-	100.0%	-	-	3 (6.1%)	103,000 (1.4%)
-	-	-	-	1 (2.0%)	0 (0.0%)
합계				49 (100.0%)	7,240,187 (100.0%)

자료: 사이타마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 (5) 농림해양수산

- 정부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은 총 27개로, 예산액은 약 19억 엔임
-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국가 50%와 시정촌 50% 부담 사업, 현과 시정촌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각각 4개(14.8%)로 가장 많음
- 예산 기준으로는 국가가 정액으로 부담하는 사업의 예산이 약 6.6억 엔으로 3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가 50%와 현 50%로 부담하는 사업이 약 5.1억 엔(26.8%)으로 다음으로 비중이 큼
- 농업정책과의 「농업위원회 등 보조사업」, 농업비즈니스지원과의 「농지활용 촉진사업」, 「경영체 육성조건정비사업」에 대해 국가가 100%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표 5-29〉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농림해양수산

(단위: 천 엔)

국가	보조율(%)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현	시정촌	그 외		
30.0%	1.0%	69.0%	-	1 (3.7%)	26,959 (1.4%)
33.3%	-	66.7%	-	1 (3.7%)	0 (0.0%)
50.0%	2.0%	48.0%	-	1 (3.7%)	25,272 (1.3%)
50.0%	25.0%	25.0%	-	1 (3.7%)	23,470 (1.2%)
50.0%	-	50.0%	-	4 (14.8%)	506,997 (26.8%)
50.0%	-	-	50.0%	1 (3.7%)	0 (0.0%)
70.0%	-	30.0%	-	1 (3.7%)	0 (0.0%)
100.0%	-	-	-	3 (11.1%)	191,606 (10.1%)
정액	-	-	-	3 (11.1%)	658,291 (34.9%)
정액 등	정액 등	-	-	1 (3.7%)	0 (0.0%)
-	30.0%	70.0%	-	2 (7.4%)	11,842 (0.6%)
-	33.3%	66.7%	-	2 (7.4%)	300,371 (15.9%)
-	50.0%	50.0%	-	4 (14.8%)	9,022 (0.5%)
-	50.0%	-	50.0%	1 (3.7%)	900 (0.0%)
-	정액	-	-	1 (3.7%)	133,641 (7.1%)
합계				27 (100.0%)	1,888,371 (100.0%)

자료: 사이타마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 (6) 문화 및 관광

- 정부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문화 및 관광 분야 사업은 2개로, 약 66백만엔 규모임
-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경우 국가에서 50% 등, 현에서 50% 등을 부담하는 사업과 현과 시정촌이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각각 1개씩 있음
- 국가와 현이 50% 등씩 부담하는 사업의 예산액이 약 5.8억 엔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 국고지출금 예산액의 86.5% 비중을 차지함

〈표 5-30〉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문화 및 관광

(단위: 천 엔)

국가	보조율(%)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현	시정촌	그 외		
50% 등	50% 등	-	-	1 (50.0%)	57,331 (86.5%)
-	50%	50%	-	1 (50.0%)	8,939 (13.5%)
합계				2 (100.0%)	66,270 (100.0%)

자료: 사이타마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 (7) 보건

- 정부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보건 분야 사업은 29개로, 예산액은 약 113억 엔임
- 보건 분야의 경우, 현 50%, 시정촌 50%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10개(34.5%)로 가장 많음
- 예산 기준으로도 현 50%, 시정촌 50%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약 103억 엔(91.2%)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5-31〉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보건

(단위: 천 엔)

국가	보조율(%)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현	시정촌	그 외		
33.3%	16.7%	50.0%	-	1 (3.4%)	4,461 (0.0%)
33.3%	33.3%	33.3%	-	4 (13.8%)	438,488 (3.9%)
33.3%	-	66.7%	-	1 (3.4%)	92,399 (0.8%)
44.4%	22.2%	33.3%	-	1 (3.4%)	153,222 (1.2%)
50.0%	25.0%	25.0%	-	2 (6.9%)	199,631 (1.8%)
50.0%	-	50.0%	-	3 (10.3%)	4,890 (0.0%)
	50.0%	50.0%	-	10 (34.5%)	10,272,527 (91.2%)
	100.0%	-	-	6 (20.7%)	96,332 (0.9%)
	정액	-	-	1 (3.4%)	850 (0.0%)
합계				29 (100.0%)	11,262,800 (100.0%)

자료: 사이타마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 (8) 사회복지

- 정부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사회복지 분야 사업은 총 30개로, 예산액은 약 32억 엔임
-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현이 50%, 시정촌이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9개 (30%)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현-시정촌이 50%-25%-25%의 비율로 부담하는 경우가 7개(23.3%)로 두 번째로 많음

- 예산 기준으로는 현과 시정촌이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약 20억 엔 (60.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현이 100% 부담하는 사업이 18.5%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32〉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사회복지

(단위: 천 엔)

국가	보조율(%)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현	시정촌	그 외		
25.0%	12.5%	12.5%	50.0%	2 (6.7%)	6,361 (0.2%)
33.3%	33.3%	33.3%	-	1 (3.3%)	8,184 (0.3%)
50.0%	25.0%	25.0%	-	7 (23.3%)	578,355 (17.9%)
50.0%	-	50.0%	-	2 (6.7%)	50,000 (1.5%)
66.7%	33.3%	-	-	1 (3.3%)	26,050 (0.8%)
-	50.0%	50.0%	-	9 (30.0%)	1,955,529 (60.5%)
-	66.7%	33.3%	-	2 (6.7%)	7,174 (0.2%)
-	100.0%	-	-	3 (10.0%)	598,945 (18.5%)
-	-	50.0% 이상	50.0% 이하	1 (3.3%)	3,552 (0.1%)
-	-	-	60.0%	1 (3.3%)	0 (0.0%)
-	-	-	100.0%	1 (3.3%)	0 (0.0%)
합계				30 (100.0%)	3,234,150 (100.0%)

자료: 사이타마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9) 산업중소기업

- 정부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은 4개로, 예산액은 약 1,670만 엔임
-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국가-시정촌이 33.3:66.7, 국가-시정촌이 50:50, 현-시정촌-그 외가 33.3:33.3:33.3, 현이 100%의 비율로 부담하는 사업이 각각 1개씩 있음

〈표 5-33〉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산업중소기업

(단위: 천 엔)

보조율(%)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국가	현	시정촌	그 외		
33.3%	-	66.7%	-	1 (33.3%)	0 (0.0%)
50.0%	-	50.0%	-	1 (33.3%)	0 (0.0%)
-	33.3%	33.3%	33.3%	1 (33.3%)	12,760 (76.1%)
	100.0%			1 (33.3%)	4,000 (23.9%)
합계				4 (100.0%)	16,760 (100.0%)

자료: 사이타마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10) 수송 및 교통

- 정부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수송 및 교통 분야 사업은 14개로, 예산액은 약 4.8억 엔임
- 수송 및 교통 분야의 경우, 국가와 시정촌이 50%씩 부담하는 사업과 국가가 55%, 시정촌이 45%로 부담하는 사업이 4개(28.6%)로 가장 많음



- 반면, 예산 기준으로는 국가 33.3%, 현 16.7%, 시정촌 16.7%, 그 외가 33.3%의 비율로 부담하는 사업이 3.8억 엔(79%)으로 비중이 가장 크며, 현과 시정촌이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20.8%로 다음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5-34〉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수송 및 교통

(단위: 천 엔)

국가	보조율(%)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현	시정촌	그 외		
33.3%	16.7%	16.7%	33.3%	2 (14.3%)	382,561 (79.0%)
50.0%	-	50.0%	-	4 (28.6%)	0 (0.0%)
55.0%	-	45.0%	-	4 (28.6%)	0 (0.0%)
-	50.0%	50.0%	-	3 (21.4%)	100,539 (20.8%)
-	100.0%	-	-	1 (7.1%)	953 (0.2%)
합계				14 (100.0%)	484,053 (100.0%)

자료: 사이타마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 (11) 일반공공행정

- 정부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일반공공행정 분야 사업은 24개로, 예산액은 약 47.4억 엔임
-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시정촌이 100% 부담하는 사업이 9개(37.5%)로 가장 많았으며, 현과 시정촌이 50%씩, 현이 66.7%, 시정촌이 33.3%의 비율로 부담하는 사업이 각각 3개(12.5%)로 다음으로 많음

- 예산 기준으로는 현이 66.7%, 시정촌이 33.3%를 부담하는 사업이 약 31억 엔(65.5%)으로 비중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현과 시정촌이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15억 엔(32.3%)으로 나타남
- 정보시스템과의 「개인번호카드 교부사업비 보조금」, 「개인번호 교부사무비 보조금」에 대해 국가가 100%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표 5-35〉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일반공공행정

(단위: 천 엔)

국가	보조율(%)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현	시정촌	그 외		
100.0%	-	-	-	2 (8.3%)	0 (0.0%)
-	50.0%	50.0%	-	3 (12.5%)	1,532,000 (32.3%)
-	66.7%	33.3%	-	3 (12.5%)	3,105,600 (65.5%)
-	90.0%	10.0%	-	1 (4.2%)	5,400 (0.1%)
-	100.0%	-	-	2 (8.3%)	100,000 (2.1%)
-	-	33.3%	66.7%	2 (8.3%)	0 (0.0%)
-	-	33.3% 등	66.7% 등	2 (8.3%)	0 (0.0%)
-	-	100.0%	-	9 (37.5%)	400 (0.0%)
합계				24 (100.0%)	4,743,400 (100.0%)

자료: 사이타마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 (12) 환경보호

- 정부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환경보호 분야 사업은 20개로, 예산액은 약 32.6억 엔임
- 환경보호 분야의 경우 현과 시정촌이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5개(2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가와 시정촌이 50% 부담하는 사업이 3개(15.0%)로 많았음
- 예산 기준으로는 국가가 100% 부담하는 사업이 44%로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현과 시정촌이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20.4%(6.7억 엔)로 나타남
- 생활위생과의 「생활기반시설 내진화 등 보조」 사업에 대해 국가가 100%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표 5-36〉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환경보호

(단위: 천 엔)

국가	보조율(%)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현	시정촌	그 외		
15.0%	-	85.0%	-	1 (5.0%)	200,000 (6.1%)
33.3%	33.3%	33.3%	-	1 (5.0%)	28,000 (0.9%)
33.3%	-	66.7%	-	2 (10.0%)	0 (0.0%)
50.0%	25.0%	25.0%	-	2 (10.0%)	19,433 (0.6%)
50.0%	-	50.0%	-	3 (15.0%)	13,000 (0.4%)
50.0% 등	-	50.0% 등	-	1 (5.0%)	500,800 (15.4%)
100.0%	-	-	-	1 (5.0%)	1,434,857 (44.0%)

국가	보조율(%)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현	시정촌	그 외		
-	33.3%	66.7%	-	1 (5.0%)	92,000 (2.8%)
-	50.0%	50.0%	-	5 (25.0%)	665,232 (20.4%)
-	100.0%	-	-	2 (10.0%)	50 (0.0%)
-	정액	-	-	1 (5.0%)	308,374 (9.5%)
합계				20 (100.0%)	3,261,746 (100.0%)

자료: 사이타마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13) 기타

- 정부 간 국고지출금 부담비율이 규정된 기타 분야 사업은 2개이며 예산액은 약 575만 엔으로, 2개의 사업 모두 현이 100%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37〉 일본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정부 간 부담비율: 기타

(단위: 천 엔)

국가	보조율(%)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현	시정촌	그 외		
-	100.0%	-	-	2 (100.0%)	5,750 (100.0%)
합계				2 (100.0%)	5,750 (100.0%)

자료: 사이타마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 제6장

## 요약 및 시사점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시사점



## 제6장

## 요약 및 시사점

KRILA

## 제1절

## 연구결과 요약

## 1. 미국

- 첫째, 미국은 연방헌법에서 중앙-지방 간 역할 및 사무배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정부 중심의 정부 간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됨
  - 주정부는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조, 지방정부는 교육 분야에 주로 지출함
  - 주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50% 이상의 자체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주정부의 이전재원은 대부분 연방정부로부터, 지방정부의 이전재원은 대부분 주정부로부터 이전됨
- 둘째, 사회보장 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가 재원과 운영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임
  - 그러나 연방정부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사회보장 관련 역할 분담의 범위가 달라짐
  - 사회보험 중 연금보험과 노인인구 의료보장인 메디케어는 주로 연방정부가 관장하고, 저소득층 의료보장인 메디케이드와 실업보험 등은 주정부가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형태를 나타냄
- 셋째, 2002년에 Grants.cov를 설치하고, 연방보조금 관련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이를 통해 연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넷째, 연방정부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범주별 보조금, 포괄보조금, 세입공유 등으로 분류됨
  - 2019년 기준 연방보조금 규모는 7,665억 달러(약 900조 원 이상)이며, 인구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냄(주로 공식에 의한 포괄보조 방식)

- 연방정부 보조금 중 개인에 대한 지출 비중은 1970년 37.7%에서 2018년 73.9%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17년 기준 연방정부 보조금은 총 1,319개이며, 이 중 1,299개(98.5%)가 범주별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음
  - 레이건 정부의 보조금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의 연방정부 보조금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이후 연방정부 보조금은 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음
  - 포괄보조금은 1968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2012년 26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20개의 포괄보조금이 운영되고 있음
  - 세입공유는 1975년 도입된 이후 1984년까지 운영되었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섯째, 보건후생부 소관 연방보조금이 5,275억 달러로 전체 연방보조금의 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의료보장제도인 의료지원 프로그램이 3,935억 달러로 보건후생부 보조금의 74.6%를 차지함
- 의료지원 프로그램 관련 지출에 대한 연방정부의 부담률(Medicaid's Federal Medical Assistance Percentage, FMAP)은 주정부 평균소득과 미국 전체의 평균소득을 이용하여 계산함
  - 기준보조율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주정부 평균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주정부 평균소득과 국가전체 평균소득이 동일한 주는 연방과 주정부가 각각 55:45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FMAP_{state} = 1 - ((\text{주정부 평균소득})^2 / (\text{국가 전체 평균소득})^2 * 0.45)$$


---

- 2019년 기준 FMAP 평균은 59.97이며, 최대값과 최소값은 76.97(미시시피주)와 50.00(알래스카주 외 13개 주정부)임



-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 프로그램은 E-FMAP를 적용하며, FMAP에 의해 계산된 주정부 부담 중 30%를 연방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함
- 예를 들어 FMAP가 60인 경우 주정부는 40%를 부담하는데, 이 때 E-FMAP를 적용하면 연방정부는  $40\% \times 30\% = 12\%$  추가 부담하여 72:28로 부담하게 됨

## 2. 영국

- 첫째,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관련 부처가 정책 및 재원마련을 담당함
  - 지방정부는 욕구파악 및 사회서비스 구매와 감독 역할에 초점을 맞춘 행정 지원 역할을 수행함
  - 영국은 2001년 6월에 복지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노동부의 노동부분과 사회보장부를 통합하여 노동연금부를 설치하였음
  - 모든 공공부조와 사회보장급여는 노동연금부의 집행체계인 연금서비스, 고용센터플러스, 돌봄자서비스의 각 지역사무소를 통하여 관리·운영됨
- 둘째, 중앙정부 보조금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3-2014 회계연도의 58%에서 2017-2018 회계연도 48%로 10%p 감소함
  - 2017-2018 회계연도 기준 영국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은 45.9%이며, 보조금수입은 54.1%로 나타남
  -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과 유사한 특정·특별보조금은 39,330백만 파운드로 전체 보조금의 50.3%를 차지함
- 셋째, 전체 보조금 중 특정·특별보조금이 50.3%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일반보조금으로 전환되는 추세임
  - 1980년대 포괄보조금이 1990년대 세입지원교부금(우리나라 지방교부세와 유사)으로 변화하였음

- 2000년대 이후 공식에 의한 일반보조금제도, 2008년 권역별지원보조금, 2011년 지역서비스 지원보조금 등 일반(무조건부)보조금이 확대되는 추세임
- 넷째, 총 의존재원 내 특정·특별보조금은 2019-20년 회계기준 408.3억 파운드이며, Dedicated School Grant가 284억 파운드로 6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총 의존재원 이외 특정·특별보조금은 189.1억 파운드로 임대료 수당, 비공영주택 거주자 임대료 할인, 공영주택 거주자 임대료 할인을 포함하는 의무주거급여가 176.3억 파운드(9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3. 독일

- 첫째, 독일은 연방헌법에서 정부 간 관계를 상대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연방헌법은 제7장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입법권한의 구분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공동사무를 연방헌법(제8a장)에 명시하고, 공동사무의 처리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공동사무의 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재정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헌법상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
- 둘째, 연방헌법에서 연방정부 전속사무, 연방-주정부 경합사무, 공동사무 등 규정, 사무 처리를 위한 비용분담 기준을 규정함
  - 공동사무 연방부담금(공동사무), 위임사무 연방교부금(사회복지 분야), 연방지원금(투자사업), 연방보충교부금(지방교부세)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됨
  - 연방헌법에서 사업 분야별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재원분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특성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재원분담 원칙을 제시함

- 연방헌법상 규정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음
- 셋째,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주요 사회복지정책은 연방교육교부금, 주거교부금, 부모교부금, 아동생계교부금,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 노령·기본생계보장교부금 등 여섯 영역이며, 각각의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됨
- 독일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현금급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음
- 이 중 연방교육교부금, 부모교부금, 노령·기본생계보장교부금은 연방정부가 100% 부담함
- 독일의 연방보조금 중 도시건설육성 관련 연방지원금의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을 규정하고 있음

#### 4. 일본

- 첫째, 일본은 지방자치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의 역할 및 사무배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 「지방자치법」 제1조와 제2조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가 본래 수행해야 할 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을 자주적이고 종합적으로 넓게 담당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임
- 둘째, 일본의 사회보장 관리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 공유함
- 연금 등은 국가가 담당하고, 의료행정은 도도부현이 담당하며, 복지행정은 시정촌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형태임
- 후생노동성이 사회보장체계를 관리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자들에게 밀접한 사회보장 공공서비스를 제공함

- 셋째, 삼위일체개혁 이후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
  - 삼위일체 개혁의 결과, 국고지출금 총액은 개혁 이전인 2004년의 20조 4천억엔 규모에서 2006년 18조 7천억엔 규모로 축소됨
  - 공공사업관계 항목과 의무교육 관련 항목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사회보장관련 항목의 비중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음
- 넷째, 일본의 국고지출사업은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관리됨
  - 일본은 보조금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기준보조율 및 대상 범위는 각 사업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 혹은 지침(요강)에서 규정함
- 다섯째, 국고지출금 중 도도부현은 의무교육비, 건설사업비, 사회자본 정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정촌은 생활보호비, 아동수당, 장애인 자립지원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도도부현 지출금 중 장애인 자립지원, 아동보호비, 건설사업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여섯째, 2개 현 사례를 바탕으로 세출 분야별 중앙-광역-기초 간 재원분담 비율 및 예산액을 제시하였음(야마나시현, 사이타마현)
  - 2019년 기준 야마나시현의 국고지출금 사업은 총 345개이며,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123개(35.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 사업은 총 251개이며, 교육 분야 사업(14.9억 엔, 30.1%)과 보건 분야 사업(12.7억 엔, 25.7%)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제2절 시사점

### 1. 헌법 차원의 재원분담 규정

-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헌법 차원에서 정부 계층 간 기능 및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 제8절과 제10절에서 연방정부의 권한 및 주정부가 할 수 없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무를 제외하고 주정부가 독립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됨
  - 독일의 경우에도 다수의 연방헌법 규정에서 연방정부의 전속사무, 연방과 주정부 간 공동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표 6-1〉 독일 연방보조금과 주정부의 자체자원 부담 비율(2018년 기준)

(단위: 억 유로, %)

구분	연방보조금 <sup>52)</sup>	금액	비중	주정부 자체자원 부담 비율	
	총액				
공동사무 (연방헌법 제91a조, 제91b조)	지역경제구조개선(제91a조)	5	1.3	50	
	농업구조개선(제91a조)	7	1.9	40	
	해변보호개선(제91a조)			30	
	대형연구시설(제91b조 제1항)	30	8.1	-	
	학술공동체연구시설(제91b조 제1항)	7	1.9	-	
	연구진흥(제91b조 제1항)	대학특화전략	62	16.7	25
		혁신대학			10
		교육성취도국제비교·확인(제91b조 제2항)	1	0.3	-
	합계	112	30.1		
위임사무 (연방헌법 제104a조)	연방교육교부금(BAföG)	22	5.9	0	
	주거교부금(WoGG)	5	1.3	50	
	부모교부금(BEEG)	67	18.0	0	
	아동생계교부금(UnterhaltsVG)	9	2.4	60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 교부금(BSHG 등)	70	18.8	44.1(저)/56.4(고)	
	노령·기본생계보장 교부금(SGB XII 제4장)	59	15.9	0	
	기타교부금	19	5.1	-	
	합계	250	67.2		

(단위: 억 유로, %)

구분	연방보조금 <sup>52)</sup>	금액	비중	주정부 자체재원 부담 비율
	총액			
주식·단체 투자사업 (연방헌법 제104b조)	도시건설지원금(WVStädtebau)	6	1.6	서독(45~40%), 동독(50%)
	철도인프라지원금	2	0.5	
	기타지원금	2	0.5	
	합계	10	2.7	

자료: Ministerium für Finanzen(2019), 「연방·주정부 재정관계보고서 2019」.

- 이처럼 헌법상 규정된 정부 계층 간 역할 분담을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지방 간 재원분담 원칙을 설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BSHG 등)은 70억 유로로 연방교부금 중 가장 규모가 크지만,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에 대한 주정부 자체재원 부담비율이 최저 41.7%에서 최고 56.4%로 상대적으로 큰 것은 독일에서 주거공급 관련 사무가 전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사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임

## 2. 광역정부 중심의 보조금 제도

- 정부 간 재정관계 측면에서 미국과 독일의 연방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볼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연방제의 특성상 모든 보조금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를 통해 개인에게 지급됨
  - 개인이 수령하는 보조금은 의료지원프로그램(Medical Assistance Program), 스쿨런치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빈곤 가정 일시적 지원정책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등이 있음

52) 연방보충교부금은 제외하고 있다.

- 해당 보조금은 모두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한 뒤, 연방보조금을 주정부가 나눠주는 방식으로 지출됨

〈표 6-2〉 미국의 보조금 지급 방식

분야	보조금	보조금 지급 방식
보건복지	의료지원 프로그램(Medical Assistance Program) * 메디케이드(Medicaid) *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 주 정부가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한 뒤, 연방보조금을 주 정부가 나눠주는 방식 - 주 평균 소득과 미국 전체의 평균 소득을 사용하여 연방정부의 부담률을 계산함
농업	스쿨런치 프로그램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 주 정부가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한 뒤, 연방보조금을 주 정부가 나눠주는 방식 - 학교 급식을 관리하는 주 정부 주무부처가 각 학군(school district)에 금액을 지원하고, 각 학군에서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여 지원함 - 지원대상학생 수를 사용하여 연방정부의 부담률을 계산함
아동대상 사회복지 보조금	빈곤 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 빈곤가정 지원 * 양육보조 (Child care funding) * 수혜자가족의 취업지원	- 주 정부가 부양 자녀가 있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 - 초기에는 주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과 같은 비율로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였으나 (1:1 매칭) 현재 주정부 부담률이 점차 감소하여 평균 61%정도를 부담함

-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에서 연방보조금이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제도라는 것을 명시함
  - 제28조53) 제3항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정 수단인 보조금 역시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의 권한임을 주(Land)의 헌법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91a조, 제91b조, 제91c조, 제91d조, 제91e조 등에 기초하고 있는 공동

53) 제28조는 독일 연방헌법 상 지방자치권의 기본적 보장 규정이다.

- 사무 수행에 대한 정부 간 재원분담 규정(제91a조 제3항, 제91b조 제3항, 제91c조 제3항 등) 역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재원분담 규정만 두고 있음
  - 제104a조의 사회복지 사무들에 소요되는 재원의 재정지원 역시 제104a조 제3항에서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교부금만을 규정하고 있음
  - 제104b조의 도시건설 관련 사업들에 소요되는 재원의 재정지원 또한 제104b조 제1항에서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도시건설행정협정(VwvStädtebau)에서는 연방·주·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 및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연방보조금은 실제 운영에 있어서 주정부에 지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방보조금은 주정부에 의해 상당 부분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고 있음
  - 재정조정법(FAG) 상 연방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 직접 교부를 찾을 수 없음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보고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재정수입 중 주정부 보조금 외의 이전재원 항목을 찾을 수 없음
- 연방보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Gemeinde, Kreis, Kreisfreie Stadt 등)의 재원분담은 연방지원금 중 도시건설지원금에만 있고, 나머지 보조금 영역에서는 찾을 수 없음
- 2018년 기준으로 연방지원금은 전체 연방보조금의 2.7%를 차지함
  - 연방보조금 중 3% 정도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을 부담하고 있어, 연방보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VVStädtebau)
  - 예를 들어 고택수리·재건축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는 10% 이하의 자체재원을, 도시건축문화재 수리·재건축 사업에서는 20% 이하의 자체재원을 부담하고 있음



〈표 6-3〉 독일 연방보조금 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매칭 여부(2018년 기준)

구분 <sup>54)</sup>		금액(억 유로)	비중(%)	매칭 여부
총액		372	100	-
공동사무(연방헌법 제91a·91b조 )	연방부담금	112	30.1	없음
위임사무(연방헌법 제104a조)	연방교부금	250	67.2	없음
투자사업(연방헌법 제104b조)	연방지원금	10	2.7	있음

### 3. 지방정부의 조세수입 권한

- 독일의 지방정부(주정부·지방자치단체) 세입 규모는 연방정부보다 10%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규모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세입합계의 약 55% 수준임
  -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세입 규모를 고려할 때, 주정부의 자체재원 부담비율은 결코 큰 규모는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한편 연방정부 세입 대비 연방보조금 비중은 2016년 16.2%에서 2018년 14.1%로 감소하였음

〈표 6-4〉 연방정부 세입 대비 연방보조금 규모

(단위: 억 유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연방정부 세입		2,890	3,094	3,224
연방정부 세입 대비 연방보조금 비율		16.2%	14.6%	14.1%
연방보조금 총액		439	451	456
연방보조금	공동사무 부담금	106	114	112
	위임사무 교부금	226	238	250
	지방정부 투자지원금	8	8	10
	연방보충교부금	99	91	84

54) 연방보충교부금은 제외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에도 2017년 기준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50% 이상의 자체재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정부는 연방헌법과 주 헌법이 규정하는 한에서 세목을 도입할 권한을 가지며, 개인과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일반소비세를 포함하여 다양한 세금을 부과함
  - 지방정부는 재산세를 위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나 주별로 지방세율과 세목이 다름
- 미국의 주정부 수입 중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6.0%이고, 지방정부 수입 중 이전재원 비율은 약 31.1%임
  - 지방정부 이전재원 수입 중 연방정부에서 직접 받은 수입은 약 683억 달러로 전체 이전재원 수입 중 약 11.4%임
- 미국과 독일 등 연방국가의 지방정부들은 지방세에 대한 권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음

## 국내문헌

- 고경훈. (2014). 「미국·일본·독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체계 및 운영현황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국중호. (2012). 「일본의 지방세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 김대영. (2015). 「도와 시·군 간 세원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 김성주. (2017). 「국고보조사업 정비기준 마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의섭. (2013). 「영국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 박세경. (2009). 미국 포괄보조금제도 운영 실태의 한국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pp. 115-133
- 심혜정. (2009).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사례와 시사점」
- 안권욱. (2018). 「주민의 공동체적 삶에 있어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미 - 시흥시 주민 참여사례를 중심으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 유태현 외. (2017), 「중앙·지방재정 관계의 발전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윤인숙. (2018).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미국」, 한국법제연구원
- 이정희·박경돈 외. (2010). 「복지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이현우. (2017). 「미국의 정부형태별 역할분담과 지방재정구조 분석 시사점」, 경기연구원
- 정기혜. (2012a).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 요약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12b). 「영국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12c). 「일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승희. (2017). 미국의 연방보조금(Federal grant) 정보공개와 한국. 나라재정 12.

pp. 24-31

행정안전부. (2005). 「일본의 지방분권 및 사무배분 추진 분석: 지방분권일괄법을 중심으로.」

홍근석·김봉균. (2019).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재정관계 재정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김성주. (2018).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광역-기초간 재원 분담 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외국문헌

「도시건설육성 행정협정(VVStädtebau)2018」 제1조 제3항.

Billings, Kara Clifford & Randy Alison Aussenberg. (2019). School Meals Programs and Other USDA Child Nutrition Programs: A Primer. (<https://fas.org/sgp/crs/misc/R43783.pdf>), 접속일: 3/22/2020

MHCL(2019). Capital Outturn Return 2018 to 2019.

Medicaid.gov. (n.d.). CHIP Funding Allocations.

City of Fayetteville. (2018). 2018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 fiscal year ended June 30, 2018. (<https://fayettevillenc.gov/Home/ShowDocument?id=11138>)

DCLG(2016). RG – SPECIFIC AND SPECIAL REVENUE GRANTS 2015-16.

DCLG(2019),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England, No.29.

Dilger, Robert J. (2018). Federal Grants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 Historical Perspective on Contemporary Issues.

Dragoo, Kyrie E. 2019.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Funding: A Primer. August 29. (<https://fas.org/sgp/crs/misc/R44624.pdf>), 접속일 3/22/2020

Falk, Gene. (2017). Th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 Block Grant: A Primer on TANF Financing and Federal Requirements  
Falk, Gene. and Landers, Patrick A. (2019). Th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Block Grant: Responses to Frequently  
Asked Questions.
- Canterbury city council. (2019). Statement of Accounts 2018-2019.  
([https://www.canterbury.gov.uk/downloads/file/1159/statement\\_of\\_accounts\\_2018-19](https://www.canterbury.gov.uk/downloads/file/1159/statement_of_accounts_2018-19))
- Education and Skills Funding Agency. (2020). Dedicated school  
grants(DSG): 2019 to 20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edicated-schools-grant-dsg-2019-to-2020>)
- MHCLG. (2019). Flexible homeless support grant and homeless reduction  
grant: 2020 to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lexible-homelessness-support-grant-and-homelessness-reduction-grant-2020-to-2021>)
- DfT. (2014). Highways maintenance funding allocatio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ighways-maintenance-funding-allocations-201516-to-202021>)
- DHSC. (2018). Public health grants to local authorities: 2019 to 20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ublic-health-grants-to-local-authorities-2019-to-2020>)
- Kirk, Robert S. (2019). The Highway Funding Formula: History and  
Current Stat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s://fas.org/sgp/crs/misc/R45727.pdf>), 접속일: 3/22/2020
- Knemeyer, F.-L. (1999), Gemeindeverfassungen, in: Wollmann H. R.  
Roth(Hrsg.), Kommunalpolitik Politische Handeln in den Gemeinden,  
Opladen, pp.104-122.

- Laubach, T. (2005). Fiscal Relation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462.
- Liverpool City Council. (2019). Statement of Accounts 2018/19.
- MHCLG. (n.d). Local Authority revenue expenditure and financing England: 2015~2020 Individual local authority data - outturn, <http://gov.uk>.
- MHCLG. (2019).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England.
- Minsterium für Finanzen. (2018b), 「연방재정보고서2019」, pp.139-140.
- Minsterium für Finanzen. (2019), 「연방·주정부 재정관계보고서 2019」
- Mitchell, Alison. (2018). Federal Financing for the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y 23
- Mitchell, Alison. (2018). Medicaid's Federal Medical Assistance Percentage (FMA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s://fas.org/sgp/crs/misc/R43847.pdf>), 접속일: 3/22/2020
- Nassmacher, H. & K.-H. Nassmacher. (1999), Kommunalpolitik in Deutschland, Opladen.
- Pinellas County. (2019).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 for the fiscal year ended September 30, 2018. (<http://www.pinellasclerk.org/Portals/0/Finance-Comptroller/CAFR/2018CAFR.pdf>)
- Skinner, Rebecca R. & Leah Rosenstiel. (2018). Allocation of Funds Under Title I-A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eptember 17. (<https://fas.org/sgp/crs/misc/R44461.pdf>), 접속일: 3/22/2020
- The City of London Corporation. (2019). Audited statement of annual accounts for the city fund year ended 31 March 2019.

-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9). English local government funding: trends and challenges in 2019 and beyond.
- U. S. Census Bureau. (2017). 2017 Census of Governments - by Governments Type and State. (<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cog.html>), 접속일: 3/22/2020
- U. 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n.d.) Budget and Economic Data (<https://www.cbo.gov/about/products/budget-economic-data#2>), 접속일: 4/11/2020
- Verordnung zur Festlegung und Anpassung der Bundesbeteiligung an den Leistungen für Unterkunft und Heizung für das Jahr 2019.
-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n.d). 미국의 헌법(1787)」(<https://kr.usembassy.gov/ko/education-culture-ko/infopedia-usa-ko/living-documents-american-history-democracy-ko/constitution-united-states-1787-ko/>) 접속일: 4/11/2020
- 사이타마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 야마나시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 연방재무성(2020). 연방·주정부 재정관계보고서(Bund·Länder Finanzbeziehungen auf der Grundlage der Finanzverfassung).
- 연방재무성, 각 회계연도별「연방·주정부 재정관계보고서」.
- 오사카시 홈페이지, “地方公共団体の主な役割分担の現状” (2012년 4월) .
- 일본 총무성. (2019). 「2019 지방재정현황」.
- 鈴木・橋本 (2015). ‘国庫支出金の構造変化について’.
- 総務省(2017).「国と地方の役割分担について」.
- 콘스탄츠 회계과. (2020).
- 독일연방 통계청. (2017년).
- 鈴木・橋本 (2015) '国庫支出金の構造変化について'.

바덴-뷔르템베르크 재무부(2017)

**웹사이트**

<http://grants.gov>

<http://usaspending.gov>

<https://beta.sam.gov/>

<https://gov.uk>